

# 공연 관객 위기 대응 및 관리 매뉴얼

2017 . 10



- 본 자료는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 본 자료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와 한국공연장매니저협회에서 공연산업분야의 체계적인 관객 안전관리와 위기대응을 위한 이론적·기술적 사항들을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 본 자료의 내용은 관련된 국가규격이나 기준 및 다른 학술적 주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료의 내용은 사전에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의 내용은 공연장 및 공연 안전을 위한 참고자료로써 법정 의무나 강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의한 규정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대한 의견 및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공연장매니저협회([www.housemanager.co.kr](http://www.housemanager.co.kr))로 연락바랍니다.

#### ※ 주의

본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영리를 목적으로 문단 변경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 책의 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연 관객 위기 대응 및 관리 매뉴얼

총괄 김동균 김영신

글쓴이 김영신 조명현 윤지원 권진희 김철원 박예리 변고은 박하얀 정희 임윤슬

검수위원 정현주 류선주 황철빈 신수경 정미정 안진희 한윤진 정세영 윤세현 김국희 이주연

펴낸이 한국공연장매니저협회 [www.housemanager.co.kr](http://www.housemanager.co.kr)

발행일 2017. 10. 31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KTL공연장안전지원센터 한국공연장매니저협회

내용문의 KTL공연장안전지원센터 [www.stagesafety.or.kr](http://www.stagesafety.or.kr)

한국공연장매니저협회 [www.housemanager.co.kr](http://www.housemanager.co.kr)

## 들어가면서

### 공 연 관 객 위 기 대 응 및 관 리 매 뉴 얼

오늘날 국내 공연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전국의 공연장 수가 증가하였고, 더 다양한 공연과 폭 넓은 관객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공연장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과 구체적인 공연장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안 마련은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가 되었습니다.

공연장은 그 규모에 따라 수백 명부터 수천 명의 관객이 밀집하는 공간으로, 작은 사고도 인명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연장에서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 테러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발생하면 하우스매니저를 포함한 공연장의 안전관리자들은 체계적인 안전 매뉴얼에 따라 대처하여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알려진 공연장 안전관리에 관련된 정보는 충분하지 않아 실무자의 체계적인 위기대응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사업의 지원을 통해 공연장안전지원센터와 공연장매니저협회에서는 『공연 관객 위기 대응 및 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공연장의 현장실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한국공연장매니저협회는 전국의 공연장 매니저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업계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여 전문적인 공연장 안전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하우스매니징NCS』 능력 단위 및 학습모듈 개발 담당 기관으로서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한국산업기술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와 함께 『공연장 관객 안전교육』 등을 진행하는 등 공연장 운영실무자와 관리자들의 안전관리·서비스 수준 향상의 인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안전관리는 단순히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안전을 도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연이 진행되지 않는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단순한 시설 안전관리가 아닌 관객에게 특화된 매뉴얼로 본 매뉴얼을 참고하여 공연장에서의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추후 공연법 개정이나 예술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부분은 보완해 나가고자 하며 매뉴얼에 관하여 도움이나 의견을 주실 분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공연장안전지원센터([www.stagesafety.or.kr](http://www.stagesafety.or.kr)), 한국공연장매니저협회([www.housemanager.co.kr](http://www.housemanager.co.kr))로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 005 | <b>제1장 공연장 안전사고의 정의와 사고유형</b>     |
| 007 | 1. 공연장 안전사고의 정의와 범위(분류)           |
| 013 | 2. 안전사고의 발생 요인                    |
| 016 | 3. 공연장 안전사고의 유형                   |
| 045 | <b>제2장 공연장 안전사고 사례와 통계</b>        |
| 047 | 1. 공연장 안전사고 사례                    |
| 062 | 2. 통계로 본 안전사고                     |
| 073 | <b>제3장 안전 매뉴얼 작성과 활용</b>          |
| 075 | 1. 안전 매뉴얼의 작성과 활용                 |
| 080 | 2. 안전 매뉴얼의 예시                     |
| 085 | <b>제4장 공연장 안전사고 대비 방법 및 시설 점검</b> |
| 087 | 1. 공연장 안전관리의 이해                   |
| 092 | 2. 공연장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
| 093 | 3. 안전사고 예방활동 / 재해예방프로그램           |
| 100 | 4. 공연장 안전사고 예방 대책                 |
| 107 | 5. 공연장 위기상황 시 피난 방법               |
| 108 | 6. 공연장 관객 안전시설 점검                 |
| 145 | <b>제5장 공연 관객 안전훈련 방법</b>          |
| 147 | 1. 대피훈련 방법                        |
| 169 | 2. 대피 시나리오                        |
| 185 | <b>제6장 안전사고 발생 시 사후 조치 방법</b>     |
| 187 | 1. 공연·행사 사고현장 대응 수행원칙             |
| 190 | 2. 한국소비자원에 명시된 분쟁해결기준 중 티켓 환불규정   |
| 191 | 3. 사후조치 관련 보험                     |
| 197 | <b>제7장 응급처치 요령</b>                |
| 199 | 1. 응급처치                           |
| 202 | 2. 응급환자 관리 및 평가                   |
| 204 | 3. 심폐소생술                          |
| 210 | 4. 응급상황별 응급처치법                    |
| 229 | 5. 환자 이송                          |
| 231 | <b>부록</b>                         |
| 233 | 1. 안전 관리 서식                       |
| 238 | 2. 안전 관련 용어                       |

공연 관객 위기 대응 및  
관리 매뉴얼



## 제1장 공연장 안전사고의 정의와 사고유형

1. 공연장 안전사고의 정의와 범위(분류)
2. 안전사고의 발생 요인
3. 공연장 안전사고의 유형



## 1 공연장 안전사고의 정의와 범위(분류)

### 1) 안전사고의 이해

#### (1) 안전사고의 정의

안전사고란 어떤 불안정한 행동과 상태가 원인이 되어 일을 방해하거나 능력을 저하시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적·물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 (2) 안전사고의 범위

##### ① 안전사고 종류별 분류

공연장이나 공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들을 표면적인 형태 및 사고의 유형으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 발생 가능한 사고의 종류

- 기계·기구 고장 : 기계·기구에서 어떠한 원인에 의한 고장이 발생하는 사고
- 끼임 사고 : 무대시설에 사람 또는 물체가 끼이는 사고
- 낙하 사고 : 시설 또는 물건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
- 충돌사고 : 시설 대 시설, 시설 대 사람이 충돌하는 사고
- 날아옴 사고 : 시설 혹은 물체가 튀거나 떨어져 사람이 다치는 사고
- 압사 : 관객 등이 특정 지역에 몰려 압사하는 사고
- 일반화재 :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고
- 전기화재 :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전기화재가 발생한 사고
- 전기제어 고장 : 전기 제어 계통에 고장이 발생한 사고
- 넘어짐 사고 : 무대장치 넘어짐 등에 의해 사람이 다치는 사고
- 정전 : 공연장 일부 혹은 전체 전기시설에서 정전이 발생한 사고
- 추락 :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고

##### ② 안전사고 발생 시점별 분류

공연은 기획부터 시작해서 철수 및 정리까지의 단계로 진행된다. 본 과정에서는 공연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 설치 및 준비 중

- 공연을 위하여 무대장치들을 반입하고 설치하며,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행동을 하는 단계이다. 주로 작업에 의한 작업자 안전사고 및 리허설 중 공연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공연 중

- 관객 입장부터 관객 퇴장 시까지의 단계이며, 관객 안전사고, 화재, 정전, 연출에 따른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철수 및 해체 중

- 공연이 끝나고 구조물 및 무대장치를 철거하는 단계이며, 해체 작업에 따른 작업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③ 안전사고 발생 위치별 분류

공연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영역별로 구분하여 공통성과 특수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공연장은 크게 객석 공간과 무대 공간, 그리고 작업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객석 공간〉

– 출입구

- 관객들의 입·퇴장을 통제하는 장소이며, 관객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구역이다.



출입문(객석)



출입구(로비)

– 객석통로

- 객석의자 및 스탠딩 구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통로이며, 관객 이동 시 넘어짐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구역이다.



객석 통로

– 통제시설

- 관객 통제를 위한 안전펜스 설치 구역을 의미한다. 관객 입·퇴장 동선을 정하는 용도도 있지만, 위험구역 및 주요시설에 접근을 통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통제시설 POP

– F.O.H(Front Of House)

- 조명, 음향 엔지니어를 위한 공간으로서, 콘솔 및 제어부품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며, 전기 케이블 및 신호라인 등의 문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FOH

– 기타

- 나무, 난간이 없는 테라스 등 다른 지형보다 높은 구조물에서 무대를 관람하고자 하는 관객이 있는 안전 취약구역이 존재할 경우, 관객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



객석 2층 난간

### 〈무대 공간〉

#### – 피트(PIT)

- 무대와 객석 사이의 공간으로, 무대 관객 관리자가 출연자와 관객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비상 시 피난통로로 활용할 수 있다.

#### – 무대(Stage)

- 공연을 진행하는 공간이며, 관객의 시야가 확보된 장소에 출연자 등이 위치한 구역이며, 무대 연출을 위한 특수효과, 공중연기 등에 의한 사고를 주의해야 한다.

#### – 상부무대시설

- 주로 트러스, 비계 등의 철골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명 및 음향시설 등을 매달아 놓기 위한 구조 공간이다. 무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낙하 및 구조물 간섭 등에 의한 사고를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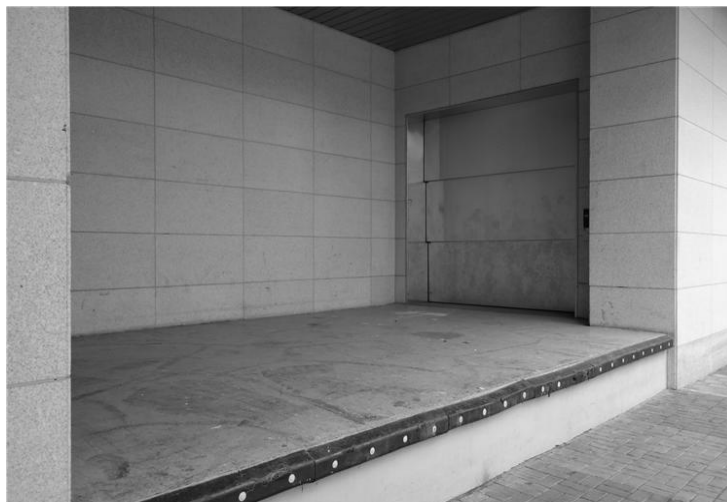
### 〈작업 및 준비 공간〉

#### – 백스테이지

- 공연 전에 설치하려는 물품을 잠시 놓아두거나 간단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며, 공연 중에는 출연자 대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작업 중 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한다.

#### – 하역장

- 공연에 사용되는 세트 및 소품 등을 운반 차량에서 하역하는 장소로서, 무거운 짐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한다.



하역장

### (3) 안전사고와 재해의 구분

#### ① 재해(Disaster)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인간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일시적·영구적으로 그 행동을 정지시키는 우발적 사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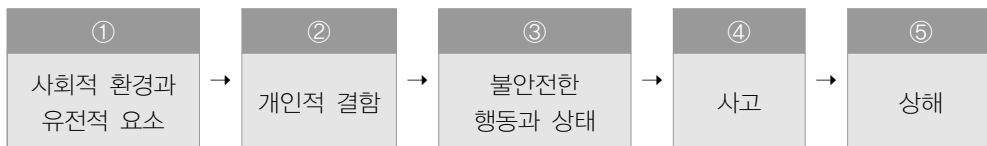
#### ② 안전사고(Industrial Accident)

인위적인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이며, 공연현장, 공연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무대 장치의 결함 등이나 설치방법의 잘못으로 공연활동의 정상적인 흐름에 장애를 주거나, 공연현장의 스태프, 출연자, 관객 등을 포함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 및 그러한 가능성을 의미한다.

## 2 안전사고의 발생 요인

### 1) 하인리히의 연쇄론 (도미노 이론)

사고 요인들이 차례차례 발생함으로써 재해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 하인리히가 말하는 산업재해  
재해발생의 가능성(위험성)까지 산업재해의 개념에 포함시켜 안전의 지향점을 사고 예방과 더불어 위험성의 배제까지 포함한다.

#### (1)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소

인간성격의 내적요소는 유전적 환경과 영향에 의해 형성되며, 유전과 환경은 인간결함의 원인이 된다.

#### (2) 개인적 결함

후천적인 결함으로 불안정한 행동을 유발시키고 기계적, 물리적인 위험 존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인적원인)

##### ① 개인적 결함의 유형

- 부적절한 태도
- 전문지식의 결여 및 기술, 숙련도 부족
- 신체적 부적격
- 부적절한 기계적, 물리적 환경
- 정신적 성격적 결함(무모함, 신경질적, 과격함, 쉽게 흥분하는 기질 등)

#### (3) 불안정한 행동

직접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 ① 불안정한 행동의 유형

- 권한 없이 행한 조작
- 불안정한 속도 조작 및 위험 경고 없이 조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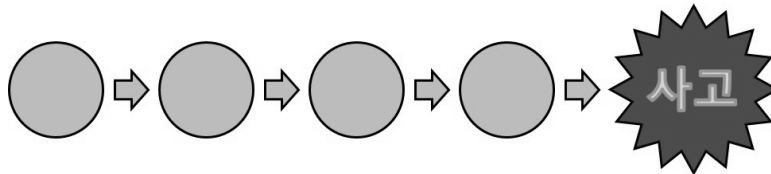
- 안전장치의 훼손 및 기능 제거
- 결함 있는 장비, 물품, 공구, 차량 등 운전, 시설의 불안정한 사용
- 보호구 미착용 및 위험한 장비에서 작업
- 필요장비를 사용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기구를 대신 사용
- 불안정한 적재, 배치, 결함, 정리정돈을 하지 않음
- 불안정한 인양, 운반
- 불안정한 자세 및 위치
- 당황, 놀람, 잡담, 장난 등

#### (4) 불안정한 상태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으로 기계적, 물리적인 위험 요소를 말한다. (물적 원인)

##### ① 불안정한 상태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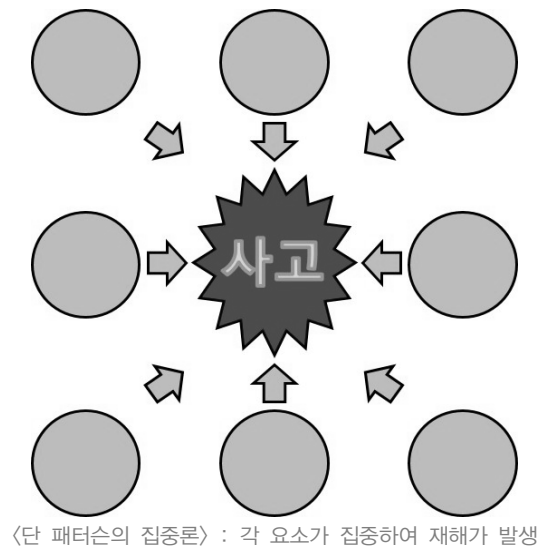
- 관객 통제시설 미비, 불완전한 통제 및 제한 장치의 설치
- 결함 있는 기계 설비 및 장비
- 불안정한 설계, 위험한 배열
- 부적절한 복장, 보호구, 시야 확보
- 불량한 정리정돈
- 불량상태(미끄러움, 날카로움, 거침, 깨짐, 부식됨 등)



〈하인리히의 연쇄론〉 : 어떤 요소가 원점이 되어 다음 요소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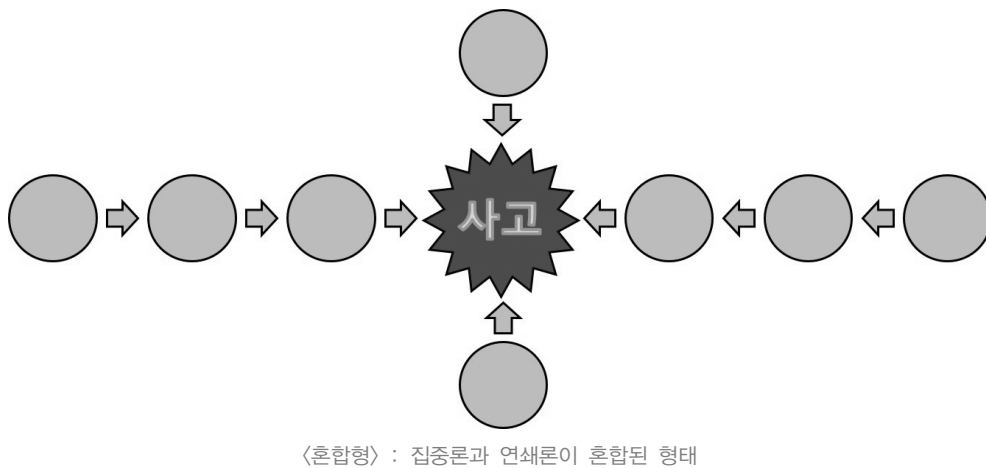
## 2) 단 패터슨의 집중론

- ① 재해발생에 관계된 여러 요인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여 재해가 발생한다.
- ② 모든 사고 뒤에는 수많은 발생요인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상황에 따라 무작위로 결합하여 재해가 발생한다.



### 3) 혼합형

- ① 연쇄론 + 집중론이 복합된 형태를 말한다.
- ② 현대사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는 대부분 혼합형에 속한다.



### 3 공연장 안전사고의 유형

#### 1) 인적재난

인적재난이란 자연 재난을 제외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과 같은 사고를 대표한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안전 불감증 및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성 재난, 고의로 일으킨 범죄성 재난, 사회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재난이 있다. 그 중 공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인적재난인 화재사고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 (1) 화재

공연장은 여러 가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예방이 필요하다. 화재사고 발생 시 안전 관리자는 사고 발생 대처와 재해 방지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화재예방과 관객 안전 관리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있어야 하며, 사고 대비를 위해 화재 훈련이나 소방시설 유지 관리 등의 업무도 함께 담당한다.

##### ① 화재사고의 원인

###### 가) 전기사고

###### - 전선의 합선 또는 단락에 의한 발화

전선이나 전기기구의 절연체가 파손되거나 두 가닥의 전선이 어떤 원인에 의해 서로 접촉하면서 순간적으로 큰 전류와 많은 열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 - 전선에 의한 발화

전선이나 전기기구 등이 낡아 절연불량 등의 원인으로 전류가 건물 내의 금속체를 통하여 흐르게 되어 이로 인한 저항열에 의해 발열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 - 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전선의 허용 전류를 초과한 전류를 과전류라 하며 에어컨, 전기다리미, 전자레인지, 동력 등을 동시에 사용할 시 적정용량을 초과하여 불이 붙는 현상을 말한다.



무대의 전기사용



하우스 비품 전기사용

#### – 기타 원인에 의한 발화

규격미달의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과열, 배선 및 절연불량 상태, 또는 정전기로부터의 불꽃 등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 나) 방화사고

강력범죄인 동시에 공공안전에 관한 범죄인 방화(放火)는 최근 들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방화에 의한 화재는 의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진압이 어려워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화재이다. 주요 방화의 원인으로는 가정불화가 가장 많고 부부 또는 친구 등과의 싸움, 비관자살, 주벽, 정신이상 등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에서 발생하며, 주요 방화 장소는 차량, 주택, 음식점, 점포, 작업장 순이다. 특히 사회의 발달에 따라 보험과 관계된 방화는 더욱 지능화, 전문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다) 가스사고

공연장에서도 가스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현대생활에 있어 가스는 사용하기에 편리할 뿐더러 열량이 높고 공해가 적어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주 에너지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잘못 다루면 가스중독 또는 폭발을 동반한 대형화재를 유발시킨다. 따라서 가스배관과 연소기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가스사용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라) 유류 화재사고

유류는 인화성 물질로서 주로 석유류 등을 말하며 우리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화재위험이 높고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확대되므로 취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마) 불티 화재사고

각종 작업 시에 수반되는 불티는 예기치 않은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며 발생 원인에 있어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작업 시에는 주위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도록 하고 소화기나

소화수를 비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작업해야 한다.

- 용접 부주의로 불티가 가연물에 떨어져 화재 발생
- 용접물체가 가열되어 주위의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 발생
- 모닥불, 소각장 등의 불티가 바람에 날려 화재 발생
- 배관의 용접/절단 시 배관의 보온 재료에 불티가 옮겨 붙어 화재 발생
- 용접작업장 인근에 방치되어 있는 위험물/가연물 등에 불티가 튀어 화재 발생

## ② 화재사고 위기상황 발생 대처 순서

화재 시 사망자 중 가스과 연기에 의한 질식사자가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사람은 당황하면 평소보다 3배까지 호흡량이 많아져 화재사고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흡입하게 되므로 관객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관객피난유도이다. 관객은 건물의 구조, 출구나 대피방향 등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연장 안전관리자는 신속하고 적절한 피난유도를 대비하여야 한다.

### 가) 화재상황 판단

화재사고 상황을 판단하여 신고한 후 피난계획에 따라 관객 대피를 준비한다.

### 나) 사고 안내 · 피난 유도 방송

피난유도 안내 시에는 불안을 없앨 수 있도록 차분하지만 엄한 어조로 침착하게 안내하며 가급적 방송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확장기의 고저, 강약을 확인하여 방송하도록 한다. 사전에 녹음된 안내방송 여부를 확인하여 훈련이나 대피 시 활용하여도 된다. 비상연락 체계에 조직별로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비상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부서와는 사전 준비를 통해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다) 피난 유도

경보기의 벨을 눌러 관객에게 화재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대피를 유도한다. 비상구를 통하여 대피할 때에는 반드시 문을 닫고 진행하여 화재와 연기의 확산을 지연시킨다. 대피 진행 시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여성 등을 우선 안내한다. 대피 상황을 주시하여 돌발행동이나 특이사항 발견 시 바로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참고사항】 화재 발생 시 일반적인 행동요령

-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한다.
-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한다.
- 문을 열기 전에 문을 손등으로 대어보거나, 손잡이를 만져보고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간다.
- 밖으로 나온 뒤에는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 연기 층 아래에는 맑은 공기층이 있으므로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이동하되 배를 바닥에 대고 가지 않도록 한다.
-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군다.

## 라) 환자 발생여부 확인 · 응급조치

대피 진행 중 환자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추가 발생이나 환자상태에 따라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 마) 사고 조치

대피 종료 후 현장 상황을 파악한다. 추가 피해자 발생여부, 인명피해조치, 위로금 지급 등 사고를 마무리한다.

## 바) 보고서 작성

사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추후 사고 대비와 대비체계를 갖추어 화재 사고에 대비하도록 한다.

## ③ 화재사고 예방대책

## 가) 사고 유형별 예방대책

- 전기사고 : 로비의 시설물 중 합선이나 과부하 되지 않도록 한 곳에 너무 많이 배선하지 않는다. 전기용품 안전인증이 확인된 제품만 사용하며, 주변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고 수시로 점검한다.
- 방화사고 :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이상행동 발견 시 주시하고 공유하며 각 객석문과 비상구 등의 시건장치를 확인한다. 공연종료 후 외부인의 출입이 없도록 보안팀과 공유하여 관리한다.
- 가스사고 : 정기적으로 가스 사용 점검을 실시하고 사용 후 밸브를 반드시 확인한다.
- 유류화재 : 사용 중에는 난방기기를 이동하지 않으며 주변에 가연물을 두지 않는다.
- 불티화재 : 무대에서 불을 사용하는 경우 계획서와 소방대책을 공유하고 연막소독이나 용접작업 등이 이뤄질 때는 소화기를 비치한 후 작업을 진행한다.

## 나) 사고 예방 점검사항

- 화재 시설물 점검표를 작성하여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점검 시설 항목〉

- 이동식소화기 정상 작동 여부
- 옥내/외 소화전 관리
-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여부
- 방화문 관리
-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시설, 비상방송시설, 비상경보시설, 가스누설경보기, 시각경보기, 누전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 소화활동설비(제연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관리 등

- 필요 시설을 확충한다.

점검표나 시설 작동상태를 바탕으로 시설물을 확보한다. 비상 시 메인설비의 기능 불가로 인한 대비책을 위하여 예비설비 또한 확보하도록 한다. 단, 공연장 규모나 공연 특성에 따라 필요 물품 구비리스트를 파악한다.

- 대피 훈련 및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실제 대피 상황을 대비한 실감나는 훈련을 위하여 사전 준비가 잘 되어있어야 한다.

첫째, 대피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훈련 시나리오 내용이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으로 설정해야 한다. 셋째,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과 관계자가 훈련계획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 매 안전교육 때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여 훈련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관객대피상황만의 반복훈련도 좋다. 주기적으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몸에 밴 훈련을 통해 위기상황 발생 시 발 빠른 대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 안전 매뉴얼을 준비한다.
- 안전훈련을 계획한다.
  - 훈련준비에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상한다.
  - 훈련계획서 작성 - 화재종류, 일정, 훈련방법, 참여인원, 대피방법 등 상세하게 정리한다.
  - 훈련안 작성 - 훈련일정에 따라 시뮬레이션 상황을 정리한다.
- 훈련계획을 공유한다.
  - 조직 구성원 이외에도 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에게 훈련내용을 보고 및 전달한다.
- 안전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다.
  - 준비된 시나리오에 맞추어 안전훈련 및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참고사항】 공연장서비스인력 관객 안전교육의 의무

공연장 및 기관에서는 공연 관련 업무를 교육시킬 책임이 있다. 관객안내와 서비스 그리고 관객 안전을 책임지며, 공연장의 전반적인 내용까지 숙지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관련 교육 내용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관객안내원은 업무와 관련된 충분한 교육훈련을 받아 공연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비상대피,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요령, 주차장 안내요령 등의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업무가 관객의 안전 확보라 할 수 있다. 비상체계와 관련한 관객안내원의 구역별 배치도를 작성하고 구역별 책임자를 정하여 각각의 임무와 점검사항을 포함한 진행서나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사고별 조치사항을 계획하고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하여야 한다. 관객안내원 배치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연(배우)의 특별한 퍼포먼스 및 공연 특징 파악
- 관객의 성향 파악
-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장애물 등, 관객의 동선을 방해하는 요소
- 로비, 무대 및 기타 지역의 통제선 유형

#### 【참고사항】 공연법 제11조의 4 (안전교육)

-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 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5.18.]

## 2) 사회적 재난

에너지, 통신, 의료, 교통 등 국가 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공공성이 큰 국가 사회기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크게는 정전, 테러를 예로 들 수 있다.

### (1) 정전

전기의 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 전기가 끊기면서 전기 시설물과 기계가 꺼지거나 오작동이 일어나면서 주변이 암흑으로 바뀐다.

보통 공연장에서는 하절기에 습도가 높고 집중호우로 인한 전기누전, 과다 전기사용(냉방기 작동 등)으로 인한 정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기본 설비 및 무대시스템 등 재작동까지 공연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다.

#### ① 전기사고의 원인

- 전력설비 고장 및 작동 지연
- 첨단설비에 대한 운용능력 부족 및 유지보수 기술 미흡
- 예비전력 공급선로 미확보
- 안전수칙 미준수

#### ② 전기사고 유형

##### 가) 정전사고

전기는 일상생활이나 산업 생산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에너지원이며 가장 친숙하고 편리한 에너지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와 소리가 없기 때문에 평상시 전기가 흐르는 것을 인식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면 대피할 만한 시간, 상황 판단, 대처할 여유가 전혀 없어 더욱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정전의 종류는 광역 정전과 재해 정전으로 구분되며, 광역 정전은 전력수요 급증에 따라 전력이 부족하여 변전소에서의 전원 공급이 중단되는 현상이며, 재해 정전은 태풍, 호우, 폭설, 이상고온 등에 의한 자연재해 또는 화재에 따른 전력설비 피해 시 발생하는 정전 등을 말한다.

##### 나) 감전사고

전기가 통하고 있는 스위치, 접속 단자, 누전 되고 있는 금속체에 접촉된 인체에 전기가 흐르는 것을 말한다.

##### 다) 전기화재사고

전기가 통하는 상태에서 전선이나 전기기기의 이상이 생겨 일어난 불이 주변의 가연물을 태워 발생한 경우로 과열, 단락, 누전, 스파크, 절연열화의 발연, 과전류 등이 있다.

- 과열 : 배선코드, 기구, 기계가 뜨거워지는 것
- 단락 : 아크, 합선이라 함
- 누전 : 전류가 정상회로를 이탈한 것
- 전기 스파크 : 전기의 절연이 파괴되어 발생하는 것
- 과부하 : 급격히 늘어난 전력사용량으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③ 정전사고 위기상황 발생 대처 순서

정전사고 발생 시 화재사고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므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객피난 유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 가) 상황 판단

정전사고 상황을 판단하여 신고한 후 피난계획에 따라 관객 대피를 준비한다.

#### 나) 사고 안내 · 피난유도 방송

피난유도 안내 시에는 불안을 없앨 수 있도록 차분하지만 엄한 어조로 침착하게 안내하며 가급적 방송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확성기의 고저, 강약을 확인하여 방송하도록 한다. 사전에 녹음된 안내방송 여부를 확인하여 훈련이나 대피 시 활용해도 된다.

#### 다) 피난 유도

경보기의 벨을 눌러 관객에게 정전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대피를 유도한다. 대피 진행 시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여성 등을 우선 안내한다. 대피 상황을 주시하여 돌발행동이나 특이사항 발견 시 바로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한국의 경우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 정전 시 스마트폰의 플래시 기능을 활용하여 대피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 라) 환자 발생여부 확인 · 응급조치

대피 진행 중 환자가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추가 발생이나 환자상태에 따라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 - 감전에 의한 인체 상해

사고 발생 후의 사망률이 매우 높고, 전류가 심장을 직접 관통하여 심장 근육을 마비시키므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 - 감전사고 시 응급조치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감전에 의한 또 다른 재해를 방지해야 한다. 이때 구조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환자를 직접 만지지 않고 전류가 흐르는 환자의 부위를 거즈나 천, 수건(비전도체)으로 분리해야 한다. 구조대 도착 전까지 구급법 중 심장마사지와 인공호흡법을 동시에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도록 한다. 감전 사고를 당한 사람은 산소 결핍 현상이 나타나므로 충분한 산소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사고 조치

대피 종료 후 현장 상황을 파악한다. 추가 피해자 발생여부, 인명피해조치, 위로금지급 등 사고를 마무리한다.

바) 보고서 작성

사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추후 사고 대비와 대비체계를 갖추어 정전 사고에 대비하도록 한다.

#### ④ 정전사고 예방대책

가) 사고 유형별 예방대책

－ 정전사고

정전사고의 예방으로는 전기사용량 점검이 중요하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예비전력을 확보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의 변화, 발전소의 고장, 냉난방설비 가동 등 전국적으로 전력수급비상 시대이다.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여 냉난방시 가동 에너지를 줄이며 전력피크시간대에 전기사용을 자제하도록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전기를 차단하여 대기전력을 제로화시킨다.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공연장 로비

－ 감전사고

주기적(평균 월 1회)으로 누전차단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노후한 전선을 교체한다. 특히 장마철 전기기구 작동 시에는 전기설비와 직접접촉이 없더라도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절연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 전기화재사고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은 전선의 합선, 단락, 누전, 과부하 등이 있다. 평소에 전기기기 사용 후 플러그를 뽑도록 하며 한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꼽는 문어발식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바닥이나 문틈을 통과하는 전선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 나) 사고예방 점검사항

－ 화재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한다.

공연장의 안전시설 중 하우스매니저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올바르게 숙지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시설물의 작동이 원활하도록 점검한다.

- 피난구 유도등은 비상대피로의 출입구에 설치하며 항상 점등되어 있어야 하며 커튼, 게시물 등에 의하여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



피난구 유도등

공연장에 따라 피난 유도등을 소등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응급상황 발생 시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항상 점등(2선식)하거나, 사고 발생 시 점등되는 시스템(3선식 회로 변경)을 갖추어야 한다.

- 파손, 변형, 탈락되지 않아야 한다.
- 수시로 점검스위치를 눌러 전원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휴대용 비상조명등 정상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객석, 분장실 등 사람이 자주 이용하거나 모이는 곳에 설치하고, 고정 장치에서 분리하여 점등여부를 확인하고 빛이 약하거나 점등이 되지 않는 전등은 배터리나 전구를 교체한다.

－ 필요 시설을 확충한다.

점검시설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치한다. 공연장의 안전시설 점검 후 발견된 문제점을 관련 업무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원활한 시설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 전기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누전차단기 동작시험을 실시하고, 수배전반 시설이 있는 곳은 전기설비 점검을 일제히 시행하여 취약개소에 대한 사전 보수보강을 해야 한다. 또한 전기설비와 접촉우려가 있는 구역에서는 방호 울타리와 위험표식을 부착하여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방지 및 누전차단에 의한 순간 정전을 방지해야 한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전기사업법’ 65조에 의거)을 공연장은 2년마다 전후 2개월에 실시해야 한다.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의거), 공연장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 및 변경 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 정전사고 발생 시 안전 매뉴얼을 숙지한다. 안전 매뉴얼에 들어가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정전사고 발생 시 안전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
  - 관객관리요령
  - 관객안내원 배치별 비상업무, 정전발생 관련 안내방송 멘트
  - 공연장구조 및 대피로
  - 비상물품리스트
  - 정전발생 대처 및 행동요령

#### 【참고사항】 공연장서비스인력 관객 안전훈련의 계획

##### 1. 정기적인 훈련계획

안전훈련의 종류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여 1년을 기준으로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며 여러 차례 훈련을 실시한다. 화재훈련이나 응급환자 발생 등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정기적·반복적으로 훈련하여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교육한다.

##### 2. 관객안내원 등의 하우스 인력 역할의 중요성

관객 안전을 책임지는 관객안내원은 관객대피와 안전 확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장기간 공연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재난이나 사고에 대한 지식과 안전훈련 연습으로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행동요령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훈련 규모에 따른 훈련 계획

안전훈련 시 실제 관객과 함께 진행하거나 현실적으로 공연장 직원이나 비상체계에 소속된 인원까지 매번 참가할 수 없다. 안전시설을 활용하거나 실제 상황에 가깝게 훈련하기 어려우므로 훈련의 종류를 구분하고 조직(팀)별 혹은 공간별로 구분하여 훈련을 계획해야 한다.

##### 4.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사고별 훈련내용을 계획할 때 반복적인 훈련과 다양한 실습을 위해 훈련마다 내용을 교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화재사고 훈련 시 발화 시작점에 대한 구분으로 무대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사고, 무대 세트에서 발생하는 사고, 객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화사고, 부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상황별 행동요령과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다. 다만 현장에 맞는 시나리오가 필요하며 소극장의 경우 훈련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질 수 있으므로 1회 교육 시 다양한 방식의 훈련 진행도 가능하다.

## (2) 테러

테러란 특정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가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행사하여 사회적 공포상태를 일으키는 행위로 사상적,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테러와 뚜렷한 목적 없이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맹목적인 테러로 구분되기도 한다.<sup>1)</sup> 최근 세계적으로 집중 인구가 몰리는 장소에서 대형 테러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테러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안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테러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 발생한 사고사례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중요성을 상기시켜야 한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파악하여 큰 피해로 번지지 않도록 사전에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예측된 사고요인을 적용하여 반복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공연장에서는 보안을 강화하고 CCTV를 설치하여 이상행동이 관찰될 경우 위험요소를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테러사고의 특성<sup>2)</sup>

국제적으로 정립된 ‘테러’의 개념은 없으나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각국의 대테러 관련법 또는 국제협약 등이 정의한 내용을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있다. (범죄조직과 구별)
- 미리 계획되고 지속성을 가진 사건이다. (시위 등 우발적 폭력 제외)
-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폭력의 사용이나 위협이 따른다. (총격·폭파·납치 등)

### ② 테러 유형

#### 가) 폭탄테러

폭발물을 이용한 테러로 테러 가운데서도 매우 무서운 테러이다. 그 이유는 굉장히 높은 살상력을 가지고 있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도 폭탄을 사용할 수 있으며, 크기가 작아 숨기기 용이한 반면 그 위력과 피해는 매우 크기 때문이다.

#### 나) 화생방 테러

##### - 화학테러

화학물질을 이용해 인위적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로 가공이 용이한 산업원료가 무기화된 것이며, 탐지가 어려워 단시간에 큰 피해를 일으킨다.

##### - 생물테러

사회 붕괴를 의도해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을 이용해 살상을 하거나 사람, 동물 또는 식물에 질병을 일으키기 위하여 테러를 일으킨다. 이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치사량을 초과할 수 있으며, 테러가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발생하여 초기에 감지하기 어렵다. 또한 감염되기 시작하면, 스스로 번식하고 확산되기 때문에 어디서 오염이 되었는지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1)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용어해설

2) 출처 : 국가정보원 대테러([http://www.nis.go.kr/AF/1\\_6.do](http://www.nis.go.kr/AF/1_6.do)) 참고

## 다) 인질납치

제3자에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유괴·감금하는 행위로 국제법상 전쟁 중 이루어지는 인질행위와 국제 테러리즘의 수단으로서 인질납치가 규율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 라) 총기난사

총을 정해진 목표물 없이 아무 곳이나 마구 쏘는 것으로 타겟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총격범의 사격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 ③ 테러 유형별 대처순서

## 가) 테러 협박 신고요령

## - 신고처

- 전화 : 국번 없이 111(국가정보원), 112(경찰), 119(소방) 중 1개소  
※ 공중전화 긴급버튼 이용신고, 휴대전화도 국번 없이 통화
- 인터넷 : 국정원 홈페이지([www.nis.go.kr](http://www.nis.go.kr))에서 좌측 상단 「111」신고센터 테러 아이콘

## - 신고내용

- 신고자 이름, 소속, 현 위치, 테러협박 등 의심스러운 내용과 이유를 6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신고한다.
- 현장 위치 설명 시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특징 있는 도로, 건물명 및 층수 등을 설명한다.
- 거동수상자 신고 시 그 사람의 옷차림(종류 및 색깔), 외견상 특이점(콧수염, 흉터 등), 행동 상 수상한 점을 정리해서 신고한다.  
※ 가능하면 신고내용을 간단히 메모, 의심스러운 부분을 강조한다.
- 물품이나 차량을 신고 시에는 크기나 색깔, 재질(목재, 비닐 쇼핑백 등), 차량번호와 차종 등을 가급적 상세히 설명한다.

## - 유의사항

- 신고 시 가급적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대상자 또는 내용물이 의심스러운 물품·차량 등을 감시하면서 신고한다.
- 거동 수상자 신고 시 그 사람이 눈치 채지 않도록 신고하되 간헐적으로 대상자의 동태를 파악한다.
- 의심스러운 물품·차량을 발견 시 현장 상황에 따라 대상과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가급적 벽이나 기둥 등 장애물 뒤에 몸을 숨긴 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고한다.
- 색 가루 등 생화학 테러 의심물질인 경우 물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시설물 내 일반인을 우선 대피시킨 후 신고한다.

## 나) 테러 유형 별 행동 요령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무대시설안전지원센터(2010) 공연장 안전 매뉴얼 핸드북 ‘테러’,  
국민안전처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테러 시 행동요령’ 참고

－ 폭파 · 살해 협박전화 접수

- 전화를 끊지 말고 협박내용을 경청하며 전화를 건 사람이 계속 말을 하도록 시간을 끌면서 녹음할 수 있으면 반드시 녹음한다.
- 전화를 건 사람이 무의식중 제공하는 단서(성별 · 연령 · 발음 · 억양 등)에 유의하면서 의도 · 협박동기 및 기타 언급사항을 그대로 기록하고, 통화가 끝나는 즉시 지휘체계에 따라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 폭발물 · 화생방 테러 의심물품 발견

- 발견 즉시 관계기관과 방재실에 신고한 후 전문가(EOD 등)가 도착할 때까지 통제구역을 설정하여 함부로 만지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 화생방 테러 의심물질의 경우, 옷 또는 신문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덮어두고, 확산방지를 위해 에어컨 · 환기시설 등을 정지시킨다.
- 휴대전화, 라디오, 무전기 등은 기폭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 가까운 출입구로 관람객들이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신체보호를 위해 즉시 바닥에 엎드려 양팔과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고 손으로 귀와 머리를 감싸도록 안내한다.
- 2차 폭발에 대비, 미리 일어나지 말고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엎드린 자세로 이동하도록 관람객 유도한다.
- 밖으로 대피한 후에는 안전거리 밖으로 대피한다.
  - 건물 붕괴 대피 안전거리 : 건물 높이 이상
  - 폭발물 대피 안전거리 : 500m 이상

－ 화학 테러 의심

- 화학물질에 노출된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한다.
-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옷으로 피부를 감싸 노출을 방지한다.
- 가까운 출입구로 관람객들이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 실외에서는 바람을 안고 이동하되 높은 곳으로 대피한다.

－ 억류, 납치<sup>3)</sup>

- 납치, 감금 시 일단 순응하고 탈출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탈출하지 않는다.
- 답변은 되도록 짧게 자연스러운 자세로 대답하고, 화를 내지 않으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 또 다른 인질들도 함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납치범과 대적하는 일은 없도록 주의한다.
- 외부에서 구출을 위한 수단이 동원되고 있으므로 절망감을 느끼지 말고 탈출로 등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파악한다.
- 구출작전이 전개될 때는 즉시 엎드려야 한다.

－ 총기난사

- 총격범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확보하고 장애물 뒤로 숨고, 발각되지 않도록 휴대전화 벨소리는 무음으로 바꾼다.
- 총격범과 마주쳤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해 총격범을 공격한다.

3) 출처 : 국민안전처,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테러 시 행동요령’

- 평상시 항상 출입구의 위치를 기억해두도록 하고,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인다.

#### ④ 테러 예방대책

가)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한다.

시설물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해 내부 시설물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시설물의 변화 감지를 파악한다.

나) 필요 시설을 확충한다.

테러사고 발생 시 필요할 수 있는 재난대피용품이나 응급약품키트 등을 보유하도록 한다.

다) 대피 훈련 및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예측할 수 없는 유형의 테러사고가 많으므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여 공유하도록 한다. 테러사고의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조요청의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응급처치가 필요할 경우 바로 조치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의 기본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는 것도 좋다. 상황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과거 발생했던 시청각자료를 활용하여 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안전 매뉴얼을 준비한다.

– 안전훈련을 계획한다.

- 훈련준비
- 훈련계획서 작성 : 테러사고 종류, 훈련일정, 훈련방법, 참여인원 등 상세하게 정리한다.
- 훈련안 작성 : 훈련일정에 따라 시뮬레이션 상황을 정리한다.

– 훈련계획을 공유한다.

조직 외의 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에게 훈련내용을 보고 및 전달한다.

### 3) 자연 재난

지진, 폭설, 태풍, 가뭄, 황사 및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유형으로 최근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진에 대비한 안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 (1) 지진

##### ① 지진 사고의 특성

우리나라는 점점 지진 횟수가 잦아지고 강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이에 따른 대비와 현장 대응 방법이 중요해지고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 지진 이후 이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졌고 사고 대안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건축의 형태나 지진 규

모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안과 행동요령이 필수적이다.

지진으로 공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주로 비구조물(내진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의 파손 및 반입 무대장치의 전도 등에 의한 시설 손상 및 인명 피해가 있다.<sup>4)</sup>

- 무대시설 파손 및 균열 발생
- 와이어로프 소선의 풀림 및 파단
- 공연장 내부 인테리어 마감재 파손 및 낙하
- 벽면에 고정된 앵커볼트의 이탈(구조물과 프레임 접합부)
- 매달린 스피커 파손 및 낙하
- 전기 케이블 절단
- 조명기 클램프 고정 볼트 풀림 및 낙하
- 화재 및 정전 발생

## ②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지진 발생 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이다. 실내에 위치하고 있다면 머리를 감싸고 책상이나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큰 진동이 멈춘 후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가능한 한 낙하물이나 붕괴될 위험이 없는 곳으로 대피(선반, 벽장, 유리 주변은 피할 것)한다. 작은 진동을 감지했을 경우 가스밸브를 잠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탈출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야외에 위치했을 경우 높은 빌딩이나 기둥, 담 등은 쉽게 무너질 수 있으므로 멀리하고 건물이 없는 야외 광장, 공터로 이동하도록 한다.

공연장이나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작은 위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동요되기 쉽고 자칫 압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침착함을 유지하고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구조물의 아래 또는 옆으로 피해 몸을 웅크린다.
- 계단을 대피 공간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 지진 발생 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이므로 테이블 등의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곧바로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아야 하고 타고 있을 때는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려 대피한다. 갇혔을 때는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한다.
- 진동이 멈춘 후에는 공터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고 가설물이나 고정되지 않은 물건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4) 출처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지진에 의해 공연장(무대와 객석 공간에 한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유형’

## ③ 공연장 지진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가) 경미한 지진(진도 2~3 이하) 발생 시 공연장 관객 대응 방법

- 관객이나 출연자가 느낄 만큼 진동이 클 경우(대략 진도 3 이상) 관객들에게 “의자 사이로 들어가 몸을 굽히십시오.”라고 안내하고 공연장 안 조명을 밝힌다.
- 상들리에처럼 천장에 매달린 물체나 유리벽 등, 떨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 근처에 있는 관객들을 이동시킨다.
- 작은 진동(대략 진도 2 이하)이라도 출연자가 느껴서 공연이 일시 중단된 경우 관객들에게 이를 방송으로 알린다. 피해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공연장 안팎에서 특별한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관객들에게 알리고 공연을 재개한다.

나) 큰 지진(진도 4 이상) 발생 시 공연장 관객 대응 방법

- 부상자나 깔려 있는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조한다.
- 지진의 규모가 크면 통화량이 증가해 119에 연결되지 않으므로, 인근에 소방서가 있을 경우 직접 가서 알린다.
- 소방대나 구급차의 도착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관객의 협력을 얻어 부상자를 응급조치하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 관계자와 대응 방침을 협의해 공연 중단과 재개, 티켓 관리, 관객조치(대피유도장소, 귀가가 어려운 관객 조치) 등을 결정한다.
- 지역 주민들이 대피해 온 경우 먼저 휴식 장소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방재부서와 협의하여 대피소를 운영한다.

다) 상황 진정 이후 대처 방법

- 상황 파악

일단 진동이 멈추면 직원은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로 지진 정보를 수집하고 공연장 안팎의 상황을 조사해 신속히 정보를 전달하고 향후 대응을 위해 노력한다.

- 환자 발생여부 확인 · 응급조치

지진 상황 중의 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상태에 따라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 후속 조치

지진 강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상황에 따라 행동한다. 공연 속행 여부는 주최자 측과 협의하고, 지진 정도에 따라 전기, 수도, 가스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휴관 일수, 대응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진 강도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며 상황에 따라 행동한다.

|     | 진도                        | 상황사례                                                                                                 | 대응책                                                                                                                                                                                             |
|-----|---------------------------|------------------------------------------------------------------------------------------------------|-------------------------------------------------------------------------------------------------------------------------------------------------------------------------------------------------|
| 상황1 | 진도1<br>진도2                | 출연자는 진동을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 관객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바튼이 약간 흔들린다.                                        | 무대/조명/음향 담당자는 무대를 비롯한 설치도구들이 공연이나 안전상 지장이 없는지 육안으로 점검한다. 공연 중에 점검할 수 없는 것들은 공연이 끝난 후에 점검한다.<br>시설 관리 직원은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설비 기기를 점검한다.                                                                |
| 상황2 | 진도3<br>진도4                | 공연이 일시 중단된 상태로, 출연자와 관객이 모두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이다. 비명을 지르고 자리에서 나가려는 관객도 있다. 바튼이 심하게 흔들리고 불안정한 물건들은 쓰러진다. | 무대 담당자는 주최 측의 양해를 구해 공연을 중단시킨 뒤, 조명 및 음향 담당자와 함께 무대를 비롯한 설치 도구가 넘어지거나 고장을 일으키지 않았는지, 안전한지 확인한다.<br>음향 담당자는 관객들에게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한다.<br>시설 관리 직원은 누수, 가스 누출, 기타 건축 및 설비의 손상여부를 조사하고 점검한다. |
| 상황3 | 진도5 약/강<br>진도6 약/강<br>진도7 | 공연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로, 물건들이 떨어지고 넘어간다. 출연자와 관객들은 공포를 느껴 매우 당황한 상태이며, 정전이 될 가능성도 높다.                        | 무대 담당자는 출연자의 대피를 유도한다.<br>조명 담당자는 무대 위 조명을 가장 밝게 하고 객석의 조명도 모두 켜다.<br>음향 담당자는 공연장 밖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방송한다.<br>사무실 당직자는 공연장 전체에 대피 방송을 하고 부상자가 있으면 대피를 돕는다.                                     |

#### ④ 지진사고 예방대책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을 비롯하여 국내에서도 잦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7년 8월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수리해 내진 성능을 갖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들의 안전 확보와 피해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대비책이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로 그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전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진발생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 건축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한다.

시설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사항을 정리하여 각 시설별, 업무별로 구분하여 각 부서에 문제 사항 개선을 요청한다. 특히 노후 건축물일수록 지진에 취약하므로 주의하도록 하며 기둥이나 건축물 내외부에 균열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나) 필요시설을 확충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내진성능을 점검하여 내진보강이 필요한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 대피 훈련 및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대규모 지진은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으면 실제 상황 발생 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지진 대비 훈련 진행시에는 실제 상황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실감나는 교육과 훈

련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매뉴얼을 곳곳에 배치하고 시청각자료를 활용하는 등 정기적인 지진 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 재난 대비 물품 리스트

- 손전등 : 배터리나 자가발전이 가능한 제품으로 선택한다. 지진 발생 시에는 건물 붕괴로 인한 가스누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냥이나 라이터 등 불꽃 사용은 주의해야 한다.
- 라디오 : 재난발생 시 수시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터리 사용이 가능한 소형 라디오를 준비한다.
- 식수 : 장기 보관을 하더라도 상하지 않도록 밀폐된 용기에 담아 준비한다.
- 비상식량 : 라면 등과 같은 조리 음식보다는 통조림과 같이 장기보관이 가능한 제품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 면장갑 : 건축물 붕괴로 인한 전기화재, 정전 사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장갑을 준비한다.
- 호루라기 : 응급구조 시 인명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도구를 준비한다.

【참고사항】 재난사고 대응 교육 계획

1. 재난사고의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
  - 정전, 지진, 홍수, 폭우, 폭설 등
2. 재난 사고 관련 정보를 파악한다.
  - 재난사고의 위험성, 신고방법, 안전시설의 종류 등
3. 재난 사고별 행동요령에 대해 교육한다.  
재난 사건 발생 시 행동요령, 구역별 행동요령에 대해 설명하고 훈련을 실시한다.
  - 정전사고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해 교육한다.
    - 1) 사고발견팀 - 사고원인 확인, 공연지속여부, 대피여부
    - 2) 대피유도팀 - 담당구역별 인원확인 및 대피유도 · 대피진행
    - 3) 피해지원팀 - 부상자 확인, 응급조치, 환자이송
    - 4) 시설점검팀 - 전력수급, 고장설비 복구, 담당 설비 확인 점검
  -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해 교육한다.
    - 1) 사고발견팀 - 사고원인 확인, 공연진행여부, 대피여부
    - 2) 대피유도팀 - 담당구역별 인원확인 및 대피유도 · 대피진행
    - 3) 피해지원팀 - 부상자 확인, 응급조치, 환자이송
    - 4) 시설점검팀 - 전력수급, 고장설비 복구, 담당 설비 확인 점검
  - 침수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해 교육한다.
    - 1) 사고발견팀 - 사고 발생지 확인, 공연진행여부, 대피여부
    - 2) 대피유도팀 - 담당구역별 인원확인 및 대피유도 · 대피진행
    - 3) 피해지원팀 - 부상자 확인, 응급조치, 환자이송
    - 4) 시설점검팀 - 고장설비 복구, 담당 설비 확인 점검

라) 추락 및 전도 위험 시설물의 고정 및 제거를 실시한다.

－ 객석 및 무대에 비치된 시설물의 고정

## (2) 태풍 및 강풍

### ① 태풍 및 강풍 사고의 특성

평균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인 바람이 1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강풍이라고 하며, 열대 해상에서 발원하여 초속 17m 이상의 바람을 포함한 경우를 태풍이라고 한다. 태풍은 우리나라에는 주로 7~9월에 영향을 미치며 집중 호우와 강풍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다.

### ② 태풍 발생 시 행동 요령

태풍은 일기예보를 통해 미리 예측할 수 있으므로 태풍의 진로나 도달 시간을 파악하여 대비하도록 한다.

#### 가) 태풍 오기 전

- TV나 라디오를 수신하여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숙지한다.
-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지역의 경우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망을 파악한다.
- 유리 파손 때문에 생길 피해를 줄이도록 유리에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붙인다.
- 바람에 날아갈 물건이 공연장 주변에 있다면 미리 제거한다.

#### 나) 태풍이 지나간 후

-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가 있을 경우 시·군·구청에 연락한다.
- 감전위험이 있으니 고압전선 근처에 가지 않는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국전력에 즉시 연락한다.

### ③ 강풍 발생 시 행동 요령

#### 가) 강풍이 오기 전

- 문과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한다.
- 유리창이 깨졌을 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유리창에 안전 필름을 부착한다.
- 간판 등과 같이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해 두거나 실내로 옮긴다.

#### 나) 강풍이 지나간 후

- 피해를 조사하고 사진을 촬영해 둔다.
- 가스, 수도, 전기 등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강풍으로 인해 파손된 전기시설 등 위험 상황을 발견했을 때에는 119나 시·군·구청에 즉시 신고한다.

### (3) 폭설

하루에 20cm 이상 또는 1시간에 1~3cm의 눈이 강약 주기를 반복해서 내리는 것을 폭설이라고 한다. 폭설로 인한 교통 혼잡과 시설물에 쌓인 많은 눈으로 인해 동파 및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인근 도로의 제설작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충분히 뿌려 미끄럼을 방지한다.

#### ① 폭설 사고의 특성

- 대설 주의보, 경보 발령기준
- 대설 주의보 : 24시간 신적설량이 5cm 이상 예상될 때
- 대설 경보 : 24시간 신적설량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산지는 30cm 이상 예상될 때

#### ② 폭설 발생 시 행동 요령

- TV, 라디오 등을 시·청취하여 폭설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파악해야 한다.
- 공연장 주변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한다.
- 고립지역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폭설 발생 시 공연장 행동 요령(공연 취소 결정 필요시)

공연단체와 협의하여 공연을 취소하고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리며 예매자에게는 문자서비스 등 사전연락을 한다.

## 4) 생활안전 사고

인적, 사회적, 자연재난 등을 제외하고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의 유형이다.

### (1) 관객상해 사고

#### ① 관객상해 사고유형

가) 개인 지병에 의한 환자

뇌전증(간질), 호흡곤란, 구토 등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은 환자 본인뿐 아니라 주변 관객, 관객안내원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럴 때는 가급적 소란스럽지 않도록 주위를 안심시키며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이 중요하다.

나) 기타요인

타박상, 개인 부주의에 의한 사고 발생 시 관객안내원이 확인 후 조치하며 응급환자인 경우 하우즈매니저가 신고하고 해결하도록 한다.

## ② 관객 상해 시 대응방법

### 가) 고객조치 및 상황 정리

- 공연 중 관객의 건강이상 발생 시 안전관리요원은 관객을 객석 바깥으로 옮긴 다음,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가능한 안정을 취하도록 조치한다.
- 관객이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하면 119에 연락하여 응급의료지원을 요청한다.
- 하우스매니저는 관객이나 함께 온 사람을 통해 관객의 병력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사람에게 알린다.
- 구급차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공연장 밖에 안내자를 배치한다.
- 하우스매니저는 사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 나) 사후조사 및 재발방지

### 다) 인명 사고 보상 문제

-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지나치게 책임을 추궁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럴 때에는 공연장 측에서 냉정하게 원인과 책임을 검증하고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변호사, 경찰, 보험회사 등 전문가와 상의한다.

## (2) 낙상 사고

### ① 낙상사고의 특성

낙상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것으로 낙상사고가 일어날 경우 신체에 큰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 외상이 크지 않을 경우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나 머리 손상의 경우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공연장에서는 주로 무대에서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기계이상이나 오작동에 따른 사고도 많지만 개인 안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도 발생한다. 특히 높은 층에 위치하고 있는 공연장 갤러리나 바튼 등 기계를 사용하는 조명장비나 음향장비 설치 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무대 장치를 이용하거나 조작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가 조작해야 하며 작업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 ② 낙상사고 발생원인

- 환경적 요인(미끄러운 바닥, 어두운 장소 등)



미끄러운 바닥

- 안전장비 미착용
- 장애물
- 기계설비 고장
- 행동적 위험요인(개인별 인지 기동성 저하, 약물복용의 부작용, 보행 장애 등)

### ③ 낙상사고 예방대책

#### 가) 로비 · 객석에서

- 관객 안전 확보
- 안전장치 및 바닥재 점검
- 유동인원에 대한 동선 확보
- 인적요인 관리(노인, 유아, 여자 등의 순으로 낙상사고 발생률이 높음)

#### 나) 무대에서

- 근무자 안전 확보
- 현장상황파악
- 전문가의 기계 작업 및 조작
- 안전 보호 장비 필수 사용

#### 다) 낙상사고 대비훈련

- 낙상사고 안전 매뉴얼을 준비한다.
- 낙상사고 안전훈련을 계획한다.
  - 훈련준비
  - 훈련계획서 작성 : 낙상사고의 종류, 훈련일정, 훈련방법, 참여인원 등을 상세하게 정리한다.
  - 훈련안 작성 : 훈련일정에 따라 시뮬레이션 상황을 정리한다.
- 훈련계획 공유 : 조직 외의 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에게 훈련내용을 보고 및 전달한다.
- 낙상사고 발생 시 안전 매뉴얼을 파악한다.
  - 낙상사고 발생 시 대처 순서
  - 낙상사고 발견 시 대처 요령
  - 사고환자 응급처치 물품리스트
  - 사고처리방법

### (3) 기타 사고

요즘 공연장은 공연관람 외에도 부대시설 이용이나 다목적 공연장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그만큼 로비에 이용객이 많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때문에 공연시간 이외에도 이용자들이 많고 관객들의 방문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공연장의 출입을 제재할 수 없다면 이를 관리하고 사고로부터 예방하는 것 또한 하우스매니저의 몫이다.

#### ① 부대행사에 의한 사고

공연 전 · 후로 진행되는 부대행사에는 언제나 관객들이 모인다. 넓지 않은 공간 안에서 자칫하

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객과 관리 요원 모두 주의해야 한다.

## ② 시설물에 의한 사고

이동수단(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극장 시설물(포토존), 극장 부대시설(어린이놀이방) 등

### 가) 포토존

공연장의 포토존은 여러 형태를 띠는데 그 기준이 공연장마다 다르고 장소나 위치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기획사와의 협조가 필요하다. 로비에 배치되고 관객의 접촉이 많은 시설물인 만큼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 사고유형은 다음과 같다.

- 관객이 포토존에 기대서 있다가 넘어지는 경우
- 포토존 지지대가 약해 쓰러지는 경우
- 포토존 모서리나 지지대에 긁히거나 옷이 걸려 찢어지는 경우
- 전력량 초과에 의한 누전 사고



포토존

### 나) 어린이 놀이방

어린이 놀이방은 공공극장의 부대시설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시설이다. 공연장의 특성이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큰 규모의 공연장의 경우 보육교사를 따로 채용하여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공연장 관객안내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이 돌보는 경우가 많다. 놀이방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보호자에게 알린 뒤 사고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우스매니저와 상의하도록 해야 한다.

- 놀이시설에 의한 사고
- 개인 부주의에 의한 찰과상
- 삼킴, 흡입사고
- 갑작스러운 외부인 침입이나 화재로 인한 피해 등

다) 설치물, 전시물, 진열품 낙하

- 공연 홍보를 위한 전시물(천정, 벽면, 등신대 등)
- 외부 가로등 배너
- 객석 층간 낙하물(관객 개인물품, 휴대전화, 생수통 등)



난간위에 올려져 있는 관객 휴대전화

### ③ 공연 장르별 사고

공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유형을 공연장의 공간별로 구분하여 파악한다. 하우스매니저의 주요 관리부분은 객석과 로비 중심이지만 공연 중에는 무대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무대 관련사고 또한 파악하도록 한다.

가) 객석사고의 유형과 예방대책

공연진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공연 중 관람분위기 관리 등의 객석관리이다. 객석관리는 공연에 맞는 진행 형식과 배우, 스태프, 관객의 요구에 따라 원활한 진행을 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중 관객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관객이 공연관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관객 관람 방해 행동

공연관람 예절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나 관객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이들에게 빠른 판단과 대처가 쉽지 않다. 관객의 관람예절과 공연장의 객석관리 노하우가 잘 맞춰졌을 때 좋은 관람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관람예절 무시

공연관람 예절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 작게는 옆 관객에게 크게는 공연 전체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고성·잡담·싸움 같은 개인적인 관람 성향의 문제에서 발생되기도 하고 휴대전화나 사진촬영·녹음 등에 관련된 문제에서도 많이 발생하며 집중방해로 인해 관객간의 싸움으로

커지기도 한다. 공연장에서는 공연 시작 전부터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람예절을 고지하여 타객의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공중도덕을 지켜달라는 안내를 한다. 방법으로는 관람예절 안내문 부착, 관객안내원 직접멘트, 방송멘트 등이 있다.

#### – 객석난동

관객의 객석난동 사례의 경우 만취관객인 경우가 많다. 보통 만취관객은 입장 시 확인이 가능하지만 티켓을 소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장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관람예절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퇴장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객석난동의 경우 공연 관람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방지가 어렵다.

#### – 돌발행동

일반적인 공연에서 보기 어렵지만 어린이 공연이나 장애인 단체관람의 경우 더러 발생한다. 장애인 개인별로 관람하는 경우는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단체로 관람을 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이 속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들의 돌발행동은 다른 관객에게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해나 폭행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는 다른 관객을 위해 퇴장 요구나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하다. 사전에 반드시 장애인 관람객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하며 보호자 유무와 객석의 위치 등을 상세하게 공유해야 한다. 입장 후에는 관객안내원이 해당 관객의 좌석을 파악하여 공연 중 특이사항이 없는지 세심히 관리하도록 하며 관람 중 불편함이 있을 경우 즉시 도움을 주도록 한다.

#### 나) 야외 공연·행사의 유형과 예방대책

실내 공연장이 아닌 야외에서 진행되는 공연이나 연예인이 출연하는 행사의 경우 인파가 모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사고 위험 요소를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공연의 경우 공연진행자는 공연의 규모와 예상 관객에 따른 안전관리 인력확보, 안전관리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대처 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련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계획 제출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의 대처가 가장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한다. 여기서 무대에 집중되어 있는 인파 속에 가장 중요한 자기 안전에 대한 인식도 잊어서는 안 된다.

#### – 압사사고

공연 전·후로 한 번에 몰리는 출입문에서 많이 발생한다. 관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가슴이 눌러 원활한 호흡이 일어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외상성 질식사’ 라고도 하며 이러한 상태가 4~5분 정도 지속되면 사망할 수 있다. 초창기 공연 사고는 대규모 인파를 정리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주최 측의 안전관리 미숙, 현장진행체계 미흡 등의 문제로 발생했다. 이외에 관객의 돌발행동이나 안전선 이탈 등의 발생 원인도 있다.

야외 행사장에서는 질서유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현장 안내 인력이 질서 있게 이동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안전 위기상황을 각별히 관리해야 한다. 실내 공연장과 다르게 야외 관중의 움직임이 보다 활동적일 수 있으므로 현장관리 배치 인력을 늘려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압사사고의 예방 대책

- 시각적 안전 주의 안내 : 출입구 및 관객 혼잡 예상 구역에 경고이미지를 첨부한 경고표시,

넘어짐 주의, 앞사람 밀지 않기 등의 안내문을 제작하여 붙여둔다.

- 청각적 안전 주의 안내 : 출입문을 관리하는 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몰려 있는 관객에게 압사 사고의 위험에 대해 안내한다.

“공연 질서를 위해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천천히 입장해 주세요.”

“출입 및 퇴장 시 앞 사람을 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넘어진 사람을 발견하면 큰 소리로 모두에게 알리고 자리에서 멈춰주세요.”

#### － 추락사고

최근 몇 해에 걸쳐 야외에서 공연을 보기위해 몰려든 인파 중의 일부가 환풍구나 채광창 위에 올라갔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환풍구는 안전장치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고 지자체마다 기준도 달라 그 자체를 관리하기에 역부족이고 채광창 역시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누구나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이므로 현장관리 배치 인력을 늘려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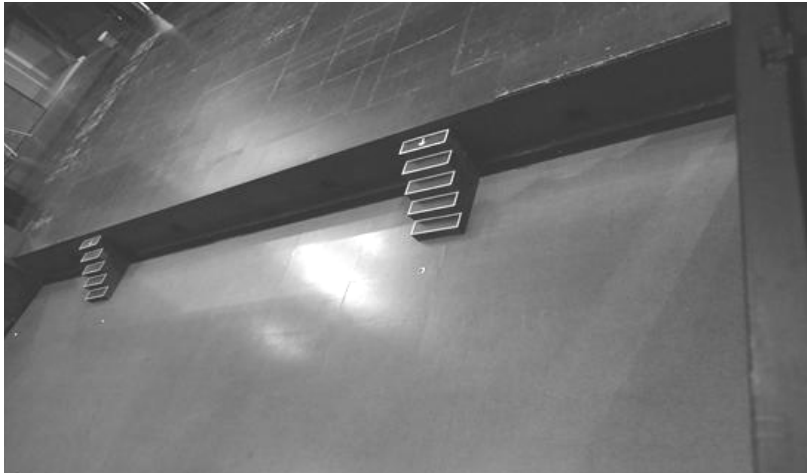
#### • 추락사고의 예방 대책

- 위험구역 접근 통제 : 야외 장소나 체육관, 시설 등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 해당 장소나 시설이 공연을 전용으로 하는 공연장이 아니므로 공연 종류에 따라 무대 위치, 관객 입장 구역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공연을 기획하는 자는 공연 목적에 의해 사용되는 시설이나 장소의 위험구역을 사전에 파악해둬야 할 필요가 있다. 관객이 입장하는 객석 구역이 정해졌으면, 객석 구역 내 위험 요인을 파악해야 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혹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제거 및 보완할 수 없는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면 관계자 외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펜스, 안전띠 등을 사용하여 통제해야 한다. 그렇다고 통제수단만 갖춰놓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전의식이 낮은 관객들이 통제수단을 무시하고 접근할 수 있으므로 위험 정도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접근을 확실히 통제한다.
- 위험구역 경고 : 안전의식이 낮은 관객의 불안정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 구역에 경고 문구를 부착하여 시각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주의시켜야 한다. 특히 야외 공연은 환경에 따라 공연 중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다. 정해진 객석 구역이 아니더라도 무대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는 장소에 있는 구조물, 나무 등은 공연에서의 위험요인으로 판단해야한다. 이러한 위험 요인을 시설로 통제하는 것은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 어려우므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경고 문구를 부착하고 구역별 안전관리요원을 지정하여 순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 스탠딩 콘서트(standing concert)의 사고 유형과 예방대책

스탠딩 공연은 객석과 무대와 가까이 있어 관객이 좀 더 자유롭게 공연을 즐기고 무대 위 출연자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연이다. 무대 앞쪽에 안전펜스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관객이 흥분하지 않도록 차분히 입·퇴장을 진행해야 한다. 스탠딩 공연은 안전요원의 역할이 크다. 수시로 객석의 관객 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스탠딩 콘서트의 경우 과호흡, 실신 등의 응급상황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므로 공연장 내부에 임시로 응급처치시설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구조요원 상주, 임시 침대

설치, 응급 처치 키트, 들것 구비 등)



스탠딩 콘서트 공연장 객석

－ 실신

공연 중 많은 인파에 밀려 공연 관람 중 호흡곤란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인파에 밀려 호흡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하지만 개인적인 지병인 경우도 간혹 있다. 이러한 경우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이후 추가적으로 응급실 이동 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 발작증상

갑자기 증세가 나타나며 여러 종류의 증상이 있다. 대개 환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증상이 많으므로 주위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주요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간질, 통증 등이 있다.

－ 무대난입

무대와 객석이 가까운 경우 관객이 흥분상태에서 무대 위로 난입할 수 있다.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대중 콘서트 등은 사전에 안전펜스 설치와 안내 요원 배치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라) 어린이 공연의 사고 유형과 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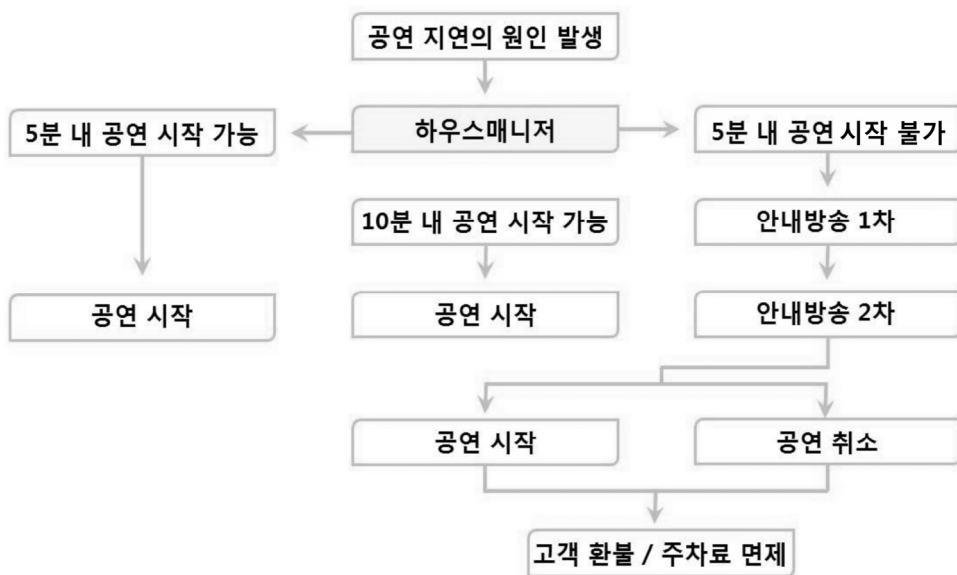
어린이 공연의 특성상 고성과 잦은 이동은 다른 관객들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요즘은 객석 내 보호자 없이 어린이만 관람하는 경우가 많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착석한 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의자에 끼이기도 한다.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 관객안내원이 가까이에서 객석을 주시하고 관객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암전이나 큰 음향효과, 악당이 나타나는 경우 객석을 살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최근 공연장에서는 어린이 관객의 안전한 공연관람을 위하여 ‘보호자 동반관람’을 권장하는 추세이다.

## ② 공연 진행 사고

## 가) 공연 시작 지연 사고

통상적으로 공연 10분 이상 지연 될 경우 안내멘트를 방송하여 관객에게 알리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 배우 스탠바이 불가(지각, 개인사정)
- 천재지변에 의한 관객 입장 지연
- 객석정리 미흡
- 기타 갑작스러운 무대준비 상황 등에 따른 지연
- 매표소 관련사고(기계 · 발권시스템 오류, 초대권 다량 배포)
- 주차장 주차 관련사고



공연지연 시 대처 흐름도

## 나) 공연 취소

공연단체, 배우, 시스템 오류 등 현장 조치가 어려워 최종적으로 공연이 진행될 수 없을 경우를 말한다. 안내멘트를 방송하여 관객에게 알리고 사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공연단체와 협의한다.

- 배우 스탠바이 불가
- 무대 문제 발생에 의해 공연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연 관객 위기 대응 및  
관리 매뉴얼



## 제2장 공연장 안전사고 사례와 통계

1. 공연장 안전사고 사례
2. 통계로 본 안전사고



## 1 공연장 안전사고 사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공연장에서는 충분하지 못한 관리로, 또는 예기치 못한 변수의 발생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공연장의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고사례를 통해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 앞으로의 사고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내외의 공연장 안전사고의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상황설명을 위해 기사 검색을 통해 확인한 내용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 1) 국내사례

#### (1) 실내공연

##### ① 1970년대

1970년대에 발생한 국내의 실내 안전사고 사례로, 1972년 12월 2일, ○○방송 개국 기념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밖으로 나오는 도중 평하는 소리와 함께 무대 위 조명장치가 터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의 원인은 전기과열로 인한 합선이었다. 정전이 되면서 유리창이 열기로 인해 깨졌으며 이 과정에서 질식사, 압사, 추락사 등이 발생했고 대부분이 사망하여 많은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화재는 소강당을 제외한 3천여 평을 모두 태우고, 사고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51명이 질식 또는 소사하고 76명이 부상을 당했다.

##### ② 1990년대

1990년대에 발생한 안전사고의 사례로는 1991년 10월 17일,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나이트 클럽에서 농민 김모씨(당시 29세)가 나이트클럽 내에 위치한 무대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질러 클럽 내부에 있던 손님들 중 16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다. 이후 사고 다음 해인 1992년에 두 차례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2월 18일 △△경기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미국 팝 그룹 ‘뉴키즈 온더 블록’의 공연 도중 공연장 뒤에 위치하고 있던 10대 소녀 팬들이 무대 앞으로 몰려 60여 명이 압사로 인한 중경상을 입은 바가 있었으며, 같은 해 11월 18일에는 □□극장 내 대극장의 무대장치가 무너져 연습 중이던 ◇◇예술단 소속 단원 29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붕괴 사고가 있었다. 1996년에는 △△공연장과 대구 ○○홀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11월 10일 △△공연장에서 오페라 공연 중 세 차례의 순간적인 정전으로 인해 진행 중이던 공연이 잠시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대구 ○○홀에서는 12월 16일 HOT 공연 중 팬들이 무대 쪽으로 몰리면서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가 있다. 1998년 12월 4일, 순천시에 위치한 실내체육관에서 ‘소년소녀가장 돕기’ 콘서트 중 HOT에게 많은 여학생 팬들이 몰리며 2명이 실신하고 10여 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 ③ 2000년대

2000년대에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들로는, 2001년 11월 전주 ○○공연장 대극장에서 무대에 조명 포커싱을 하던 김 모 씨가 10미터 높이에서 유압사다리과 함께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김 모 씨는 다리과 어깨, 골반 골절로 인해 3개월 동안 입원을 하는 부상을 당했으며, 2002년 8월 30일, △△센터에서 연극 공연시작 30분 후 정전사고가 발생했으나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전기가 복구된 후 공연을 재개하여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2003년 8월 15일, 명동 ◎◎회관에서 뮤지컬 무대준비 중 스피커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특수효과를 담당하던 권 모 씨가 사망했으며 1명이 부상을 당했다. 같은 해 9월 20일, △△공연장에서 뮤지컬 공연 중 무대장치의 전기설비 고장으로 인해 무대 장치가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배우들은 사다리로 이동하고 결국 공연은 중단되었다. 2004년 2월 29일, □□회관에서 어린이 뮤지컬 공연 도중 3층 객석 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는 특수효과를 위한 장치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 불뚝이 뛰면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같은 해 ☆☆극장에서는 3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극장 전속 조명 크루 백 모 씨가 8미터 높이에서 조명 포커싱을 하던 도중에 유압사다리가 객석으로 전복되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16일에는 무용공연 시작 5분 후 대극장 천장에서 석고보드가 떨어져 관람 중인 초등학교 관객 1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하여 공연이 취소되고 부상당한 관객은 바로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또한 ☆☆극장에서는 이듬해 2월 15일에 한 번의 사고가 더 발생했다. 대극장에서 연극배우가 리허설 도중 안전상태에서 퇴장하다가 실족하여 첫 공연이 취소되었으며, 같은 해 7월 11일, 성남시에 위치한 한 여고 체육관에서 한 음악전문 케이블 방송 녹화 도중 한 연예인을 보려고 관객들이 무대로 한꺼번에 몰려들어 1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07년 12월 12일, △△공연장에서 오페라 도중 화재 사고가 발생한 바가 있다. 이 화재로 무대 시설의 상부기계, 조명기자재, 음향기기, 배관선로, 철골과 벽체 등 외부 구조물도 손상되어 전면 보수를 했고, 다음 날인 13일에는 ○○체육관에서 뮤지컬 2막 공연 도중 음향장비가 오작동 되어 20분가량 공연이 중단되었으며, 안내방송 후 공연을 재개했지만 결국 음향 문제로 인해 공연을 중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15일과 16일에도 사고가 발생했다. 2007년 12월 15일, 음향 렌탈 업체 직원이 나사를 조여 놓지 않은 야시바형 트러스에 체인블럭을 철수하러 올라갔다가 미끄러지면서 무게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했으며, 16일에는 극장○○에서 무대장치의 오류로 무대 전환이 불가능하자 갑작스럽게 공연을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관객들은 늦은 시간까지 극장 앞에서 거세게 항의를 했고, 극장 측은 티켓 환불과 교통비를 지급하여 보상했다. 2008년 3월, ○○대학교 공연장에서 무용공연 셋업 중 9미터 높이 유압사다리에서 조명작업을 하던 주 모 씨가 감전 사고를 당했으며, 사고 직후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손의 피부 외상으로 3개월 동안 통원치료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같은 해 9월 21일, △△극장의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한 바가 있다. 대극장 무대에서 축제 리허설 도중 축제 이사장이 하강된 오케스트라피트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인사사고가 발생했으며, 또한 같은 해 9월 28일, 오전 10시쯤 □□대학교 ◇◇홀 무대에 설치된 전기배선으로 인해 화재 사고가 발생한 바가 있다.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0분 만에 불길을 진화했지만 이날 화재로 인해 무대시설과 음향장치 등 내부시설이 불타 1,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게 되었다. 2008년 마지막 사례로는 10월 21일 오후 2시 40분에 서울 ◎◎홀에서 전복사고가 발생한 바가 있다. 직원 강 모 씨가 5m의 유압사다리에서 천장에 철사를 묶던 중 추락했으며,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과다 출혈로 인하여 사망했다. 국내 실내공연장 안전사고의 마지막 사례로는 2009년

서울 ◆◆공연장에서 낙하사고가 발생한 바가 있다. 세트전환 도중 무대 위쪽에서 얇은 목재로 된 무대막이 떨어져 배우 2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그날 공연이 중단되는 사고가 있었다.

#### ④ 2010년대

2010년대에 발생한 국내의 실내 안전사고 사례들로는, 2011년 08월 김범수의 단독 콘서트 도중 추락사고가 발생한 바가 있다. 가수 김범수는 공연 도중 발을 헛디뎠다 1.5미터 높이의 무대에서 추락하여 경미한 타박상을 입었다. 또한 같은 해 11월 19일, ○○박물관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한 바가 있다. 가수 양희은은 뮤지컬 리허설 도중 잠깐의 상태에서 실족하여 객석으로 추락하여 타박상을 입는 등의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이듬해인 2012년 08월 11일, 서울 ㄱㄱ경기장에서 사이의 단독콘서트 중 조명에 불이 붙어 화재사고가 일어나 공연이 잠시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가 있다. 2014년 경주시 ㄴㄴ체육관에서 열린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축하공연 도중 체육관이 붕괴되면서 10명이 사망하고, 128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이는 정기점검의 부재로 인한 사고로 파악되었다. 2015년 4월 17일, 대구에서는 ○○포럼 폐막식 무대에서 행사 준비를 하던 대구시 공무원 38살 이모 씨가 1.5미터 바닥으로 추락하여 발목에 부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에 앞서 4월 12일 개막식에서는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를 펼치던 중 무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2015년 9월 5일, 강원도 ◇◇경기장에서 공개방송 중 가수 여자친구의 멤버 유주가 빗물에 6차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6년 01월 26일, 부산광역시 ◎◎공연장에서 열린 콘서트 공연 중 앙코르를 앞두고 설치되어 있던 무대 장치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무대 좌측 스피커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기획사 측은 안전상의 이유로 공연을 중단하고 관객들을 위해 악수회를 열어 공연을 마무리했다.

### (2) 야외공연

#### ① 1990년대

1990년대에 발생한 야외공연의 안전사고들의 사례로는, 1995년 10월 28일에 대구의 한 운동장에서 콘서트 공연에 1만여 명의 관객이 한꺼번에 입장하려다 8명이 부상했던 사고가 있었다. 또한 다음 해인 1996년 12월 16일 대구 ◇◇타워 잔디광장에서의 공개방송을 보러 온 10대들이 서로 먼저 입장하려고 출입문 쪽으로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10여 명이 인파에 깔려 여학생 2명이 질식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다. 이날 사고는 공연 시작 전부터 출입문 앞에 줄을 지어 서 있던 10대 관객 수천 명이 출입문이 열리는 순간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입구 쪽으로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앞서 들어가려던 관객들이 넘어지면서 일어났다.

#### ② 2000년대

2000년대의 사례들로는, 2002년 9월 22일 대구 △△공원에서의 콘서트에서 입장 도중 뒤에서 밀린 관객들이 넘어져 4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또한 2004년 6월 4일 숭실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의 개교기념 음악공연에서 공연장 입장 중 뒷사람에게 밀린 13명이 부상한 바가 있었다. 아울러 다음 해인 2005년 10월 3일 상주 ☆☆운동장에서 가요콘서트를 앞두고 시민 11명

이 압사당하는 등의 50여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가 발생한 바가 있다.

### ③ 2010년대

2010년대에 발생한 사고들로는, 2013년 12월 31일 울산시 행사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바가 있다. 무대 앞쪽에서 갑자기 불꽃이 치솟아 가까이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던 관객 5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행사장에 모인 5천여 명의 시민 가운데 일부가 급히 대피했다. 또한 다음 해인 2014년 10월 18일 경기도 성남시 야외공연장에서 축제가 진행되는 도중 환풍구 덮개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환풍구에 올라가있던 2~30여 명의 관람객이 추락해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한 바가 있다. 마지막으로 2016년 5월 16일 숭실대학교 ○○관 건물 1층 채광창에서 걸그룹 트와이스의 공연을 보던 여대생 2명이 7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으며, 축제 주최 측이나 대학관계자 모두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채광창 주변을 통제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

## (3) 기타 관객 관련

### ① 1970년대 ~ 2000년대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의 기타 안전사고의 사례로는, 1972년 공연을 하던 가수 나훈아의 무대에 한 남성 관객이 난입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관객은 깨진 소주병을 휘둘렀으며, 이로 인해 나훈아는 왼쪽 뺨을 70바늘이나 꿰매는 부상을 당했으며, 또한 2009년 12월 5일 연극○○○ 공연 도중 여배우가 옷을 벗는 장면에서 무대 위로 40대의 남성 관객이 난입하여 여배우를 포옹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관객을 퇴장조치 시킨 후 공연이 재개된 바가 있다.

### ② 2010년대

2010년대에 발생한 사고들의 사례로는, 2013년 3월 23일 극장○○에서 뮤지컬 ☆☆☆의 커튼콜 공연이 마무리되고 주요 배우들이 퇴장하는 과정에서, 관객이 무대 위로 난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배우 정동하는 우측 어깨에 상처를 입게 되었는데, 난입한 관객은 배우의 극성팬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대해서 해당 관객의 추가적 관람을 제재하는 등의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다음으로는 2015년 7월 26일 안산 ◇◇페스티벌에서 경호원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여러 관객들이 부상을 당하여 논란이 된 사고가 있었다. 사건은 밴드 모터헤드의 공연이 진행되던 도중 가수 장기하의 등장에 관객이 몰려들게 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호원이 과잉진압을 하여, 관객들이 부상을 입게 되었고, 장기하는 전신마취 후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의 부상을 당하기도 했으며, 담당 경호업체는 이후 많은 질타를 받아 사과문을 올리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마지막으로 2017년 6월 26일 걸 그룹 에이핑크의 쇼케이스현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테러 및 총기살해협박을 받게 되어, 공연장에 특공대 및 탐지견을 급파하여 수색작업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허위협박으로 밝혀진 바가 있다.

## 2) 국외사례

### (1) 실내공연

실내공연장의 경우 각종 장치들과 배선들이 혼잡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높으며,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건물 내에서의 추락, 압사, 미끄러짐 사고에 대비하여 관객안내와 공연장 내 수칙준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 ① 1550년대 ~ 1870년대

1550년대부터 1870년대 사이의 실내 안전사고 사례들로는, 1558년 다카라즈카구 대극장에서 ‘봄의 춤, 꽃 속의 아이들’에 출연 중인 코즈키 히로미가 복장이 무대장치에 말려들어가 무대기계에 의해 신체가 절단되어 사망에 이르렀던 바가 있으며, 1776년에는 레지오 두칼레 극장에서 카니발 시즌에 Traetta의 ‘La Merope’ 공연이 끝난 후, 극장 촛불을 완전히 끄지 않아 화재로 인해 목조 극장이 모두 불타버리는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1836년 12월 13일, 베네치아 라 페니체 극장에서 3일간 쉬지 않고 난로를 켜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1873년 10월 29일에는 살 르 펠레티에 극장(1858년 루이 18세에 의해 1821년 8월 16일 개관, 별칭 : Paris Opera)에서 가스 전등에 의해 발생한 불이 27시간 동안 밤새 지속되어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② 1900년대 ~ 1988년

1900년대부터 1988년 사이에 실내에서 발생한 사고사례들로는, 1903년 미국 시카고 이로코이즈 극장(12월 30일 개관)에서 개관 37일 만에 화재가 발생했다. 명절 휴가로 수많은 여성, 학생 관객들이 몰려, 1,724명의 수용능력을 초과한 2,000명의 관객들이 Eddy Foy의 인기 뮤지컬의 낮 공연을 보기 위해 모였으며, 당시 출연진과 스태프 수는 500명에 육박했다. 공연 중 스포트라이트의 잘못된 배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고, 미국 4대 재난 중 하나로,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심한 건물 화재로 꼽히기도 한다. 1974년과 1975년 사이에는 폭파 협박이 많이 발생했는데, 도쿄 문화회관에서 2회, 요코하마 문화체육관에서 3회가 보고되었다. 그 중 3회는 개막 직전에 예고전화가 와서 경찰에 연락한 뒤 만약을 대비해 입장한 관객을 피난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관내 점검 결과 모두 장난으로 판명되었으며, 공연은 30분 정도 늦게 시작되었다. 1978년 1월 27일에는, 일본의 한 록 콘서트 공연장에서 공연이 안내멘트 없이 예정시각보다 늦어져 관객이 자리를 뜨는 등 소란스러워지던 중에 갑자기 연주가 시작되었고, 연주 시작과 함께 약 500명의 관객이 무대 앞에 쇠도, 그 중 1명이 넘어져 압사했다. 주최 측은 아르바이트 경비원 약 90명을 배치했지만 관객을 제지할 수 없었고, 주최 측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1981년에는 NHK홀에서 ‘레츠고 젊은이여’의 리허설 중 카와이 나오키가 스테이지의 앞쪽에 있는 무대기구에서 추락하여 전치 3개월의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또한 1987년 7월 23일, 일본 수도권지역에서 무더위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였지만 전력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6개 도현에서 약 280만 호가 정전되었다. 일시적으로 JR선과 사철, 지하철 등의 철도가 불통되고, 교통 신호가 꺼졌으며,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등 도시전반의 기능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3시간 이상이 정전되었다. 마지막으로 1988년 동경도 미나토구 롯본기

무도회장 ‘토우리아’에서 중량 약 2톤에 달하는 조명장치가 떨어져 추치고 있던 17명이 사망한 바가 있었다.

### ③ 1990년대

1990년대에 발생한 안전사고의 사례들로는, 1994년 8월에 신주쿠 꼬마극장에서 무대 조명기구 철거 작업을 하던 무대 조명기사 이시이 키요시가 잡고 있던 로프와 함께 약 7미터 바닥으로 추락하여 결국 목뼈가 꺾여 사망에 이르렀다. 1994년 11월 3일, 배우 A씨가 무대의 계단 위에서 준비 중인 스태프 B씨가 있는 줄 모르고 단을 움직여 B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1995년 1월 17일, 고베 문화홀에서 한신 대지진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지진발생 당일 낮 인접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로부터 연락이 와서 대피인원을 수용하였고, 직원이 중심이 되어 피난처를 운영했다. 대피인원 전원이 관외로 이동한 것은 반년 후인 6월 10일이었다. 또한 1996년 1월 29일, 베네치아 라 페니체 극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화재경보기 수리 공사 도중, 보수공사를 맡은 건설회사가 작업 일정이 늦어진 전기기사들에게 지나치게 벌금을 물리자 이에 불만을 품은 전기 배선공 2명이 합선을 가장해 방화한 사건이다. 화재경보기 스위치도 꺼져있어 큰 화재로 이어져 목조 건물인 극장이 전소되었으나, 당시 휴관 중이었으므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방화범 2명은 각각 7년과 6년의 징역형을 받았으며, 같은 해인 1996년 12월 10일에는, 아이치 현 예술미술관 대극장에서 조명을 포커싱하던 조명기사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있었다. 1997년 2월 11일, 나오야극장에서 주연을 맡은 가수 고타로미가 오후 공연에서 약 3미터 높이 무대장치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로 인해 오른손이 골절 및 근골 등으로 중상을 입었다. 같은 해인 1997년 10월 14일, 신국립극장 중극장에서 무대 설치작업 중에 2층에서 창문틀이 떨어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관계자 스즈키의 머리에 직격으로 맞아, 14바늘을 꿰매고, 경추가 손상되기에 이르렀다. 1998년 3월 8일에는, 제국극장에서 다카라즈카 극단의 공연 중에 돌연 정전이 되어 무대조명이 전부 꺼지는 정전 사고가 발생했다. 공연은 중단 된 후 약 35분이 지나서 재개되었고, 담당자가 육성으로 상황을 설명하며 돌아다녀 관객의 큰 혼란은 없었다. 폐막에는 극장 지배인과 주최자 측의 프로듀서가 사죄인사를 하며 마무리되었다. 마지막으로 1999년 7월 27일, 신국립극장에서 뮤지컬 ‘신피터팬’의 리허설 중에 플라잉을 담당한 미국인 기술자의 통역을 맡은 여성 스태프 아오야나기 카요코가 세트에 가려진 지하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15.7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두부 타박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 ④ 2000년대 ~ 2002년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발생한 사고들로는, 2000년 마닐라의 대형쇼핑몰 내 영화관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다이너마이트나 흑색폭약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최소 1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당했으며, 같은 해에 또한 국립 하이쿠자에서 여배우 이코 메구미가 로프를 타고 무대로 내려오는 장면에서 손이 미끄러져 4미터 아래의 무대로 떨어져 왼쪽 손목 골절 및 왼쪽 새끼발가락 골절의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는 요나고 컨벤션 홀에서 서부지진이 발생한 사고가 있었다. 지진 발생 당시 연수회에 약 2,000명의 관객이 있었으며, 진동이 있을 때 극장 안은 일시 소란스러웠지만 사회자의 안내 등을 통해 관객 전원이 침착하게 관외로 대피했다. 다음 해인 2001년에 발생한 사건들로는, 후지티비 ‘산전수전 인생사’에서 세트가 무너져 미술 스태프가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된 바가 있었으며, 북과 맥주 사쿠라홀에서 무대장치를 정기

점검하던 중에 보수회사의 사원 5명이 무대장치 사이에 끼어서 3명이 즉사한 사고가 있었다. 또한 3월 24일에 미츠야마 시의 체육관에서 지진의 진동에 의하여 천정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다행히 부상자가 없었지만 이용자가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으며, 8월 26일에는 후쿠시마 현 니시사토촌에 있는 양호시설 ‘카라마츠장’에서 토석류가 발생하여 5명이 사망이 이르렀던 사고가 있었다. 또한 2002년에 발생한 사건으로는, 2월에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전쟁과 평화’ 공연이 종료되기 10분 전에 나폴레옹 병사로 출연한 연기자가 무대에서 미끄러져 오케스트라 피트로 추락하여 공연이 중단된 사건이 있었으며, 10월 23일에 체첸 무장 세력이 약 800명의 인질을 잡고 모스크바 극장을 점거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는 정부의 특수부대가 돌파를 강행하여 인질 100명 이상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10월 1일 태풍 21호의 영향으로 도쿄돔에서 예정되어 있던 프로야구 자이언츠-야쿠르트전이 중지되었던 사례가 있었다.

#### ⑤ 2003년 ~ 2015년

2003년부터 2015년 사이에 발생한 안전사고의 사례들로는, 2003년 2월 22일 미국 나이트클럽의 무대에서 연출용 불꽃을 사용하던 중에 화재의 발생으로 관객이 출구에 쏘아하여 총 관객 300명 중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같은 해 2월 17일 미국 나이트클럽에서 손님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경비원이 최루 스프레이를 뿌리게 되었는데, 순간 손님들이 대혼란에 빠져 다수의 손님들이 출구로 쏘아하여 연쇄적인 넘어져, 2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던 사건이 있었다. 다음 해인 2004년에 발생한 사건으로는, 3월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알제리의 여인’을 공연하던 중 조명기재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으며, 무대 막을 닫아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고 화재를 진압한 후에 공연을 재개했으며, 같은 해 12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레프블리카 크로미는 나이트클럽에서 열린 콘서트 도중 불이 나 194명이 질식사나 화상으로 숨지게 되는 사고가 있었다. 다음 해인 2005년 1월 8일, 브로드웨이에서 유명 뮤지컬 배우 ‘이디나 멘젤’이 ‘위키드’ 공연 도중 무대바닥에 설치된 문으로 떨어져 아래쪽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한 사고가 있었다. 또한 2008년에 발생한 사고 사례로는, 신바시 연무장에서 타키자와 히데아키가 주인공을 맡은 ‘타키자와 연무성’의 공연 중 무대장치 등이 타는 작은 화재가 발생하여, 관객과 스태프 약 1,600명이 피난했고, 약 40명이 목의 통증을 호소하여 공연이 중지된 바가 있었으며, 미야자키 현의 그랜드 21 종합체육관에서는 뉴스 콘서트 준비를 하던 중 스피커가 낙하하여, 여성 스태프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또한 나고야에서는 79세의 남성이 2층 객석에서 1층 객석으로 추락하여, 허리뼈가 꺾여 중상을 입게 되었으며, 1층에 있던 2명이 다리와 목을 부딪혀 중상을 입게 되는 사고가 있었다. 다음으로는 2013년 12월 21일, 아폴로 런던극장에서 ‘한밤중 개에게 일어난 수상한 사건’ 공연 도중 발코니 천정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나, 700여 명의 관객이 대피했고, 30명이 경미한 부상을 당하였으며, 5명은 중상을 입게 되는 사고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2015년 7월 7일 멕시코 할리스코주 자포판의 한 서커스 쇼 도중 곡예를 펼치던 한 남성 단원이 기구가 갑작스레 멈추는 바람에 곡예기구에서 7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머리를 다치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 (2) 야외공연

야외공연장의 경우 넓고 트여있는 공간적 조건으로 인하여 관객들의 관람질서가 흐트러지기 쉽기 때문에, 압사와 같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관객질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야외이 니만큼 돌발적인 환경과 상황을 철저히 대비해야한다.

### ① 2000년대

2000년대에 발생한 안전사고의 사례들로는, 2006년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교외의 한 스타디움에서 3만여 명이 몰린 게임 쇼가 진행되던 중 군중 속에서 누가 폭탄이 있다고 소리치며 발생한 혼란 속에서 66명이 압사한 사고가 있었다.

### ② 2010년대

2010년대에 발생한 사고들로는, 2015년 6월 14일에 런던에 위치한 웹블리 아레나에서 콘서트를 하던 ‘5세컨즈 오브 써머’의 멤버 중 한 명이 불꽃장치와 가까이에서 연주를 하다 머리가 불꽃에 닿아 불이 붙어 부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다음 해인 2016년 2월 14일에는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아의 ‘마하라슈트라의 밤’ 문화행사 중 화재가 발생하여 야외무대가 불길에 휩싸였고, 화재는 무대를 거의 태운 30여 분 뒤 완전히 진압되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또한 같은 해 8월에는 런던 캠든에 위치한 BB&T 파빌리온 공연장에서 ‘스눅독’과 ‘위즈칼리파’의 콘서트 도중 난간이 무너져 42명이 경상을 입었던 사고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2017년 3월 12일 아르헨티나의 올리비아 시에서 가수 인디오 솔라리의 콘서트 공연장에서 폭죽놀이가 시작되자 군중들이 특정 장소로 일거 몰려 40대 남성 2명이 압사하기에 이르렀다.

## (3) 기타 관객 관련

오늘날 안전사고의 유형 중 대표적인 예로는 테러와 같은 범죄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테러사고는 많은 배우와 관객들을 비롯한 인적, 물적으로 상당한 피해규모를 야기하며, 공연장 운영에 있어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① 2010년대

2010년대에 발생한 기타관객 관련된 안전사고의 사례들로는, 2015년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의 바타클랑 콘서트홀에서 소총과 폭탄을 소지한 괴한들이 프랑스 전역에 있는 레스토랑과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연쇄적으로 테러를 자행해 최소 127명이 사망하고 180명이 부상당했으며, 록 밴드가 공연을 진행하고 있던 바타클랑 콘서트에서 최소 87명을 살해한 사고가 있었다. 또한 다음 해인 2016년 6월 10일 미국 올랜도 플라자 라이브 극장에서 미국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인 크리스티나 그리미가 콘서트를 마친 뒤 팬들과 만나 사인회를 하던 중 한 남성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용의자는 현장에 있던 그리미의 오빠의 제지를 뿌리치고 총부리를 자신에게 돌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해 6월 12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나이트클럽에서 총기난사 테러가 발생했으며, 50명이 숨지고 53명이 부상당했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불리며, 마찬가지로 같은 해 7월 16일 방탄소년단의 뉴욕 콘서트가 랩몬스터에 대한 팬의 악질적인 위협으로 공연이 일찍 마감되었던 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음 해인 2017년 5월 22일 영국 맨체스터의 맨체스터아레나에서 ‘아리아나 그란데 콘서트’ 도중 공연장에서 테러리스트의 소행으로 폭발사고가 일어나 어린이 포함 22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 3) 자주 발생하는 관객 안전사고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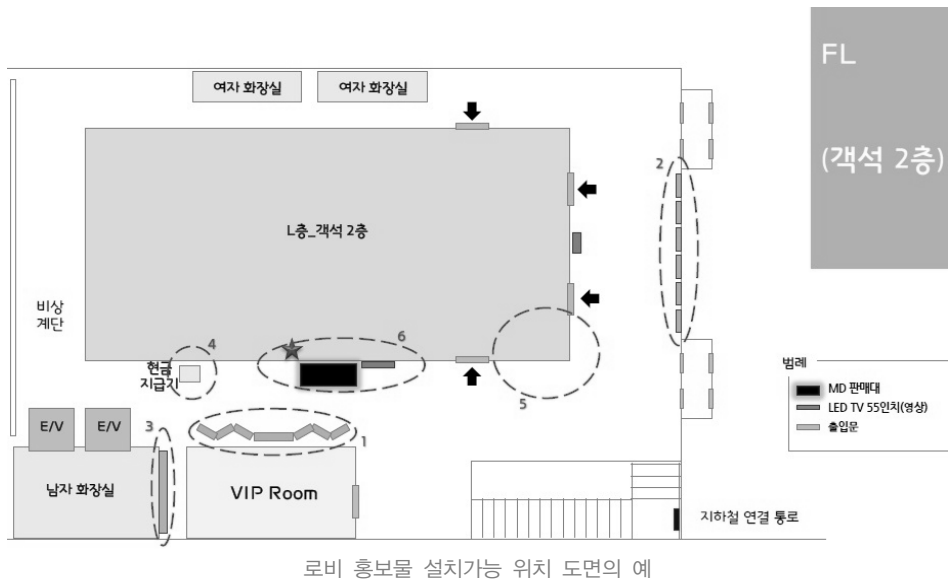
공연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만, 그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들이 존재한다.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조치를 위해서, 하우스매니저는 과거의 대표적인 사고 유형과 대처방안을 익혀두어야 한다. 자주 발생하는 관객 안전사고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한 사고

대다수의 공연장 로비는 대부분 대리석재질로 이루어져있다. 때문에 비가 오는 날 물기 또는 쏟아진 음료수, 비눗물 등 다양한 미끄러질 수 있는 요소로 인해 로비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한 공연장에서는 관객이 로비에 흘린 커피에 하이힐을 신고 걷던 여성이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와 같은 미끄러짐 사고는 로비뿐만 아니라 특히 물기가 많은 화장실이나, 객석의 내외부의 계단에서도 일어나기 쉬운 사고 중 하나이다. 이는 관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기도 하지만, 공연장 관리에 있어서 소홀했을 시에도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관리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로비와 화장실 및 계단 등의 공연장 전반의 시설들을 자주 살피며 관리하고, 비가 내리는 날에는 우산비닐을 설치하는 등의 미끄러짐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이 없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한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사고를 당한 관객에게 보험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

#### (2) 현수막으로 인한 사고

공연장 측에서 현수막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할 때, 그 배치와 안정성을 철저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공연장 내부에 걸었던 현수막이 끊어져 관객이 다치는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이다. 이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구조물의 배치로 인하여 관객들이 이동에 불편함을 겪거나 원활한 입·퇴장에 어려움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객의 동선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적절한 위치에 안전하게 홍보물을 설치하고, 공연이 시작하기에 앞서 2시간 전에는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다시금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구조물 및 현수막을 설치한 공연단체와 상의하여 사고를 당한 관객에게 적절히 보상을 해야 한다.



### (3) 매표소 감전사고

감전사고의 경우 여름철 장마기간에 특히 사고의 위험성이 높는데, 이 기간에 전자기기 및 콘센트 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은 채 발견기를 사용하려던 매표요원이 감전된 사고가 있었으며, 이 외에도 공연장 측의 운영용도로 사용되는 콘센트를 관객이 사용을 시도하려다가 감전되는 사고 등이 발생한 바가 있었다. 이러한 감전 및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콘센트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 지를 확인해야하며, 특히나 장마철의 경우 콘센트 주위의 환경을 건조하게 유지하여 감전의 위험성을 낮추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신속한 조치와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 (4) 먼지로 인한 사무실 난로 화재사고

전열기구의 잘못된 사용은 화재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 시에는 충분한 정비와 청소가 요구되는데, 오랜 시간 이용하지 않아 먼지가 쌓인 기구를 곧바로 이용하거나 멀티탭의 문어발식 사용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누전 및 발열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랜만에 이용하는 전열기구의 경우에는 먼지를 제거하고 사용해야한다. 또한 멀티탭의 문어발식 이용을 지양해야하며, 특히나 전열 기구를 여러 대 사용하는 행위는 화재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험하고, 전류차단기능이 있는 멀티탭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 (5)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사고는 아이와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시설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에스컬레이터 사

고는 미끄러짐 사고인데, 이는 대부분 신발의 물기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다. 이 외에도 신체의 일부 또는 신발 및 의류가 에스컬레이터의 틈에 끼어 끼임 사고가 발생하거나, 아이들이 난간에 올라가거나 하는 등의 부주의한 장난으로 인하여 추락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나는 것과 같이 시설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러한 에스컬레이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발판 및 진행요원을 배치함으로써 관리할 수 있으며,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 (6) 투명 유리문에 부딪힘 사고

포스터 및 부착물과 같은 유리문에 대한 별다른 식별표시가 없는 경우, 유리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통행을 시도하려다가 유리문에 부딪히거나 끼이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나 유리문의 경우 작동속도가 빠르고 파손될 경우 피해의 정도가 상당할 수 있다. 이러한 유리문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리문의 식별표시를 적절한 위치에 부착해야하며, 폐문이 있을 경우 또한 그에 따른 식별표시를 부착해야한다. 사고방지 방안으로는 안전한 유리재질을 사용함으로써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으며, 속도제어기를 부착하여 안전하게 여닫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

#### (7) 공연장 객석의 계단에서 발생한 고령자의 다리부상사고

공연장 내부에서 객석계단을 이용하다가 일어나는 사고 역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이다. 관객이 한꺼번에 무리지어 이동을 한다거나 경사가 가파르고 난간이 없거나 또는 조명이 어두운 상황 등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객석을 안전하게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 객석이동에 있어서 세심한 안내가 필요하다. 실제로 고령의 관객이 계단에서 실족하여 부상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객석안내에 있어서 고령자의 경우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야외공연의 경우 안내요원을 구역별로 배치하여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8) 객석 입구 압사사고

관객이 한꺼번에 몰려 입·퇴장 하는 경우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압사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실제로 객석 입장시간이 지연되어 사전에 줄을 서지 않고 한꺼번에 입장을 진행하여 압사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선착순 입장의 공연의 경우 압사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크며, 공연을 진행하는 중에도 관객들이 관람질서를 지키지 않고 앞으로 미는 등의 행위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입장지연을 공지하고, 티켓 확인을 미리 해두거나, 입장 전에 미리 줄을 세우는 등의 안내를 통해 관객들이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충분한 진행요원을 배치하여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여 압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9) 회전문 안전사고

회전문의 이용에 있어서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상대적으로 더욱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어린이들이 회전문에 팔, 다리 등의 신체 일부가 낀 채로 회전문이 계속해서 작동하여 절단 및 중상을 입거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사고들이 발생한 바가 있으며, 이러한 사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회전문 자체에 대한 법적 기준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지만, 고무벨트를 덧대어 붙이거나, 주의표시를 배치하는 등 어린이와 노약자를 고려하여 조치를 취하도록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0) 2층 객석 관객 추락사고

공연장은 다양하고 많은 시설물들이 복잡하게 모여 있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항상 시설물에 관한 철저한 점검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2층 이상의 객석이 존재하는 공연장의 경우 관객의 부주의 또는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한 추락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며, 무대 위의 배우나 현장 스태프의 경우에도 시설물의 결함과 부주의함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설물들이 노후하지 않았는지 또는 제 기능을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여 결함이 없도록 유지시켜야한다. 또한 관객 안내에 있어서도 난간에 기대어 있는 행위는 위험하므로 관객안내원들은 충분한 주의를 주어야 하고, 또한 추락 방지망과 같은 안전장치의 설치를 통해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다.

### (11) 2층 관객이 날린 종이비행기에 1층 관객이 눈이 찢어진 사고

공연에 따라서 다양한 이벤트나 독특한 상황의 연출을 의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연출은 다각도에서의 충분한 고려 없이는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 공연장에서 공연 중 모든 관객이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상황에서, 2층 관객이 날린 종이비행기에 1층 관객의 눈이 맞아 찢어진 사고가 있었다. 이렇듯 공연에서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의과정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하며,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처와 적절한 보상을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 (12) 공연 중 출연자가 던진 물건에 관객이 다친 사고

공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우들의 적절한 수준의 즉흥적인 퍼포먼스는 공연의 매력 중 한 가지이지만, 때로는 이러한 행위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콘서트나, 퍼포먼스가 있는 뮤지컬 또는 연극 등의 공연에서 배우가 관객석을 향해 물을 뿌리거나 선물을 던지는 등의 퍼포먼스를 진행하던 도중에 생수병 및 선물이 관객의 얼굴에 맞아 부상을 입게 되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객을 향해 던졌을 시에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최대한 배제하고, 선물의 경우 부드러운 소재로 포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조치할 수 있으며, 되도록 관객을 향해 무언가를 던지는 행위는 삼가도록 한다.

### (13) 객석 입구 출입문에 관객의 손가락이 다치는 사고

공연장의 출입문은 대부분이 크고 무거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신체의 일부가 출입문에 끼이는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그 중 어린아이들이 출입문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그대로 손가락과 같은 신체일부가 끼여 부상당하는 사고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출입 시에 부모가 동반할 것을 강조하여 안내하며,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거나 출입문에 속도제어기를 설치함으로써 문이 여닫히는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사고를 당한 관객에게 보험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 (14) 공연장 로비의 크리스마스트리로 인한 화재사고

연말기간에 자주 볼 수 있는 크리스마스트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다. 트리의 장식에 주로 이용되는 전구장식은 전열기구로서 장시간 가동하거나 많은 개수의 기구를 동시에 이용할 경우 과열이 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장시간 트리를 가동하여 조명장식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 한 사례가 다수 있으며, 크리스마스트리의 경우, 일단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불이 크게 번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열 기구를 이용할 시에 사용시간을 철저히 점검하고,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꺼두는 등 기구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며,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전열 기구를 이용할 시에는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을 이용하도록 한다.

### (15) 어린이놀이방에서 자원봉사자가 건넌 사탕이 아이 목에 걸린 사고

공연장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유하고 있기도 한다. 이러한 공연장 들은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자원봉사자 또는 유아교육전문가에게 영유아 및 어린이 안전사고 교육이 이루어져야하며, 어린이 놀이방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그 중 놀이방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로는 가벼운 타박상, 염좌 등이 있지만, 삼킴 사고를 가장 위험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3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삼킴 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실제로 놀이방에서 놀던 3세 아이에게 사탕을 주었고 그 사탕이 목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한 바가 있다. 간식을 제공할 시에는 목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며, 음식뿐만 아니라 놀이방 내의 경우에도 작거나 아이가 삼킬만한 장난감은 배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삼킴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기침을 유발하여 뱉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 조치해야 한다.

### (16) 야외 공연 시 관객이 뱀에 물린 사고

야외 공연은 개방되어있는 공간적 특성상 다양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한다. 특히, 돌발 상황의 발생 확률이 높는데, 야외 공연 도중에 관객이 뱀이나 벌레에게 물리는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뱀에게 물리는 사고가 가장 위급한 상황을 초래하지만 뱀 이외에도 벌, 모기, 풀독 등의 여러 가지 해로운 외부적 요소들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가

능한 한 풀숲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뱀 및 독을 가졌다고 의심되는 야생동물에게 물렸을 시에는 깨끗한 물을 부어 물린 부위의 독과 이물질질을 씻어낸 후, 침착하게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하고,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안정을 취하도록 하며, 병원으로 신속히 이동시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7) 정수기의 뜨거운 물에 어린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손에 화상을 입은 사고

어린이들의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성인기준에서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지만 어린이에게는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일례로, 초등학생이 물을 먹으려다 정수기의 밸브를 잘못 눌러서 뜨거운 물에 손에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바가 있었다. 이러한 화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잠금 장치가 있는 정수기로 교체하고, 관객안내원에게 주의를 주도록 조치해야한다. 그러나 만약 화상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찬물로 상처부위를 식힌 후 세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깨끗한 수건 및 거즈로 화상부위를 덮은 상태로 신속히 병원으로 이동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8) 계단에서 내려오던 아이가 굴러 떨어진 사건

어둡고 혼잡한 공연장의 경우 계단을 이용할 때 각별히 조심해야하는데, 어린이의 경우 장난을 치거나 부주의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주의를 주어야한다. 실제로 단체관람 도중 5세의 아이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으며, 이 외에도 아이가 뛰어가다가 또는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지는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단마다 미끄럼방지패드를 부착하여 미끄러움을 최소화해야 하고, 단체관람의 경우 진행요원을 추가 배치하여 안내가 모든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아이는 머리를 다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머리를 그대로 보전하여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여 조치를 취해야한다.

#### (19) 야외 공연 시 어린이의 귓속에 벌이 들어간 사고

야외 공연의 경우 장소적 특성에 따라 그 위험요소도 제각기 다르게 존재하는데, 그 중 산을 가까이 두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벌과 같은 야생생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여, 되도록 숲속이나 풀숲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벌이 아이의 귀로 들어간 사고가 발생한 바가 있는데, 이와 같이 귀 안으로 벌, 파리 등과 같은 작은 벌레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귓속에 식용유, 물 및 알코올을 조금 흘려 넣어주어 벌레를 죽이거나 밖으로 빠져나오게 하고, 이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0) 야외마당 분수대에서 놀다가 관객의 귀에 물이 들어간 사고

여름철 야외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공연도중 물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객의 귀에 물이 들어가는 사고가 흔히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물이 들어간 귀를 아래로 하여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헤어드라이기와 같은 바람을 이용하여 귓속을 말

려 조치할 수도 있다. 반면에 면봉 등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물을 닦아내는 것은 물기가 더 깊이 들어가거나 2차적인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지양해야하고, 이후 귀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이비인후과를 찾아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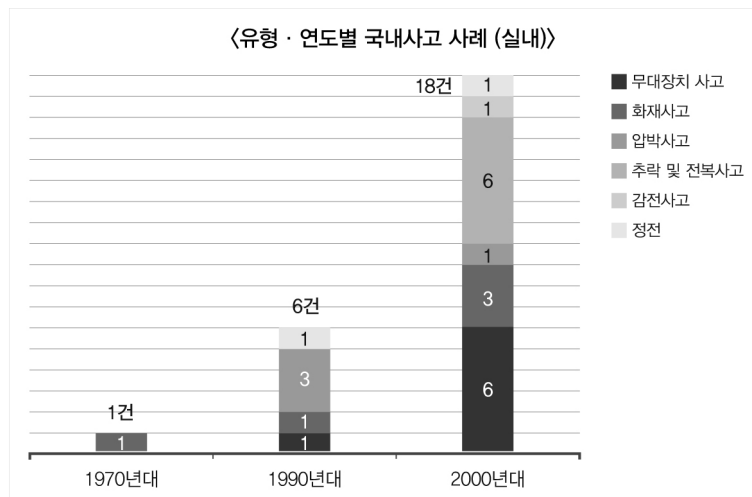
#### (21) 야외 공연 시 오래서서 공연을 관람하던 관객이 일사병을 호소한 사고

스탠딩 공연의 경우 장시간 기립하여 공연을 관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연 도중 관객들 사이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관객이 종종 발생한다. 특히나 여름이거나 야외 공연일 경우에 장시간 공연관람으로 인한 갈증, 어지럼증, 구역질, 두통, 시력장애, 호흡장애,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관객들을 빈번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일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연의 중간마다 관객들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고통을 느끼는 즉시 객석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탈진 및 일사병이 의심되는 관객은 사무실과 같은 실내공간으로 이송한 후, 누워서 다리를 높이도록 하여 쇼크를 방지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게 하며, 옷을 벗도록 조치하여 온도를 낮추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통계로 본 안전사고

### 1) 국내사고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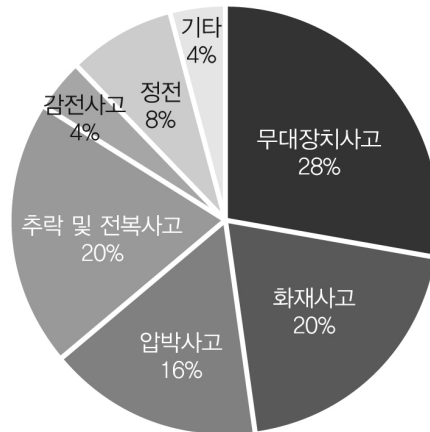
#### (1) 연도별 국내사고 사례(실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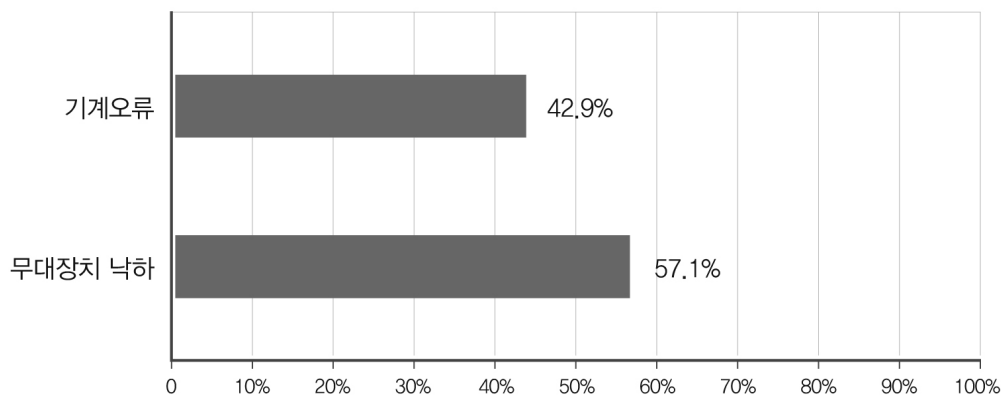
국내공연장 실내사고사례를 유형별, 연도별로 분류했을 때, 무대장치 사고가 가장 높은 횟수로 1990년대 1회, 2000년대는 6회 총 7회의 사고가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 추락 및 전복사고가 2000년대 총6회 발생했으며 화재사고가 1970년대, 1990년대에 각 1회, 2000년대에 3회 압박 사고가 1990년대에 3회, 2000년대에 1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대에 감전 사고와 정전이 각 1회씩 발생했으며 1990년대에는 감전 사고를 포함하여 정전사고 1회로 총 2회의 사고가 발생한 것을 자료를 통하여 볼 수 있다.

## (2) 유형별 국내 공연장사고 (실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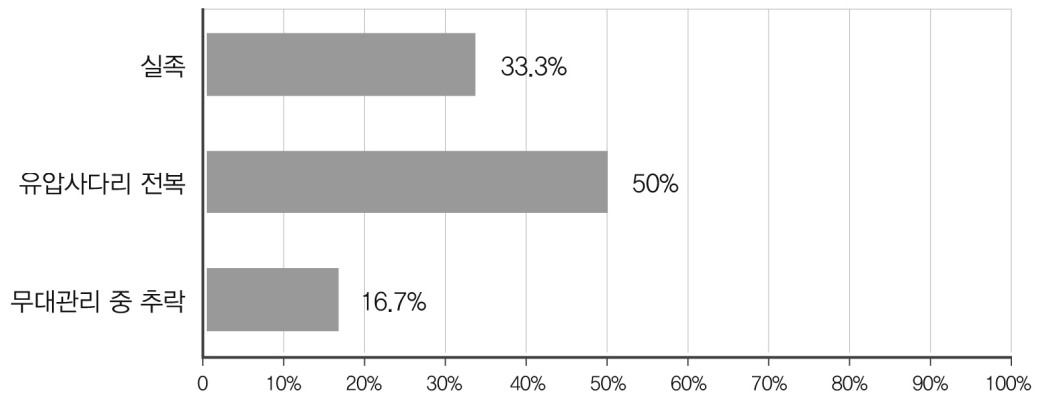
〈유형별 국내공연장 사고(실내)〉



〈무대장치 사고 원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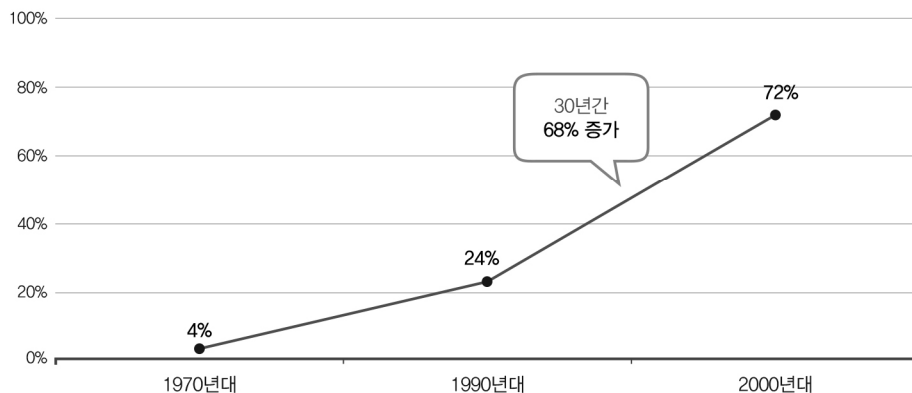
〈국내 추락 및 전복사고 원인 분석〉



공연장 실내사고 국내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한 표를 통해 무대장치 사고가 28%의 가장 높은 사고율과 추락 및 전복사고와 화재사고가 20%로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고 압박사고가 16%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무대장치 사고 원인으로써 무대장치의 낙하가 57.1%를 차지하고 기계오류가 42.9%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추락 및 전복사고에서는 유압사다리의 전복이 사고원인의 절반을 차지하며 순서대로 실족이 33.3%, 무대 관리 중 추락이 16.7%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3) 연도별 국내사고 증가추이 (실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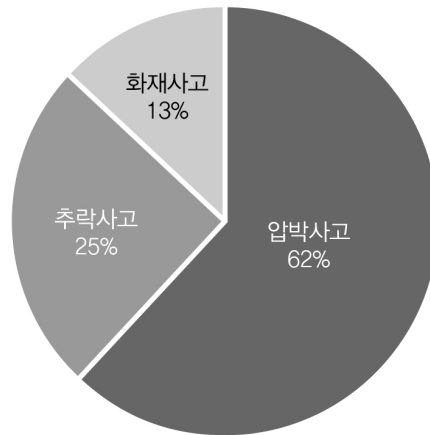
〈연도별 국내사고 증가 추이 (실내)〉



국내공연장 실내사고의 연도별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대는 4%로 적은 사고율을 보였으나 1990년대 24%, 2000년대는 72%로 30년 간 68%가 급증했다.

## (4) 유형별 국내사례 (야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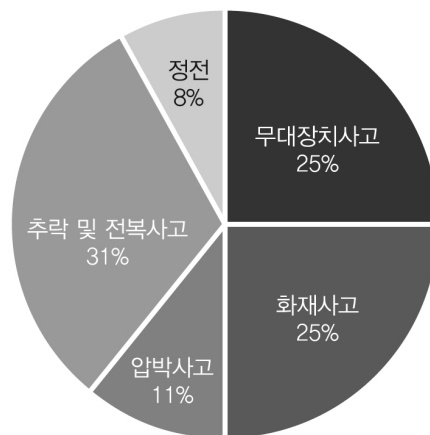
〈유형별 국내사고 사례(야외)〉



유형별로 국내공연장 야외사고 사례 분석결과 압박사고가 62%로 절반을 넘는 사고비중을 차지했으며 추락사고가 25%, 화재사고가 13%의 비중을 차지했다.

## (5) 유형별 국내사고 통계 (실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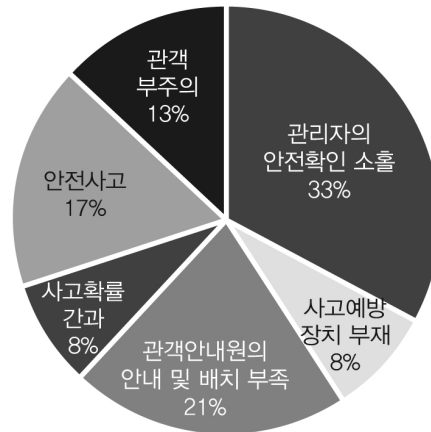
〈유형별 국내사고 통계(실내)〉



국내외 실내사고를 유형별로 통계했을 때, 31%의 추락사고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화재 사고와 무대장치 사고가 각각 25%를 차지했다. 압박사고 또한 11%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정전으로 인한 사고가 8%로 나타났다.

(6) 국내 자주 발생하는 관객 안전사고 원인 분석

〈국내 자주 발생하는 관객 안전사고 원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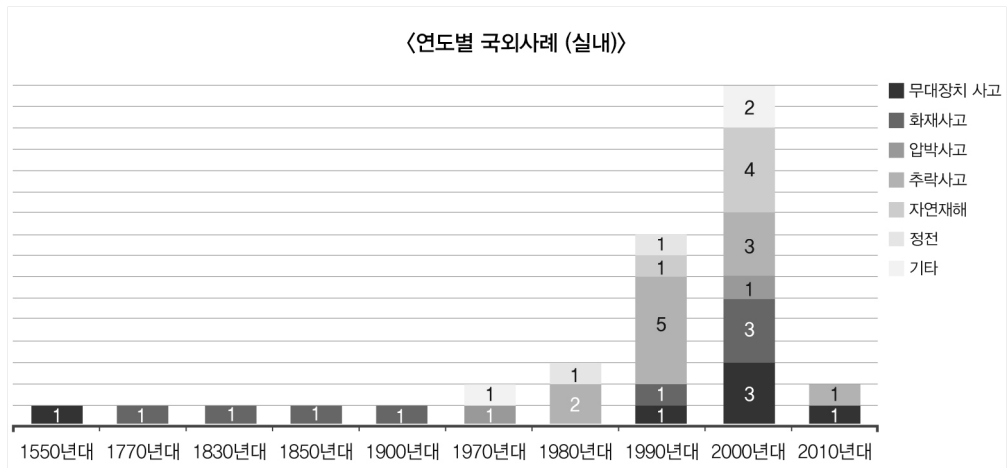


국내 자주 발생하는 관객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관리자의 안전 확인 소홀이 33%로 가장 컸으며 관객안내원의 안내 및 배치 부족이 21%, 안전사고 17%, 관객부주의 13%의 수치를 나타냈다. 사고예방 장치 부재와 사고확률 간과 또한 8%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다.

국내 공연장 실내, 외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또한 국외사례 사고 원인과 유사성을 나타낸다. 통계자료를 확인해보면 자주 발생하는 관객 안전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공연장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모든 물품 또는 장치를 관리하는 담당자는 해당 점검은 더욱 철두철미하게 진행해야하며 소홀한 점검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한다. 관객안내원 또한 안내에 있어 신속하고 명확하게 응대해주어야 하며 관객 수와 더불어 공연의 특성을 파악하여 관객안내원의 배치의 수를 조절하고 세분화 시켜야한다. 공연이 진행되는 순간뿐만 아니라 공연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안전에 대해 소홀하거나 안도하면 안 된다.

## 2) 국외사고 통계

### (1) 연도별 국외사고 사례 (실내)



공연장 실내사고 국외사례를 연도별로 분류한 도표를 통해 1550년대 1회의 무대장치 사고 이후, 1770년대, 1830년대, 1850년대, 1900년대 각 1회의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사고율이 증가했으며 1990년대, 2000년대 사고율이 급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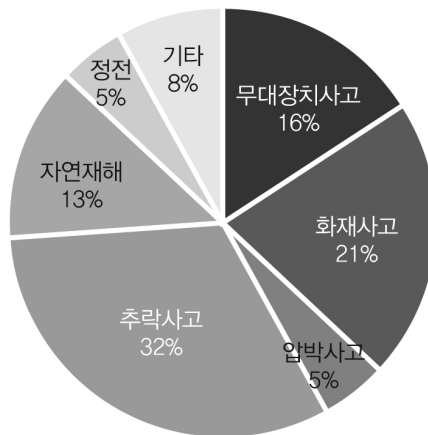
1970년대 압박사고와 지진, 토석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있었으며 1980년대에는 2회의 추락사고와 1회의 정전사고가 있었다. 1990년대는 총 9회의 사고발생으로 무대장치 사고, 화재사고, 자연재해, 정전 사고가 각 1회씩 일어났으며 추락사고가 총 5회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00년대 사고율은 통계 수치 중 가장 높은 사고율을 보인다. 1회의 압박사고와 테러, 무장세력 점거와 같은 기타 사고가 2회 발생했고 무대장치 사고, 화재사고, 추락사고가 각 3회,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4회 발생으로 총 17회의 사고가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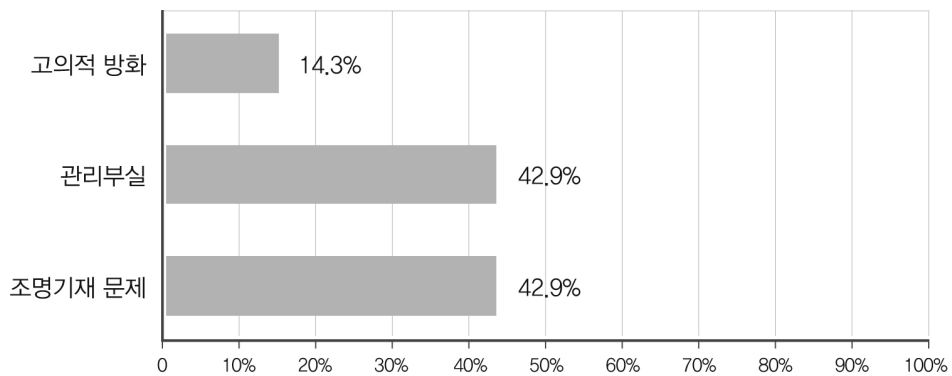
이후 2010년 2회의 무대장치사고와 추락사고가 일어난 것을 연도별 국외사례 도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 (2) 유형별 국외사고 비율 (실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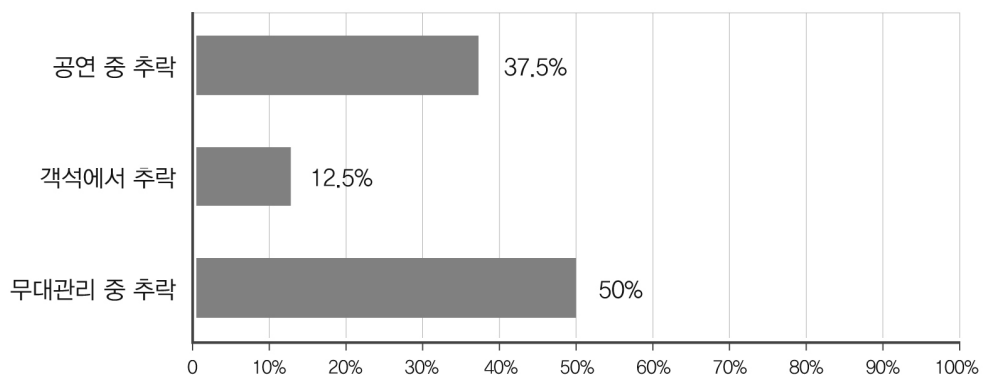
〈유형별 사고 비율 - 국외(실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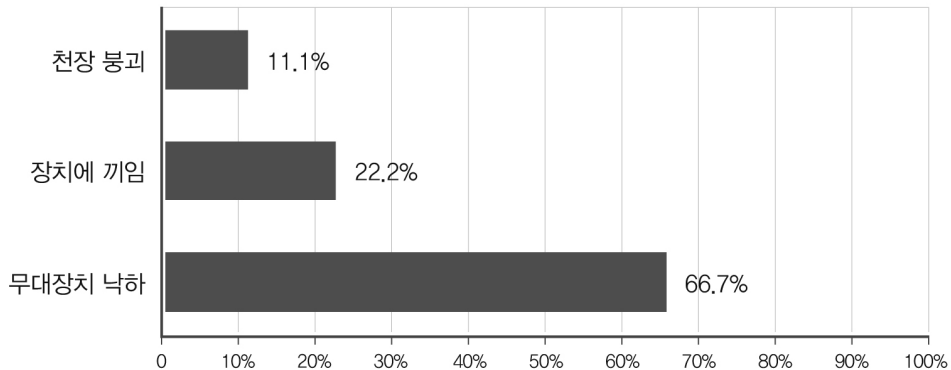
〈화재사고 원인 분석〉



〈추락사고 원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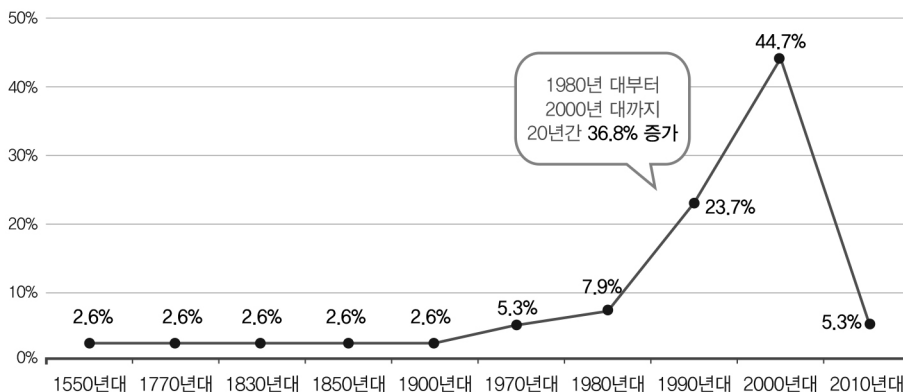
〈무대장치사고 원인 분석〉



국외에서 일어난 공연장 실내사고를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추락사고가 전체의 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추락사고의 원인은 공연 전 관리 중 추락이 50.0%를 차지하며 공연 중 추락이 37.5%, 객석에서 추락이 12.5%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고로는 21%를 차지하는 화재사고이다. 관리부실과 조명기재 문제가 42.9%로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며 고의적 방화가 14.3%로 화재사고의 원인으로 꼽힌다. 세 번째 높은 사고율은 무대장치 사고로 16%의 수치를 나타낸다. 무대장치 사고의 가장 큰 이유는 무대장치의 낙하로 66.7%의 절반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순서대로 장치에 끼이거나 천장이 붕괴 되는 것 등이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외의 사고로 자연재해 13%, 정전 5%, 기타 8%의 사고율을 나타내는 것을 통계자료를 통하여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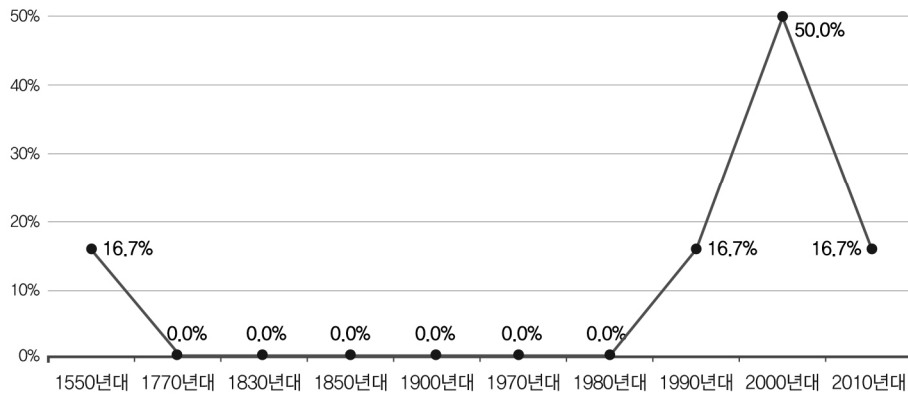
### (3) 연도별 국외사고 증가추이 (실내)

〈연도별 사고 증가 추이(실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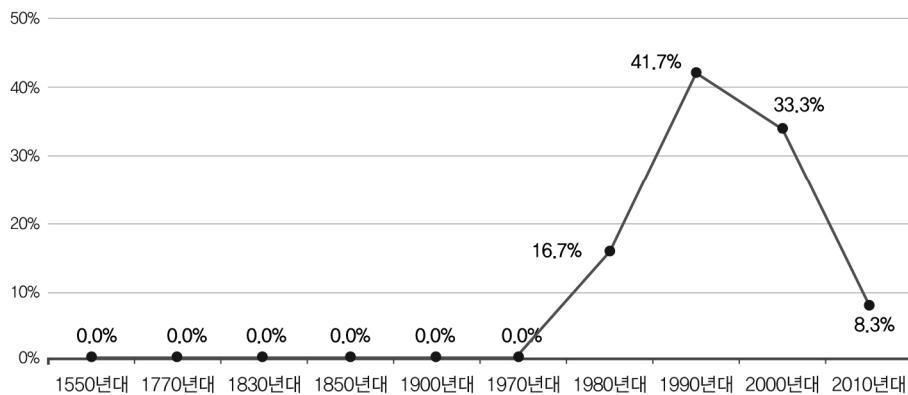


연도별로 분별한 국외공연장 사고의 증가추이를 그래프로 보았을 때 155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는 2.6%의 낮은 수치로 일정하게 유지되다 1970년대 5.3%, 1980년대 7.9%를 사고율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 23.7%로 급증하여 2000년대 44.7%의 가장 높은 수치에 도달했다. 이후 10년간 대폭 하락하여 2010년대에는 5.3%의 사고율을 기록했다.

〈연도별 무대장치사고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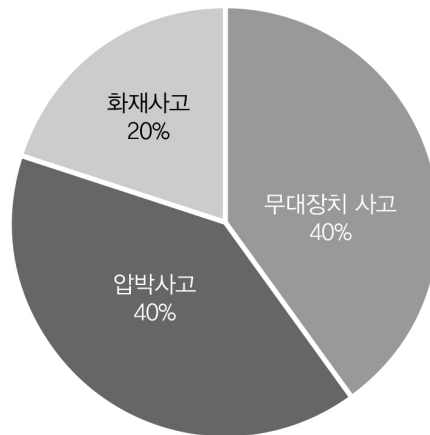
〈연도별 추락사고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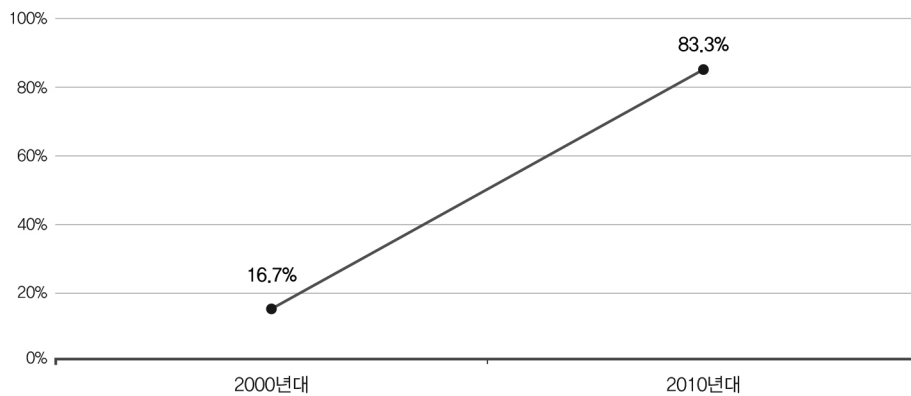
국외 실내 공연장 사고 중 무대장치 사고는 1550년대 16.7%의 사고율을 보였으나 이후로 사고율이 없었으며 1990년대 다시 16.7%의 사고율이 증가했다. 2000년대에는 절반에 도달하는 50.0%의 높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2010년대 16.7%로 사고율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2000년대를 기반으로 사고율의 변동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락사고 증가추이 또한 1970년대까지는 추락사고율이 없었으나 1980년대 16.7%로 증가율을 보이면서 1990년대 최고 수치인 41.7%를 기록했다. 그 후로 점차 하락세를 보이며 2000년대, 2010년대에 33.3%, 8.3%의 사고율을 나타낸다.

## (4) 유형별 국외사고 비율 (야외)

〈유형별 사고 비율 - 국외(야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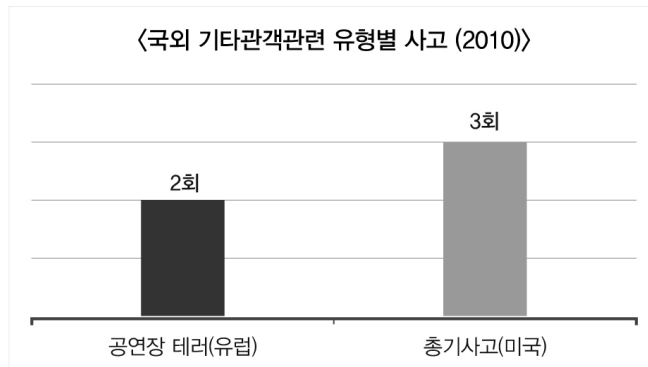


〈연도별 국외사고 증가 추이 (야외)〉



국외에서 일어난 공연장 실내사고를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압박사고와 무대장치 사고가 40%로 동일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화재사고가 20%의 비중을 차지한 것을 볼 수 있다. 연도별 국외공연장 야외사고 증가추이는 2000년대 16.7%로 10년 동안 66.6% 증가하여 2010년대에 83.3%로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 (5) 국외 기타관객관련 유형별 사고 (2010)



2010년대에 일어난 국외 기타관객관련 유형별 사고에는 유럽에서 2회의 공연장 테러 사고가 발생했으며 미국에서 총기사고가 3회 발생했다.

이러한 국외사례를 보았을 때, 잦은 화재사고와 무대장치로 인한 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았으며 실내사고는 추락사고, 야외사고는 압박사고의 비율 또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연장 내에 소화전과 같은 화재예방물품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하며 조명과 같이 화재발생위험이 높거나 낙하위험이 높은 장치의 점검을 더욱 집중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위험요소가 많은 무대에서 발생하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 시, 주변을 한 번 더 살펴야하고 형광마크,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어두운 공간에서도 위험요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 기계에 깔리거나 사람에 깔리는 것과 같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압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객안내원 배치 수를 늘리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 매뉴얼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한다.

공연 관객 위기 대응 및  
관리 매뉴얼



## 제3장 안전 매뉴얼 작성과 활용

1. 안전 매뉴얼의 작성과 활용
2. 안전 매뉴얼의 예시



## 1 안전 매뉴얼의 작성과 활용

관객 위기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다. 과거의 사고 사례를 반면 교사 삼아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부터, 관객에 대한 응급조치 요령까지 알아야 할 사항은 실로 무궁무진하다. 그러기에 각각의 공간 특성에 맞도록 경우에 따라 특정 정보를 취사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공간의 특성뿐만 아니라 공간을 관리하는 구성원들 각각의 능력이나 위기 대처 역량에 따라, 상황에 따른 대처 방식이 달라야한다.

최근 여러 정책적인 홍보나 미디어들의 보도 등을 통해 안전 매뉴얼의 필요성은 늘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서 안전사고는 계속 발생하는데, 이들 안전사고의 유형 중에는 드물게 우리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유형의 사고도 간간히 있지만, 상식적으로 보기에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사고의 원인을 추정해보았을 때, 사고는 안전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확률이 더 높다고 지적하는 여론이 높다.

따라서 안전 매뉴얼을 잘 만들어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행되기 위한 실질적인 활용 방법 또한 안전 관리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안전 매뉴얼의 작성에 관한 사항과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한다.

### 1) 안전 매뉴얼이란

안전 매뉴얼이란 각종 재해 및 인명 사고 등 비상상황 등에 대비해 진압, 구호, 대피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조직이나 구성원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그들이 취해야할 행동 수칙 등을 명기한 문서이다. 안전 매뉴얼에서 상정하는 상황은 비일상적이고 돌발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일상적인 업무나 작업에 대해 기술하는 작업 매뉴얼과는 차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 매뉴얼에는 비상상황에 대한 후속 조치는 물론 사전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들도 명시되어 있어야한다.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사항에는 비상상황 시 발생하는 비일상적인 사고들에 대비한 조치사항과, 상시 배치 인력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 상황 등에 대비한 신속한 조치사항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한다.

안전 매뉴얼은 목적 지향의 막연한 구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불이 나면 이를 끄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의 막연한 구술은 매뉴얼이라고 할 수 없다. 매뉴얼에는 그것을 숙지하는 담당자가 가급적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앞서 화재 상황에 대한 상황이라면 화재를 진압할 것인지 아니면 대피를 우선으로 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부터, 화재 진압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수단은 어디에 비치되어 있으며 이를 사용

하기 위한 방법은 어떠한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안전 매뉴얼의 필요성

안전 매뉴얼이라고 지칭하는 내용 중 ‘매뉴얼’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종의 지침서이자 시스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즉, 안전 매뉴얼은 특정 공간을 누가 관리를 하든지 ‘매뉴얼’에 따라 균일하고 시스템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공연법 제11조에서는 안전 매뉴얼을 재해대처계획이라 지칭하는데, 이를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장 및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에 대해서도 관련 재해대처계획서를 신고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 3) 안전 매뉴얼의 요소

안전 매뉴얼의 제작 목적은 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에 있기 때문에 공연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 매뉴얼의 사항은 제각기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안전 매뉴얼에 보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시설개요

공연장의 특성과 연관지어 사건 사고는 일단 공간의 특성과 연관된 내용이 많다. 안전 매뉴얼에는 반드시 전반적인 시설의 개요와 특성 등이 서술되어 있어야 한다.

### (2) 재난 관리 조직 및 임무

재난 관리를 위한 인적 구성과 조직에 따라 재해 대체 계획과 조치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병원이라는 공간에서의 인적관리나 조직체계는 분명 일상적인 공간과는 다르기 때문에 인적 사고에 관한 조치는 상황전파보다는 즉각 조치가 우선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공간의 특성이 아닌 이상 공연장의 경우 즉각 조치보다는 상황전파가 우선일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재난에 대처하는 인적 자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각각 취할 수 있는 역량과 임무는 어떻게 되어야 할지 구성하고 이를 기록하는 것은 중요하다.

재난 관리 조직에 대한 기재는 상시조직을 기준으로 하되 공연장의 경우, 공연이 진행되는 시점과 진행되지 않은 시점을 구별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비상시에 관한 조직 및 임무에 대해서는 각각의 현장 책임자와 관리요원의 대직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기재하고 조직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변경 조치를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3) 비상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 및 연락처

#### ① 상황 지시 및 총괄 지휘

현장에서의 비상상황을 지휘하고 총괄할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정작 비상 상황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예를 들어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까지 실시해야 하는 상황의 경우 총괄 지휘자의 지휘나 명령을 기다리기보다는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일반인에게 119 신고를 시키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유용한 방법이다. 따라서 현장 책임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도 안전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한다.

천재지변 등의 기상 악화 상황 등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책임자까지 현장에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상황 판단과 조치를 어디까지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책임 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② 상황 전파 및 신고

세월호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해경 123 함정의 당시 통화 기록에 있어서 청와대에서는 현장 구조 조치에 관한 사항보다는 사고 선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상부에 보고하기 위한 정보만을 얻기 위해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판이 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이기에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상황전파 체계가 적절했고, 상황전파에 있어서 주고받아야 할 상황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상호간의 적절한 매뉴얼이 있었다면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는 대목이다.

통상적인 사고와 관련해 상황전파는 필요한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만 압축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상황을 조치하는 사람이 상황전파나 신고조치를 취하기 위해 상황조치에 소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전파의 체계는 합리적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현장 상황에 직면한 사람에게는 단 한 번의 상황 전파만으로 모든 조직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상황 전파에 대한 별도의 조직을 설정해야 하며, 이 조직은 가급적 상황조직을 지휘하거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주체여야 한다.

상황전파의 체계와 더불어 상황전파의 유효한 수단에 대한 설정도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화 유선체계가 마비되거나, 다중이 모인 상황에서 동시 다발적인 무선 통화로 인해 휴대전화 또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무전기 체계 역시 단일 채널 구성에서 구성원간의 통신양이 폭증할 경우 상황전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안전 매뉴얼 상에는 상황전파의 방식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해야 한다.

#### ③ 소요상황 대처

#### ④ 관객대피

- 관객 대피에 관해 응급 상황의 경중에 따라 대피 방식을 달리 한다.
- 대피 사유에 관해 관객에게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 ⑤ 응급구호

- 개별적 응급구호 상황 → 조치자, 신고자, 추가 조치자, 구급대 동선확보
- 다중에 대한 응급구호 상황

#### ⑥ 차량 및 관람객 통제

#### ⑦ 안전 검사 등 관리

### (4)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 일반적인 안전 예방
- 공연별 상황에 대한 예방조치
  - 관객동선 유도
  - 공연 형태별 조치
  - 관람객 규모에 따른 조치
  - 관람 장소에 따른 조치
- 인명피해 방지 조치사항
- 안전관리 요원 배치사항
- 안전 관리 요원 행동 요령
- 안내방송 시스템 및 안내문
- 안전 검사 등 관리

### (5) 협력기관에 관한 사항

- ① 행정기관
- ② 소방, 치안기관
- ③ 응급의료기관

### (6)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① 상황별 조치요령
- ② 응급조치요령
- ③ 안전장비 사용 및 점검 요령

#### (7) 대피도 등 기타 사항

- ① 안전배치도
- ② 장비배치도

#### 4) 안전 매뉴얼의 활용

안전 매뉴얼의 본질은 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에 있기 때문에 공연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 매뉴얼의 사항은 제각기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안전 매뉴얼에 보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살펴해보도록 한다.

- ① 안전 매뉴얼의 소지와 숙지
- ② 공간별 담당자에게 최적화한 안전 매뉴얼 비치
- ③ 협력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가능 방안
- ④ 교육훈련을 통한 보완점 발견 및 수정
- ⑤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 기술

## 2 안전 매뉴얼의 예시

### 1) 영상사고 대처매뉴얼

\* 영상사고의 기준은, 제작사의 판단에 따른다.

영상 이상 발생 시 오퍼레이터가 기술감독에게 1차 연락 후 예비용 프로젝트로 교체한다. 교체 완료 후 컴퍼니매니저를 통해 티켓매니저와 하우스매니저에게 상황에 대해 알린다.

#### (1) 1막 사고 발생 시

- ① 2막 관람을 안 할 경우에 한해 당일 일자 티켓을 회수한 후, 다른 일자 공연으로 변경하여, 현장에서 티켓을 발권해 준다.(기획사나 공연장의 규정에 따라 상이하다.)
- ② 2막 관람을 원할 경우 기본적으로 별도 보상은 없으며, 컴플레인이 극심한 사람에 한해 좌석 업그레이드 혹은 10% 할인권을 증정한다.(내부 협의가 필요하며, 상황이 긴급할 경우 티켓매니저의 재량으로 진행한다)

#### (2) 2막 사고 발생 시

- ① 전체 공연을 관람하였을 경우 환불은 불가하다. (단, 2막 전반에 걸쳐 영상 문제 시, 내부 협의를 통해 방침 변경)  
\* 사고 안내멘트는 극장과 제작사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 2) 음향사고 대처매뉴얼

\* 음향사고의 기준은 제작사의 판단에 따른다.

#### (1) 1막 사고 발생 시

- ① 2막 관람을 안 할 경우에 한해 당일 일자 티켓을 회수한 후, 다른 일자 공연으로 변경하여, 현장에서 티켓을 발권해 준다.(소규모의 컴플레인 시 좌석지정 발권하며, 대규모 컴플레인이 예상될 시 전화예약 교환권을 준다)
- ② 2막 관람을 원할 경우 기본적으로 별도 보상은 없으며, 컴플레인이 극심한 사람에 한해 좌석 업그레이드 혹은 10% 할인권을 증정한다.(내부 협의가 필요하며, 상황이 긴급할 경우 티켓매니저의 재량으로 진행한다)

## (2) 2막 사고 발생 시

- ① 전체 공연을 관람하였을 경우 환불은 불가하다. (단, 2막 전반에 걸쳐 영상 문제 시, 내부 협의를 통해 방침 변경)

\* 사과 안내멘트는 극장과 제작사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 3) 정전사고 대처매뉴얼

정전 발생 시점 10분 이내에 공연을 재개할 수 있는 전력이 공급될 경우, 전력공급 개시 시점으로부터 15분 이내에 공연을 시작한다.

### (1) 공연 가능 시

- ① 극장 무대감독이 정전에 대한 원인 파악을 한다.
- ② 하우스매니저는 정전에 대한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하우스매니저는 관객안내원들에게 비상위치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하고 관객이 좌석에 침착하게 앉아있도록 유도한다.
- ③ 정전의 원인이 밝혀지고 10분 이내에 복구가 가능한 경우, 하우스매니저가 이에 대한 안내방송을 실시한다.(공연 재개 시간 안내)

### (2) 공연 불가능 시

- ① 단시간에 전원을 복구할 수 없다면 하우스매니저는 이에 대한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제작사의 '공연중단 행동요령'을 따르도록 한다.
- ② 하우스매니저는 관객안내원들에게 지시하여 관객들이 안전하게 공연장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윗층 객석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한다.
  - \* 물품보관소 인원은 신속한 고객물품 및 오페라글라스 반납을 위해 정리정돈을 미리 해놓는다.
  - \* 차량이용고객은 정산소에 사전 연락하여 주차권 환불 및 무료 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③ 하우스매니저는 대피 완료 후 잔류하거나 부상당한 관객이 없는지 확인한다. 분실물 및 전기 물품 이상 유무가 있는 지 확인하여 추후 전달한다.

## 4) 기계사고 대처매뉴얼

### (1) 공연 가능 시

- ① 극장 무대감독이 기계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한다.
- ② 제작사 무대감독은 공연중단에 대한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하우스매니저는 관객안내원들에게 각 위치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하고 관객이 좌석에 침착하게 앉아있도록 유도한다.
- ③ 원인이 밝혀지고 10분 이내에 복구가 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안내방송을 실시한다.(공연 재개 시간 안내)

### (2) 공연 불가능 시

- ① 공연이 불가하다면 제작사 무대감독은 이에 대한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제작사의 ‘공연중단 행동요령’을 따르도록 한다.

## 5) 소방훈련 대처매뉴얼

### (1) 소방훈련 시나리오 예시 1

| 시간    | 상황             | 행동요령                  | 훈련내용(요약)                                                                                                                                                                                                | 비고     |
|-------|----------------|-----------------------|---------------------------------------------------------------------------------------------------------------------------------------------------------------------------------------------------------|--------|
| 10:00 | 관내상황           | 관내소방훈련본부<br>(안내방송)    | 여기는 000공연장 소방대 지휘본부입니다. 하절기 화재발생에 의한 전 직원 여러분이 훈련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지휘반    |
|       |                | 훈련의 개요                | 이 시간 이후 실시될 소방 대비 훈련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공연 중 무대세트장 내부에서 원인모를 발화로 화재통보, 대피, 소화, 부상자 응급조치, 복구 처리 순으로 약 30분에 걸쳐 진행되겠습니다. 각자 임무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실제 공연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각자 맡은 임무에 침착하면서도 신속하게 대처하는 훈련입니다. | 통보반    |
| 10:05 | 화재발생<br>(경보발생) | 경보전파<br>(사이렌, 비상벨 타종) | 공연장 내 직원이 화재를 인식하고 공연장 문 개폐와 동시에 침착하고도 신속하게(당황하지 않는 톤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차례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발신기 누름 10:00 현재 화재경보 발생                                                                                        | 통보 연락반 |
| 10:05 |                | 지휘부구조소방서,<br>파출소 등 연락 | 모든 대원들은 편성임무에 따라 신속하게 출동하여 사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 연락<br>연락내용 : 핸드폰으로 통화 액션<br>‘여기는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0번지에 위치한 000공연장입니다. 관내 대공연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속히 출동해주시시오’<br>(화재현장 및 발화 장소 통보)                | 통보 연락반 |

| 시간    | 상황            | 행동요령              | 훈련내용(요약)                                                                                                                                   | 비고     |
|-------|---------------|-------------------|--------------------------------------------------------------------------------------------------------------------------------------------|--------|
| 10:05 | 직원 등 대피시설로 대피 | 대피유도반 배치, 대피장면 연출 | 관내 전 직원 및 관람객 여러분은 대피 유도반원의 안내를 받아 지정된 대피소(외부)로 신속히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회 반복)<br>화재가 발생한 층 순으로 대피유도반의 안내를 받아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경로를 이용하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피난 유도반 |

## (2) 소방훈련 시나리오 예시 2

| 시간    | 상황      | 행동요령                      | 훈련내용(요약)                                                                                                             | 비고                   |
|-------|---------|---------------------------|----------------------------------------------------------------------------------------------------------------------|----------------------|
| 10:05 | 화재 진압   | 소화 작업                     | 경보를 울림과 동시에 건물 내 소화전 사용, 또는 부근 소화전을 이용하여 화재진압. 소화기사용 발화원 진화액선<br>소화전 개폐하여 호스이동 및 발화원(공연장무대) 도착, 실제 분사는 광장에서 전면유리에 분사 | 소화반                  |
| 10:10 | 부상자 발생  | 인근병원 구급차 출동               | 대피 도중 여러 명이 넘어짐<br>부축하여 이동<br>응급환자 긴급출동 한 의료 후송반에 의해 구조되어<br>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긴급후송                                        | 피난 유도반<br>및<br>응급구조반 |
| 10:10 |         | 소방서 도착                    | 소화반 소화작업 시작과 급수                                                                                                      | 소화반                  |
| 10:15 | 대피완료    |                           | 전 직원 및 손님 등                                                                                                          | 피난 유도반               |
| 10:20 | 화재진압 완료 | 협조관련기관대원 철수               | 인근 소방서의 추가 지원으로 화재가 진압되었습니다.                                                                                         | 지휘반                  |
| 10:25 | 정상      |                           | 모든 화재가 진압되고 피해시설이 거의 정상적으로 원상복구 되고 있습니다. 반출반, 종사원 및 신속히 출동한 관련기관의 원활한 협조로 예상보다 빨리 피해시설이 정상화 되었습니다.                   | 지휘반                  |
| 10:30 | 상황복구    |                           | 소화전 호스 물 제거 후 차곡차곡 접기<br>사용소화기 본부에 충약 의뢰<br>관련기관 상황보고(유선 및 공문)                                                       | 소화반                  |
| 10:30 | 경계해제    | 해체방송 실시<br>정상업무복귀<br>안내방송 | 10:30 현재 모든 화재와 복구가 완료되었으므로 해제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br>관내의 모든 직원 및 손님 여러분들은 정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이상으로 화재대비 소방훈련을 마치겠습니다.   | 지휘반                  |

## 6) 응급처치 대처매뉴얼

### (1) 응급처치의 10대 원칙

- ① 심한 쇼크 상태일 때 : 환자를 수평으로 눕히고 머리를 낮게 발을 높게 한다.  
토했거나 입에서 토혈을 해서 의식이 있을 때 : 피 또는 물을 토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머리가 발보다 낮게 한다.  
호흡장애가 있을 경우 : 앉아 있게 하거나 하반신을 기대게 하고 발을 뻗어 편한 자세를 취하게 한다.
- ② 출혈 질식 쇼크일 경우 신속 처리(인공호흡과 지혈)
- ③ 부상자를 조사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 ④ 부상자를 안심시키고 기분 좋게 해주어야 한다.
- ⑤ 부상자에게 상처를 보이지 않도록 한다.
- ⑥ 출혈을 멎게 하는 등 절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부를 손가락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
- ⑦ 의식불명의 환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는 안 된다.(특히 출혈이 심한 환자 물 먹임 금지)
- ⑧ 가능한 한 환자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
- ⑨ 부상자를 움직일 때 들 것은 발을 앞으로 하고 운반한다.
- ⑩ 정상적인 체온유지를 위해 덮어 주어야 한다.

공연 관객 위기 대응 및  
관리 매뉴얼



## 제4장 공연장 안전사고 대비 방법 및 시설 점검

1. 공연장 안전관리의 이해
2. 공연장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3. 안전사고 예방활동 / 재해예방프로그램
4. 공연장 안전사고 예방 대책
5. 공연장 위기상황 시 피난 방법
6. 공연장 관객 안전시설 점검



## 1 공연장 안전관리의 이해

### 1) 안전관리

#### (1) 공연장 안전관리란?

공연장에서의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연장의 안전 관리자가 실시하는 조직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공연장의 안전관리에는 재해예방 프로그램 실시, 재해대처계획서 작성, 관객 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 관객 서비스 인력 안전교육 및 위기상황 시 업무 분배, 위기상황 시 비상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 (2) 안전관리의 필요성

##### ① 테러사고의 증가

국외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내의 경우에도 테러와 같은 비정상(非正常)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를 반영하여 예방 및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4년에는 재미교포 신은미씨의 북콘서트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고체연료를 사용한 사제폭탄을 투척해 3명이 다쳤다. 2015년에는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가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략)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들 외에도 주변에서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테러를 저지르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13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백화점서 20대 남자 직원에게 염산을 부리고 달아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힌 일이 있었다. (중략) 지난 13일에는 남성 2명이 심야시간에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행인을 상대로 비비탄을 마구 쏘는 바람에 6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에 대한 분노와 연결돼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결국 그 분노는 무차별적으로 대중을 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2017년 6월 19일 일요시사 장지선 기자

“해외에서 ‘불특정 민간인(소프트타겟)’ 테러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국내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차별에 다른 모멸감 때문에 테러단체에 관심을 갖는다. 내게 IS 같은 힘이 있다면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처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중략) ‘공장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은 외국인은 한국인과 공권력에 대한 반감이 크다. 일부 과격 성향의 테러단체 추종자의 선동이나 단체 가입 권유가 폭력 활동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우리는 테러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요?”

2017년 5월 25일 동아 하정민 기자

## ② 공연장의 특성에 따른 사고 예방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공연장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등 문화시설 이용 중 사고를 입는 사례가 한 해 평균 47.5건으로 조사됐다. (중략) 사건 발생 건수는 2009년 32건에서 2010년 28건으로 줄어드는 듯하다가 2011년 58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후 2013년에도 67건으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가 2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물 추락 등에 따른 상해’ 23.4%, ‘추락 낙상 사고’ 10%, ‘베임, 찢림, 열상’ 8.4%순으로 뒤를 이었다. 시설별로는 영화관에서 42.5%의 위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공연장(31.8%), (중략)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보면 공연 관련 피해가 58.9%로 영화 관람 관련 피해(22.6%)보다 훨씬 많았다. 피해 유형으로는 예매 과정상 착오 및 오류, 예매 취소 후 환불 지연 및 과다 위약금 요구, 계약 내용의 불이행, 표시된 가격 할인의 미적용, 회원 포인트 일방 소멸 등이다.”

2014년 10월 26일 국민일보 김현길 기자

“지난 17일 경기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야외공연장에서 공연도중 환풍구 철제 덮개가 붕괴되어 관람객 27명이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상을 입었다. 공연 대참사다. (중략) 왜 이처럼 공연사고가 빈발하는 것일까. 최근 지역축제가 급증하고 다양한 공연행사가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 매뉴얼조차 없을 뿐더러 안전요원 미배치 등 구조적인 문제와 관객들의 안전의식 약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공연장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교 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공연처럼 야외공연장에서 공연이 펼쳐지는 경우, 수많은 관객이 몰려 통제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철저한 안전규칙 준수가 더욱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야외공연에 대한 안전규칙이나 매뉴얼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의 미비가 공연 대참사를 초래한 것이다.”

2014년 10월 17일 뉴시스 조성봉 기자

## ③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증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및 국내에서도 지진 발생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그 피해 규모와 위험성 또한 증가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마련한 여름축제가 잦은 호우로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돼 도심 속 여름 휴가를 즐기려는 시민들에게 아쉬움을 주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19일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봄슬레이 워터슬라이드’가 호우 주의보 발령으로 운영이 취소됐다. (중략) 한강 잠수교를 도심 속 해변으로 만들려던 ‘잠수교 바캉스’도 집중호우로 연기됐다가 결국 취소됐다. (중략) 지난달 21일 개막한 ‘한강몽땅 여름축제’도 비로 타격을 보았다.”

2017년 8월 29일 세계일보 이창훈 기자

“지난해 한국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은 총 524회로 예년 평균 지진 발생 횟수인 47.6회보다 5배 이상 발생빈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기상청에 따르면 규모 3.0 이상 지진 발생 횟수는 34회로 예년 평균 9.4회 보다 많았다. 유감지진 발생횟수도 55회 이상으로 예년 평균 8.7회 보다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는 9월 12일 경북 경주시 남서쪽 8.7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지진이다. 이 지진은 1978년 기상청 계기지진 관측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2017년 1월 12일 뉴스한국 조은희 기자

#### ④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의 중요성 증가

안전사고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의 미숙한 대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확대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보다 성숙한 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사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5일 오후 200여 명이 건국대 ‘커먼그라운드’에서 코오롱그룹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헬로 드림 토크콘서트’를 관람했다. 하지만 운영 미숙으로 편안하게 공연을 즐기지 못하고 자칫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됐다. 행사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등 행사 취지에 반하는 부작용도 연출됐다. (중략) 사상 최대 폭염을 기록하고 저녁에도 30도에 육박하는 열대야가 지속됐지만, 행사장을 찾은 관객들은 무대 앞바닥에 앉아 관람해야 했다. (중략) 40여 명 남짓한 관객들은 출연진이 등장할 때마다 난간에 몸을 기대거나 상반신을 밖으로 내밀며 사진을 찍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을 보였다. 난간에는 추락을 경고하는 안내표지판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중략) 인근 주민들은 소음 때문에 힘들다고 아우성이었다.”

2016년 8월 8일 뉴데일리 남두호 기자

“최근 열린 경기 안산M밸리 록페스티벌이 주차 공간 부족과 진흙탕 공연, 과격한 통제 등 운영미숙으로 관람객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중략) 공연주차장은 순식간에 만차가 됐고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관람객들은 행사장 주변에서 30분~1시간씩을 허비했다. (중략) CJ는 2013년부터 대부파크에 잔디를 심어 행사장 바닥을 다졌지만 이번 행사 때는 이틀가량 내린 빗물이 빠지지 않아 진흙탕으로 변했다. (중략) 이 외에도 ‘안산록페스티벌 페이스북’에는 공연장 셔틀버스 배차 지연, 과격한 통제 등 운영미숙을 지적하는 글들이 게재됐다.”

2015년 7월 27일 뉴시스 이종일 기자

## 2) 공연장 안전관리 인력의 이해

### (1) 하우스매니저

하우스매니저는 극장의 F.O.H.(Front Of House)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고 보완하는 극장관리자임과 동시에 고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이다.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장에 방문하는 고객에게 최상의 관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연장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질적인 수준 향상을 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 확충과 함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의 수준 높은 서비스란 안전을 수반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는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한다. 특히, 하우스매니저가 관리하는 공연장의 FOH시설은 관객이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동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우스매니저는 FOH시설의 안전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여 관객의 안전을 책임져야한다. 또한, 관객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소통하는 관객서비스인력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관리자로서 위기상황 발생 시 안전관리능력을 함양하여 안전사고 발생 요인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공연장의 주요 인력이다. 더불어, 관객서비스인력이 공연장 안전사고예방과 관객 안전 확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객석 내 대피훈련 체험 및 심폐소생술 훈련 등을 통하여 관객 안전관리 역량의 강화를 이끌어내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우스매니저이다.

#### ① 하우스매니저의 안전관리 업무

##### - 공연장 안전시설 점검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장의 FOH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FOH시설에는 크게 객석 공간, 로비 공간, 편의공간으로 이루어진다. 하우스매니저는 비상상황 발생 시 FOH시설에 위치하고 있는 관객이용시설의 대피동선, 안전시설 작동 확인 등의 점검을 진행한다.

##### - 사고발생 요인 파악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사고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사고가 재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대비한다.

##### - 위기상황 훈련

관객서비스인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주로 공연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처방법과 화재, 정전, 지진, 테러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훈련을 진행한다.

##### - 안전 매뉴얼 작성

위기상황 훈련 시 사용되는 매뉴얼을 일컫는다. 안전 매뉴얼을 바탕으로 관객서비스인력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공연장구조 등의 현장파악을 통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안전 매뉴얼에는 공연장의 구조, 비상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응급장비 운용방법, 조직의 비상체계안내 등이 포함된다.

－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 대처

- 관객 대피 : 관객들이 질서정연하고 차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관객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대피 경로에 따라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 출입문 관리 : 실내에서 공연을 할 경우, 비상대피로의 모든 출입문을 개방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관객 통제를 실시하여 병목 현상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위험 구역 통제 : 사고 발생 지역 및 대피 경로 중 위험한 장소가 있으면 관객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

## (2) 무대감독

무대감독은 공연의 진행뿐만 아니라 무대의 안전과 무대 뒤 쪽의 분장실과 배우·스태프의 동선이 있는 백스테이지를 총괄 관리·감독한다. 공연 셋업·철수 기간에 무대에 많은 장치와 시설물들이 오고가기 때문에 운영스태프의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야하며, 공연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무대의 조명기기, 특수효과장치와 같은 각종 무대 기계시설에 결함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공연 중 무대기계로 인한 관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3) 시설관리자

공연장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시설체계를 조정하고, 공연장의 시설관리를 총괄, 각종 사고 지원 및 긴급복구체계 수립업무 등을 수행한다. 공연장의 수도, 전기, 통신방송설비, 기계설비, 보안, 미화 등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작동해야하는 안전시설을 운용하고 정기적으로 정밀점검을 담당하는 관리자이다.

## 2 공연장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현대사회에 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은 안전불감증이라고 한다.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관리에 소홀하고, 사고와 재해를 방지하는 기술과 시설이 보호해준다는 맹목적인 사고에서 안전불감증이 생긴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위를 살피고 현장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1) 공연장 발생 사고에 대한 정보 부족

공연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사례 수집 및 조사는 필수적이다. 공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관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연장의 구조, 위기상황별 활용 가능한 대비 시설, 시설물 종류와 형태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습득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2) 동선 관리 소홀

공연장 내 시설물의 위치와 활용, 관객의 주요 이동 동선 파악, 군중심리, 관객유형별 관람형태 등에 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인력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 3) 현장 관계자 체계

공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관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공연장 직원, 공연단체, 현장요원 등은 안전과 관객보호에 관한 책임자로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평상시 상호 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 4) 현장과 맞지 않는 안전시설

무대와 객석의 구조형태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시로 보완하고 시설물을 교체해야 하지만 대부분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고 안전관리에 둔감하게 운영될 수 있다. 많은 유동인구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공연장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관객의 안전을 지키고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 3 안전사고 예방활동 / 재해예방프로그램

#### 1) 안전사고 예방활동의 가치

##### (1) 예방활동의 경제적 평가

- ① 경제적 활동효과를 화폐적 가치로 표현하는 것으로, 즉 사고 1건당 평균피해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 ② 재해손실비용 :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출된 모든 손실 비용

##### (2) 재해손실비용의 추정방식

재해손실비용은 직접손실비와 간접손실비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직접손실비는 간접손실비의 1/4 수준이다. (하인리히의 방식)

###### ① 직접손실비(Direct Cost)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가시적인 비용 →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 보상금 등

###### ② 간접손실비(Indirect Cost)

직접손실비 이외에 발생하는 비가시적인 비용 → 기업가치 손실, 직원 사기저하, 근로시간 손실 등

※ 2014년 기준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산업재해 피해자 1명에 대한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은 평균적으로 약 230만원이며 이에 따른 간접손실비는 약 92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4년 산업재해현황분석, 고용노동부)

#### 2) 재해예방 프로그램

##### (1) 재해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

재해예방프로그램은 안전총괄책임자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고 예방과 모든 관련 표준 및 규정의 준수에 대해 안전총괄책임자가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있다면 이는 분명하게 모든 안전관리담당자와 공연 관계자들에게 전달된다. 만약 안전총괄책임자가 재해예방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조직 내 누구도 이에 관심이 없을 것이다.

어떤 재해예방프로그램이든 담당자의 협조와 참여를 얻기 위해서는 안전총괄책임자가 먼저 관심을 표명하고 솔선수범하여 이를 문서화된 안전방침으로 만들어 내고 예외 없는 강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모든 안전관리담당자와 공연 관계자들이 조직이 진지하게 자신들과 자신들이 안전과 건강에 관심을 지니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 【참고사항】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

##### ① 안전총괄책임자

공연장이나 공연의 안전을 위해 공연장운영자 등이 지정하는 자로서, 공연장이나 공연의 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 또는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예시, 위급상황 발생 시 공연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 ② 안전관리담당자

공연장이나 공연의 안전을 위해 공연장운영자 등이 지정하는 자로서, 공연장이나 공연의 기술적·운영적 안전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 (2) 재해예방 프로그램의 전개

안전에 대한 안전총괄책임자 등 안전관리조직의 태도는 서면형식의 안전방침으로 신중하게 문서화하여 모든 관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문서화된 방침은 안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때 판단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고,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규정을 실행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문서방침은 양식의 정교성보다는 실천가능하며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명료하게 알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승인된 규정내용을 통해 공연 관계자들의 실천이 시작되면 다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안전 목표를 조직의 것으로 하고 전 조직의 안전 중시태도를 확산시킨다.
- 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권위를 부여한다.
- 모든 공연 관계자들에게 안전책임의식과 협동심을 심어준다.
- 훌륭한 방침은 안전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촉진한다.

전반적인 안전방침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 안전에 관한 안전관리조직의 태도
- 사고방지조직 및 지원기능
- 안전관리담당자와 공연 관계자들에게 진행 중인 교육훈련의 필요성 인식
- 안전작업수칙과 각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지침
- 공연자 안전교육

안전관리 방침이 결정된 후에는 그것을 모든 공연 관계자가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조직 및 각 공연조직의 직접적인 계통을 통해 최하위 관계자에게까지 원활하게 도달해야 한다. 그리고 일관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에 큰 도움이 된다. 만약 정해진 안전방침이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효율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논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형태로 보완해야 한다.

### (3) 공연 안전문화 조성

안전한 공연활동으로 인해 원하는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안전문화의 구축이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한다. 안전문화는 공연 관계자들이 실제로 안전이 그 조직에서 중요한 가치의 하나라고 믿고 조직 우선순위 항목에서 높게 순위 매김 되어 있다고 아래와 같이 인식할 때에 긍정적으로 얻어질 수 있다.

- ① 안전관리조직이 신뢰할만하다고 생각할 때
- ② 안전방침이 실제로 실천될 때
- ③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여줄 때
- ④ 관계자들이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 ⑤ 의사소통이 개방적일 때

위의 긍정적인 안전문화에서는 어떤 안전 시스템의 항목이라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바른 안전문화가 조성되어 있는 조직에는 재해예방 프로그램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그러한 조직에서는 안전이 일상적인 운영과정의 한 부분으로 다뤄지기 때문이다.

## 3) 재해대처계획서 작성

### (1) 재해예방조치

공연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7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공연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제11조(재해예방조치)

-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재해대처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5.18.〉
- ③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5.18.〉
- ⑤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 (2) 재해대처계획서 필수 작성 항목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 ①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 ② 비상시에 취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③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④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 안전 관리 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 연계계획서가 추가 필요

####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17.〉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 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3) 재해대처 계획 신고서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에 포함된 재해대처계획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각 공연장이 해당하는 처리기관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12.31.〉

[ ]공연장  
[ ]공연

재해대처계획 [ ]신고 서  
[ ]변경신고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br>기간 | 즉시 |
|------|-----|----------|----|
|------|-----|----------|----|

|                            |                  |                                                          |            |                        |                                                         |                        |  |  |  |
|----------------------------|------------------|----------------------------------------------------------|------------|------------------------|---------------------------------------------------------|------------------------|--|--|--|
| <div>① 공연장 운영자 작성 사항</div> | <div>③ 운영자</div> | 대표자 성명                                                   |            |                        |                                                         | 생년월일                   |  |  |  |
|                            |                  |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   |                        |                                                         |                        |  |  |  |
|                            | <div>④ 공연장</div> | 명칭                                                       | 종류 및 운영 형태 |                        | [ ]공공 공연장 [ ]직영 [ ]수탁<br>[ ]양여<br>[ ]민간 공연장 [ ]자가 [ ]임차 |                        |  |  |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
|                            |                  | 착공일                                                      |            |                        |                                                         | 개관일                    |  |  |  |
|                            |                  | 시설설치 내역<br>(※무대기계·기구 수는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의 고시에 따라 산출 기재) | 건축면적       | m <sup>2</sup> (    평) | 무대면적<br>(무대제공면적)                                        | m <sup>2</sup> (    평) |  |  |  |
|                            |                  |                                                          |            | 무대기계<br>· 기구수          | 구동식                                                     | 개                      |  |  |  |
|                            |                  |                                                          |            | 고정식                    | 개                                                       |                        |  |  |  |
|                            |                  | 객석규모                                                     | 개          |                        | 객석이 되는 바닥면적                                             | m <sup>2</sup> (    평) |  |  |  |
|                            | 등록번호             |                                                          |            | 등록연월일                  |                                                         |                        |  |  |  |

|                      |          |                     |                     |       |                            |   |  |
|----------------------|----------|---------------------|---------------------|-------|----------------------------|---|--|
| ②<br>공연시<br>작성<br>사항 | ⑤<br>주최자 | 대표자성명               |                     | 생년월일  |                            |   |  |
|                      |          | 대표자주소               |                     |       |                            |   |  |
|                      | ⑥<br>공연  | 제명                  |                     |       | 공연단 규모<br>(출연 및 제작인원)      |   |  |
|                      |          | 공연기간                |                     | 매표 방법 |                            |   |  |
|                      |          | 공연에 따른 시설 추가<br>설치수 | 무대설치면적              |       | ㎡(            평) / 설치완료일 : |   |  |
|                      |          |                     | 무대기계 · 기구 추가<br>설치수 | 구동식   |                            | 개 |  |
|                      |          |                     |                     | 고정식   |                            | 개 |  |
| 좌석 추가설치수             |          | 개총 좌석수(관람예상인원)      |                     |       | 개                          |   |  |

|         |      |
|---------|------|
| ⑦ 변경 사항 | 변경 전 |
|         | 변경 후 |

「공연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연장·[ ]공연의 재해대책계획([ ]신고, [ ]변경신고)을 신고합니다.

이  
아  
그

신교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br>없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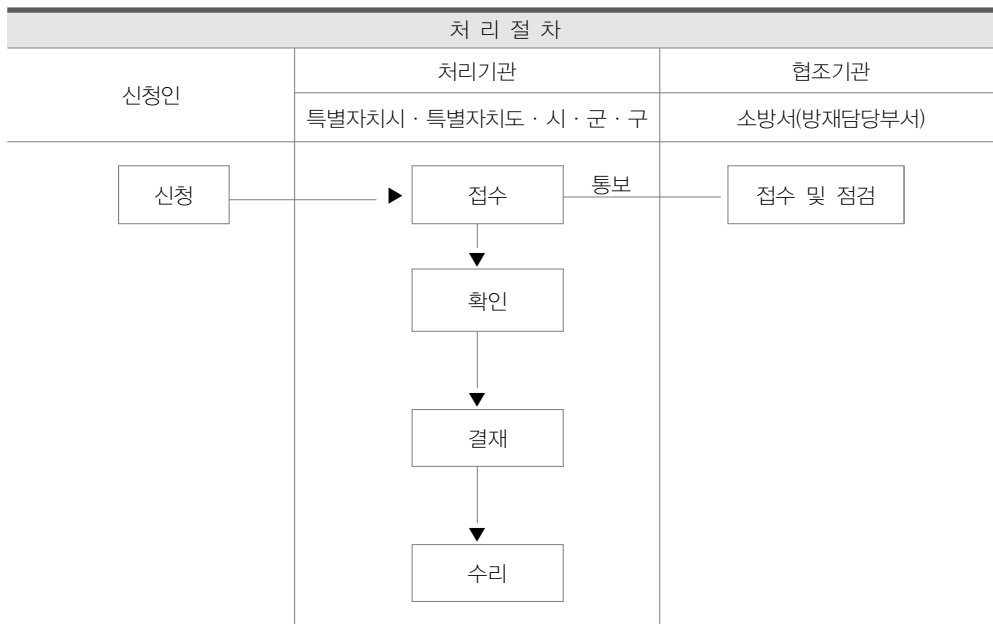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뒤쪽)

|      |                                                                                                                                                                                                                                                                                                                                 |        |
|------|---------------------------------------------------------------------------------------------------------------------------------------------------------------------------------------------------------------------------------------------------------------------------------------------------------------------------------|--------|
| 첨부서류 |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br>※ 공연장 운영자, 공연시설이나 장소 운영자 및 공연주최자는 재해대처계획에 각각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br>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br>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br>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br>4.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유 의 사 항

- 등록 공연장의 경우는 ②,⑤,⑥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등록 공연장의 경우는 개별 공연장별로 신고서의 ③,④란을 공연장등록신청서 작성 기준에 따라 기재한 후,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예 :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을 각각 별개로 작성합니다).
- 등록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는 공연시설이나 장소 운영자가 ①란을 기재하고, 공연주최자가 ②란을 기재하여 각각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⑧신고인 란에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연주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는 공연주최자가 첨부서류를 차질 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4 공연장 안전사고 예방 대책

### 1) 위기상황 시 관객관리

#### (1) 군중 관리의 이해

효율적인 군중관리(Crowd Management)를 위해서는 관객이 원하는 것을 돕고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연장에서 이뤄지는 통제의 부분은 관객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개인보다는 다수에 초점을 맞추어 장내에 혼잡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설득해야 한다.

#### (2) 군중심리

개인이 군집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이상심리를 말한다. 돌발 상황 발생 시 관객은 혼잡과 혼란 속에 놓여진다. 감정의 고조에 따라 평소와 다른 충동적, 비합리적인 이상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타인의 행동에 자극을 받아 동시에 흥분하게 되어 집단난동·폭동·파괴 등으로 커져 추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

#### 【참고사항】 군중심리의 특성

1. 무명성 : 군중 속에 일체화 되어 자기의식을 잃는다.
2. 무책임성 : 개인과 개인의 행동이 불분명하므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3. 무비판성 : 정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상과 억측으로 판단한다.
4. 감정성 : 동인과 반응의 상승작용으로 격앙된 흥분 때문에 감정적으로 행동한다.
5. 암시성 : 군중의 관심이 하나에만 집중되어 있기에 의식의 범위가 좁아지므로 외부에서 가해지는 영향에 대한 저항성이 낮다
6. 친근감 : 무책임성, 무명성, 감정성 때문에 일체감과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 (3) 피난심리

위기상황 발생 시 일반적인 피난 심리에 따르는 행동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하도록 한다.

##### ① 추종 본능

군중심리에 의해 남을 따라 하기 쉬워 적극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르기 쉽다. 비상시에는 한 사람의 리더에 많은 군집이 추종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초 사람의 행동이 올바른 방향인지 아닌지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시설에서는 피난유도를 적절하게 행하는 지도자의 육성 및 훈련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 ② 귀소본능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래 온 길로 되돌아가고 또한 일상 사용하는 경로에 의해 탈출을 도모한다고 한다. 따라서 일상의 경로가 그 말단까지 알기 쉽고 동시에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 것이 인간이 알지 못하는 다른 안전한 경로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항상 사용하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부근에 모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피난계단 또는 출구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도록 계획하여둘 필요가 있다.

## ③ 좌회본능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인 사람이 많이 때문에 오른손, 오른발이 발달해 어둠속에서 보행하면 자연히 왼쪽으로 돌게 되는 것이 전문가 사이에서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쪽인가 하고 말한다면 좌측의 벽면을 따라 피난하는 쪽이 유리하며 좌우측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생각하여 가는 편이 혼란이 적다는 뜻이다.

## ④ 퇴피본능

이상상황을 인지하면 우선 실태를 확인하려 근방에 접근하려고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안 경우 반사적으로 그 지점에서 멀어지려고 한다. 건물의 중심부에서 연기와 불꽃이 상승하면 바깥 방향으로, 바깥에서 상승하면 중앙 방향으로 퇴피하려고 한다.

## ⑤ 지광본능

화재 시에 검은 연기가 유동하거나 정전이 되는 경우 밝은 곳을 찾아 외주로 달아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연기 위험에 대하여 발코니와 옥외계단과 같은 외주 피난로가 유리하게 된다. 대부분이 지하 또는 무창층에서는 지상의 통로와 계단 개구부를 찾아 탈출을 시도하기 때문에 피난 경로를 집중적으로 밝게 하고 이것과 혼동하기 쉬운 일반 장식등은 제한하기도 하여 필요에 따라 소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관객관리와 관객통제

공연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객에 대한 통제보다는 관객에 대한 관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객관리와 관객통제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관객통제가 관객에게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관객관리는 관객이 공연을 즐기도록 하는 것 이고 그들에게 안내, 설득, 제재를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것이다.

| 구분 | 내용                                                                                    |
|----|---------------------------------------------------------------------------------------|
| 안내 | 안내는 규율이나 지시 사항에 대한 정보를 관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안내를 통하여 관객이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
| 설득 | 설득을 통하여 상호 개인 간의 의사소통 스타일을 존중하면서 관객에게 바라는 바를 전달한다.                                    |
| 제재 | 안내와 설득에 의하여 효율적인 관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종적인 수단인 제재를 사용해야 한다.                              |

## (5) 관객관리의 원칙

공연장에서는 관객관리는 기본적으로 아래에서 제시하는 군중관리의 원칙을 참조하여 계획과 실행에 반영하도록 한다.

| 구분         | 내용                                                                                                                                               |
|------------|--------------------------------------------------------------------------------------------------------------------------------------------------|
| 밀도의 희박화    | 제한된 면적의 특정한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상호간에 충돌현상이 나타나고 혼잡을 야기하게 되므로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피하게 하는 것                                                               |
| 이동의 일정화    | 군중은 현재의 자기 위치와 갈 곳을 잘 몰라 불안감과 초조감을 갖게 되므로 일정 방향을 향해 일정한 속도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킴으로써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것                                      |
| 경쟁적 사태의 해소 | 군중이 질서를 지키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분위기를 느끼게 되면 남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심리상태로 인하여 혼란상태가 발생하므로 안내방송을 통해 질서를 지킴으로써 모두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한다.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하는 것 또한 방법임 |
| 지시의 철저     |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해서 혼잡한 사태와 사고를 예방함                                                                                                            |

## 2) 위기상황 시 서비스 인력의 운영

공연장 및 기관에서는 공연 관련 업무를 교육시킬 책임이 있다. 관객안내와 서비스 그리고 관객 안전을 책임지며, 공연장의 전반적인 내용까지 숙지해야하기 때문에 업무 관련 교육 내용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관객안내원은 업무와 관련된 충분한 교육훈련을 받아 공연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비상대피,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요령, 주차장 안내요령 등의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업무가 관객의 안전 확보라 할 수 있다. 비상체계와 관련한 관객안내원의 구역별 배치도를 작성하고 구역별 책임자를 정하여 각각의 임무와 점검사항을 포함한 진행서나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사고별 조치사항을 계획하고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 (1) 담당구역별 비상업무

관객안내원(안전관리요원)은 비상상황 발생 시 관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담당구역별로 관객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사고 상황을 주시하여 사고 상황 전개나 부상자 발생여부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파악과 사전 실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 배치    | 담당업무                                                                      | 준비사항                       |
|-------|---------------------------------------------------------------------------|----------------------------|
| 검표    | 객석문 오픈, 관객대피유도(비상계단방향), 엘리베이터 사용제한 유도, 화장실 이용 고객 확인, 안내멘트, 모자방 관객주의, 안내멘트 | 유도봉<br>(대피로 방향제시),<br>호루라기 |
| 안내    | 객석문 오픈, 관객대피유도(계단 압사주의, 비상문 방향), 안내멘트, 관객 동요방지, 노약자, 장애인 주의, 안내멘트         | 비상조명등, 서치라이트<br>(대피로 확보)   |
| 물품보관소 | 혹시 대피중간에 물건 찾으러 오는 관객은 차분하게 추후 상황 종료 되면 찾아주겠다고 하고 대피 유도하여 혼선 방지 안내        | 비상약품, 확성기<br>(추가 안내)       |

## (2) 관객안내원 배치 시 주의사항

- ① 공연(배우)의 특별한 퍼포먼스 및 공연 특징 파악
- ② 관객의 성향 파악
- ③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장애물 등, 관객의 동선을 방해하는 요소
- ④ 로비, 무대 및 기타 지역의 통제선 유형

## 3) 관객대피 대응요령

사고 발생 시 관객의 안전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비상체계에 따라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진행한다.

### (1) 관객안내원(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대피를 진행한다.

- ① 위기상황 발생 시 관객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내방송을 하고, 피난계획에 따라 최종대피장소로 관객을 대피시킨다.
- ② 안전 매뉴얼과 상황대처 요령에 따라 관객이 사고 현장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추가사고 방지를 위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한다.
- ③ 사고발생시 피해규모 등 주변 상황을 판단하고 내용을 공유하여 긴급구조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 ④ 관계자는 사고발생 즉시 공연 중지를 결정하고 보고체계에 따라 상황을 보고한 후 추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안전점검을 실시 후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 ⑤ 사고현장에는 통제선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현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2) 긴급구조 및 응급조치 등을 실시한다.

- ① 긴급구조 활동과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 ② 중환자, 긴급환자는 조치 후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 ③ 필요시 인근주민에게 응급상황을 통보하고 경찰에게 주변 통제 강화를 요청한다.

### (3) 규모가 큰 경우 재난대책 본부를 운영한다.

사고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난이라고 판단한다면 필요에 따라 주변기관과 협동하여 재난대책 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위기상황 대처요령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며, 긴급구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한 현장 사고수습·복구 조치를 돕는다.

- ① 민간구조와 전문 인력, 자원봉사자 등의 지휘·통제를 진행한다.
- ② 병원 또는 의료기관에 지원 요청과 현장 응급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사고현장에 통제선을 설치·운영하여 주민접근 통제하고, 응급환자 수송로 확보 등 교통통제 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 ③ 구조·구급차 등 구조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행정기관 관용차량을 동원하여 활용한다.
- ④ 사고현장에서 가까운 병원과 보건소 앰بول런스, 소방구급차와 민간구조단체 구급차량을 긴급 동원하도록 한다.

## 4) 위기상황 비상체계 구축

공연장은 언제든지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항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신속한 위기대처능력과 팀(부서)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중요하다.

### ① 현장 진행팀

사고발생 시 현장을 지휘하고 수습을 진행하는 팀으로서 안전하게 관객 대피 안내를 진행하고 공간별로 발생하는 사고와 응급환자발생 확인 업무 등을 진행한다. 유관기관 출동 시 업무에 협조하고 기타 상황에 대처한다.

### ② 상황 처리팀

사고 전개 상황 공유 및 관객 대피를 책임지는 팀으로서 진행 상황에 따라 관객 대피 여부, 구역별 대피 방법, 안내방송, 관객 통제 및 상황 정리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 ③ 업무 지원팀

상황에 따라 추가 인력 배치, 장비 지원, 시설통제, 응급처치, 응급환자 후송, 유관기관 업무협조 지원 등 사고 전반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 ④ 종합 상황팀

각종 상황 보고, 예산 지원, 상황 처리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 5) 위기상황 협력체계

위기상황 발생 시 필요한 협력체계의 종류와 기관별 확인내용을 파악한다.

## ① 소방서

119 안전신고센터에서는 재해 및 안전에 대한 신고체계를 확립하여 인터넷을 통한 재해 및 안전관련 민원접수를 24시간 받고 있다. 각종 재해는 물론 사고위험성이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접수 시 ‘119 안전신고센터’에서 각 시, 도 종합상황실로 즉시 정보가 전달되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권역별로 긴급 구조를 위한 특수구조대를 설치하여 인근에서 바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 ② 경찰서

공연장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또는 사고 발생위험이 있다면 112로 신고한다. 지역별 경찰청,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등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사고 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범죄 신고는 112, 민원상담은 182를 이용해야 한다.

## ③ 병원

공연장에서 응급상황 발생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 신속하게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보통 사고 발생시 119로 신고하게 되며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된다. 병원에서는 응급 의료진이 의료기술과 장비를 활용하여 치료하며 공연장·기획사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환자 상태에 따라 동행하거나 치료비 관련 문제 등을 상 의한다. 응급처치와 관련한 문의는 응급환자정보센터 1339를 이용한다.

## ④ 공연기획사

공연 기획이나 대관단체는 공연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을 맡기 때문에 응급상황 발생 시 공연장 직원과 함께 관객 안전을 확보하고 상황을 수습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 6) 응급환자 발생 시 조치

최근 10여 년간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인 뇌혈관 질환은 응급처치로 예후가 달라질 수 있어 응급처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심장정지는 초기 응급처치인 기본 심폐소생술과 전문가에 의한 전문 심장소생술을 실시하게 되면 43%의 생존율을 나타낼 수 있으나 10분만 늦어져도 거의 모두가 사망하게 된다. 따라서 응급환자와 처치에 관한 사항들을 숙지하여 사고에 대비하도록 한다.

## ① 응급상황 판단

응급상황을 파악한다.

## ② 환자 신고 및 이송

환자의 상태 파악 후 위급하다고 생각되면 119로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요청하고 환자를 병원

으로 이송한다. 이때 위급 여부가 잘 판단되지 않을 때에도 역시 119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한다. 구급차를 불러 일반 차량으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 구조요원인 119를 요청해야 한다.

### ③ 이송하지 않은 경우

안전한 장소로 환자를 옮긴다. 환자와 구조자 모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소로 환자를 옮긴 다음 위급 상황여부를 판단한다.

### ④ 응급처치

환자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가까운 사람이 응급조치를 취했을 경우 생존율이 높아지므로 주위 사람의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 ⑤ 사고 종료 조치

주변 관객이나 관객안내원이 당황하지 않도록 상황을 정리하고 응급환자의 상태를 알려 안심시킨다. 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여 추후 비슷한 상황 발생 시 대처에 도움이 되도록 보고서나 일지를 작성한다.

## 5 공연장 위기상황 시 피난 방법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피난계획에는 건물의 구조·위치,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하며,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1) 피난계획 수립

피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 ②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현황
- 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재해약자”라 한다)의 현황
- ④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
- ⑤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 ⑥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 2)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아래 사항 외에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①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 ②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 ③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 ④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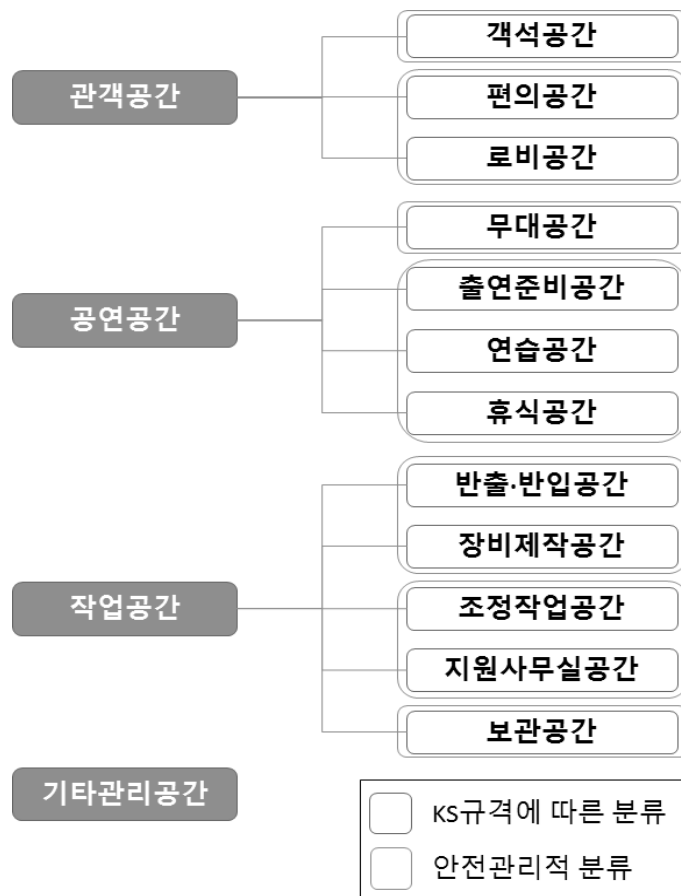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 구분           | 해당범위                                                                                                        |
|--------------|-------------------------------------------------------------------------------------------------------------|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1.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소방대상물<br>2. 연면적 200,000㎡ 이상인 소방대상물                                 |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1. 연면적 15,000㎡ 이상인 소방대상물<br>2.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br>3.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1.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한 대상물<br>2. 옥내 소화전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치한 소방대상물<br>3.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 6 공연장 관객 안전시설 점검

### 1) 공연 관객 이용 시설

공연장은 관객이 이용하는 공간과 이용이 통제되는 공간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이는 공연에 대한 관객의 환상을 지켜줄 뿐 아니라, 안전사고로부터 관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무대 위를 비롯한 작업공간은 다양한 연출을 위한 수많은 기계 장치와 전기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어 정해진 동선이나 안전 수칙을 벗어날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객이 이용 가능한 공간과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의 명확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발간한 「공연장 안전사고 사례집」(2014)에서는 공연장의 공간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 바 있다.



공연장의 안전 관리적 분류의 예<sup>5)</sup>

5) 출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 안전사고 사례집」(2014)

이 분류에 따르면 관객공간은 객석공간과 로비 및 편의공간으로 구분된다. 이는 공연공간이나 작업공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적은 공간이다. 그러나 다수의 관객들이 상시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관객공간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관객공간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객들의 비상 대피 동선으로 활용이 된다. 따라서 관객공간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동시에 비상시 관객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 2) 객석공간 안전시설 점검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공연장을 찾는 관객은 매일, 매회 바뀌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객은 공연장을 처음 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낯선 공간을 이용할 때 관객들은 심리적으로 쉽게 당황하거나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특히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객들은 낯선 곳이기 때문에 더욱 공황상태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객석공간의 안전시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하며,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sup>6)</sup>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1) 소화설비 점검

객석 내의 소화설비로는 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있다. 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의 경우 하우스매니저, 관객안내원, 관객 중 누구든 화재 발생 시 즉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 “투척용 소화용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헤드의 변형, 손상, 탈락, 부식, 누설 등이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헤드 주변을 가리거나 막고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자체 소방 설비 점검을 통해 주기적으로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 구분      | 내용                                                                                    |
|---------|---------------------------------------------------------------------------------------|
| 소화기구    | 연면적 33㎡ 이상인 공연장에는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
| 옥내소화전설비 |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 면적이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갖춰야 한다. |

6) 출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 안전사고 사례집」(2014), 8p

| 구분        | 내용                                                                                                                                                                                                                                                                                                                      |
|-----------|-------------------------------------------------------------------------------------------------------------------------------------------------------------------------------------------------------------------------------------------------------------------------------------------------------------------------|
| 스프링클러설비   | <p>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공연장</li> <li>2. 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공연장</li> <li>3. 2번 항목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공연장</li> </ol> <p>※ 단,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p>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p>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공연장</p> <p>※ 단,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p>                                                                                                                                                                                                  |



스프링클러



소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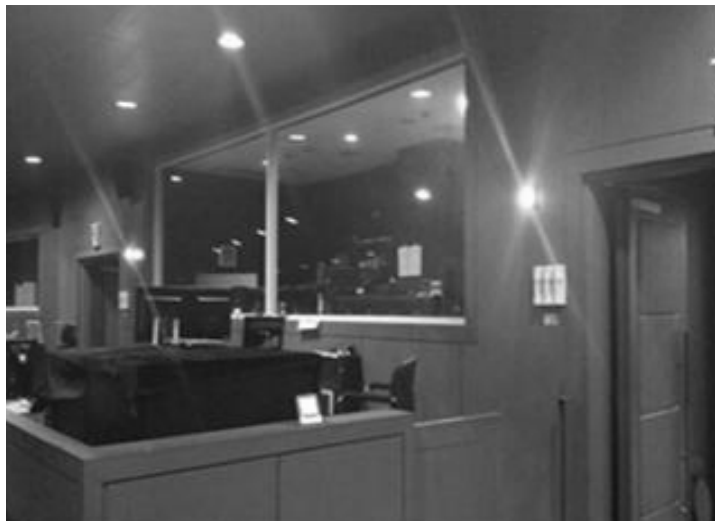


옥내소화전

## (2) 경보설비 점검

경보설비에는 화재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이 있다. 이러한 경보설비 역시 주기적인 소방 설비 점검을 통해 작동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관객 대상으로 비상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설비가 있다면 해당 설비 역시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비상 방송 설비는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 구분       | 내용                                                                                                                                                     |
|----------|--------------------------------------------------------------------------------------------------------------------------------------------------------|
| 비상경보설비   |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 면적이 100㎡ 이상인 공연장<br>※ 단,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와 단독형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 비상방송설비   | 연면적 3,500㎡ 이상인 공연장<br>※ 단,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 누전경보기    | 계약전류용량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공연장<br>※ 단, 아크경보기(전기화재예측시스템) 또는 전기 관련 법령에 따른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 자동화재탐지설비 | 연면적 1,000㎡ 이상인 공연장<br>※ 단,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 시각경보기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모든 공연장                                                                                                                               |
| 가스누설경보기  | 연면적 500㎡ 이상인 공연장                                                                                                                                       |



작동중인 시각경보기

### (3) 피난설비 점검

객석 내에 가장 많이 설치된 설비가 바로 피난설비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의거하여 공연장은 대형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을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다. 각각의 피난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 역시 해당 행정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피난설비의 경우 정전 등의 비상 상황 발생 시 관객들이 대피하는 데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이기 때문에 더욱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휴대용 조명등과 같은 건전지로 작동하는 조명기구 역시 적절한 위치에 온전한 상태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구분    | 내용                                                                                                                                                                                |
|-------|-----------------------------------------------------------------------------------------------------------------------------------------------------------------------------------|
| 피난기구  |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을 제외한 모든 층                                                                                                                                       |
| 피난유도등 | 모든 공연장에 설치되어야 함                                                                                                                                                                   |
| 통로유도등 | 모든 공연장에 설치되어야 함                                                                                                                                                                   |
| 유도표지  | 모든 공연장에 설치되어야 함                                                                                                                                                                   |
| 객석유도등 | 연면적이 300㎡ 이상인 공연장                                                                                                                                                                 |
| 비상조명등 |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br>2. 1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연장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 면적이 450㎡ 이상인 공연장<br>※ 단,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피난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위치 상황에 따라 피난 상징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면제된다.(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6조)



피난구 유도등



객석 게이트 앞 유도등



객석 내 계단 유도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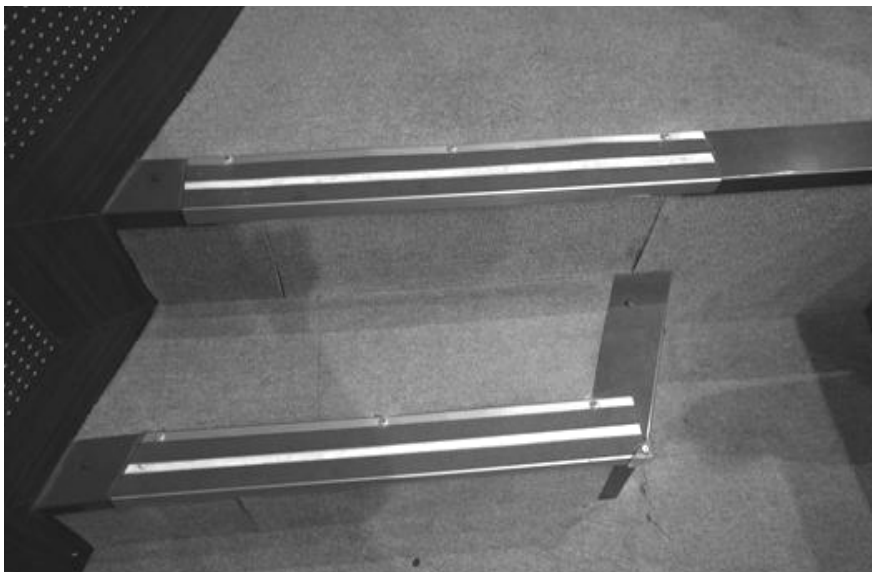
휴대용 비상조명등

#### (4) 계단 및 경사로

대부분의 공연장은 관객의 시각선 확보를 위하여 객석의 높낮이에 차이가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통로는 계단이나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관객들의 대피 동선 중 가장 중요한 곳이다. 계단이나 경사로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계단 모서리 등 부딪혀 다칠 수 있는 모서리 부분에는 모서리 보호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어두운 곳에 계단이 있을 경우 형광봉(케미컬라이트) 또는 소형 조명기를 사용하여 계단에 발을 잘못 디디며 넘어지는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계단 모서리 보호 장치



미끄럼방지 테이프

##### (5) 난간

객석이 2층 이상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준하여 객석 앞에 1.2m 이상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좌석의 배치에 따라 난간이 시야를 가릴 수 있다. 최근 개관하는 공연장들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연이 시작하면 난간의 높이를 낮추고, 인터미션이나 공연 종료 시에는 난간의 높이를 올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들도 있다.



난간

## (6) 방염

| 구분 | 내용                                                                                                                                                                                                                                                                                                                                                                                                                                                                                                                                                                                                                                  |
|----|-------------------------------------------------------------------------------------------------------------------------------------------------------------------------------------------------------------------------------------------------------------------------------------------------------------------------------------------------------------------------------------------------------------------------------------------------------------------------------------------------------------------------------------------------------------------------------------------------------------------------------------|
| 방염 | <p>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공연장에서 아래 물품은 방염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li> <li>나.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li> <li>다. 전시용 합판, 무대용 합판</li> <li>라. 암막, 무대막(스크린 포함)</li> <li>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의자</li> </ul> </li> <li>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종이류,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li> <li>나. 합판인 목재</li> <li>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li> <li>라.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li> </ul> </li> </ol> |

## 3) 로비 및 편의 공간 안전시설 점검

로비는 많은 관객들이 객석에 들어가기 전까지 오랜 시간을 머무는 공간이다. 또한 객석에서 공연을 볼 때와 같이 모두가 한 곳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시 이동하고, 공연 관련 상품을 구입하거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식음료를 먹는 등 다양한 상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이다. 그만큼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 쉬운 공간이기에 안전시설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1) 소화설비 점검

로비 및 편의공간에 있는 소화설비는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있다.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스프링클러설비는 객석공간과 동일한 기준으로 점검한다. 옥내소화전설비는 방수기구 및 소화전의 각 부품들이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정리되어 있어야 하며, 소화전 사용방법이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2) 경보설비 점검

로비에 설치된 화재경보기, 시각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은 주기적인 소방 설비 점검을 통해 작동을 점검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화전과 같이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 및 소화전 표시등은 연쇄작동 여부도 점검한다.



시각경보기



연기감지기

## (3) 피난설비 점검

로비에 설치된 피난설비는 방화문, 제연설비, 방화셔터, 완강기, 공기호흡기,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등이다. 방화문은 잠겨있거나 열림 상태로 고정이 되지 않아야 하며, 속도제어기 및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제연설비 및 방화셔터도 작동 여부를 점검하며, 특히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지점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지 않도록 점검한다. 모든 설비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상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점검해야 한다.



공기호흡기와 공기호흡기 사용방법



로비의 방화문



방화문 제어기



완강기

#### (4) 관객 이동시설

관객 이동시설은 계단, 경사로, 난간,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이 있다. 계단 및 경사로의 경우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관객 안전사고에 대비하며, 난간 및 모서리 부분에는 모서리 보호 장치를 부착한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해야 하며, 기능 작동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공연장 바닥 역시 물기가 있거나 파손이 되어 넘어질 위험이 있는 곳은 없는지 점검하며,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한다.



에스컬레이터

### (5) 관객 출입문

관객들이 이용하는 출입문은 공연장 안쪽으로 들어오는 출입문과 객석 안쪽으로 들어오는 출입문, 기타 비상계단 출입문 등이 있다. 모든 출입문은 비상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피난설비와 동일하게 점검한다. 또한, 강화유리로 되어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는 형태의 출입문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출입문의 경우 관객이 부딪히지 않도록 부착물이나 출입구 표시를 해야 하며, 손가락 끼임 방지 장치의 상태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관객 출입문



부딪힘 주의 안내문

### (6) 비상구 확인

공연장을 구분하는 펜스가 설치된 야외공연장을 제외한 모든 공연장은 충분하고 효율적인 비상구가 계획되어야 한다. 보다 안전한 대피비상구의 요건을 살펴보고 확인해야 한다.

- ① 각 장소별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한다. 비상구가 잠겨있지 않은지를 점검한다.
- ② 비상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적재물건이나 통행에 방해되는 시설이 없는지 확인한다.
- ③ 비상구 표식이나 피난 유도등의 안내가 제대로 안내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④ 관람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확인하고 안전요원과 진행요원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 ⑤ 출연진을 위한 비상구도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7) 기타 로비 설비

그 외에도 로비에는 다양한 설비들이 있다. 조형물이나 포토존 등 설치물이 있을 경우 관객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콘센트 및 멀티탭의 경우 먼지나 과부하로 인한 화재 발생 및 정전의 위험이 있으니 수시로 점검한다. 비상대피로는 잘 보이는 위치에 비치하여 관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외의 각종 안내 POP 및 차단봉 등 로비에 있는 모든 설비들의 안전 관련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한다. F&B(Food & Beverage) 시설이나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에도 안전 관련 위험요소를 항시 점검해야 한다.



로비의 조형물



안내 POP



차단봉

#### 4) 안전사고 발생 요인 파악

##### (1) 안전사고 발생 요인 분석

앞서 살펴본 공연장 안전사고의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안전사고의 요인은 하나의 요인이 독립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불완전한 두 개 이상의 요인이 결합하여 상호간 간섭을 통해 일어나며, 불완전한 요인들이 많아질수록 내재된 사고의 위험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안전사고의 요인은 환경적 요인, 물리적 요인, 인적 요인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환경적 요인

환경적 요인은 크게 지진, 폭우, 폭설, 산사태 등 자연 재해에서부터 공연의 소음, 진동, 관객공간의 온도, 습도, 조도, 분진 등 공연장을 둘러싼 모든 환경적인 요인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물리적으로 일정 수준의 조정은 가능하나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② 물리적 요인

물리적 요인으로는 공연장 시설의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구조적인 요인, 공연장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과 각종 기계장치의 작동·점검·노후화, 안전 및 비상 장치의 결함·작동불량·파손 등이 있다. 물리적인 요인들은 보완 및 통제가 가능하나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

### ③ 인적 요인

인적 요인은 공연장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해당된다. 테러, 관객소요, 방화 등의 돌발행위, 안전교육 및 계획의 미흡과 인식의 부재, 운영 미숙 및 의사소통의 부재, 부주의와 음주, 과로, 태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인적 요인은 단순 개인적인 요인보다는 집단의 구조나 체계, 관습에서 유발되는 것들이 많다.

## (2) 안전사고 발생의 유형별 분류

### ① 안전사고 발생 유형에 따른 분류

환경적, 물리적, 인적 요인에 따른 공연장 안전사고 발생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sup>7)</sup>

〈안전사고 발생 유형에 따른 분류〉

| 분류               | 세부 내용                                                                                  |
|------------------|----------------------------------------------------------------------------------------|
| 상호 간섭            | 공연장 내의 무대기계기구 기동 시 무대기계구간 상호 간섭, 각종 대도구, 각종 케이블 등의 상호 간섭에 의해 발생                        |
| 기자재 낙하           | 조명봉, 장치봉, 그리드, 갤러리 등의 상부공간의 구조물에서 케이블 단선 및 안전장치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기자재, 세트, 부품 등이 무대로 떨어져서 발생 |
| 케이블 단선           | 각종 와이어, 각종 전원 및 신호케이블 등의 단선에 의해 유발되는 사고                                                |
| 공연장 이용자 추락       | 세트, 사다리, 갤러리, 그리드 등 높은 곳에서 무대바닥으로 추락하여 일어나는 사고                                         |
| 무대 및 객석 화재       | 공연장 내의 시설물이나 무대장치 등에서 일어나는 화재 사고                                                       |
| 무대기계기구 제어불능      | 네트워크 카드 등의 불량으로 신호전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                                                |
| 무대기계기구 동작불량      | 콘솔에서 보내진 명령과 다르게 기기들이 동작할 때 발생                                                         |
| 무대기계기구 운전자 조작 과실 | 무대기계기구 운전자의 장비 이해 부족, 무리한 운용, 태만 등으로 인해 발생                                             |
| 무대기계기구 노후화       | 무대기계기구, 각종 장비들이 해당 한계수명을 넘어서 사용되다 발생                                                   |
| 붕괴               | 공연장 시공 시 부실공사, 장치 설치 시 하중설계 오류, 빗물누수 등으로 인해 발생                                         |
| 전도               | 사람이나 세트가 천재지변이나 무대기계기구의 불필요한 움직임 등으로 인해 발생                                             |
| 공연장 전문 인력 부재     | 공연장 상주 운용 인력을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로 배치하여 발생                                                    |
| 기획력 부실           | 주최측이나 기획사측의 기획력 부실로 인해 발생                                                              |

7) 출처 : 김중훈, 「공연장 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2014, (P.46~47)

| 분류            | 세부 내용                                                                     |
|---------------|---------------------------------------------------------------------------|
| 객석 난동 및 무대 난입 | 하우스매니저와 관객안내원의 관객성향 파악 미흡, 객석과 무대 사이의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펜스 등 안전장치 미설치 등으로 인해 발생 |

## ② 안전사고 발생 시점에 따른 분류

공연장의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sup>8)</sup>

### 〈안전사고 발생 시점에 따른 분류〉

| 분류        | 세부 내용                                                                                                                                           |
|-----------|-------------------------------------------------------------------------------------------------------------------------------------------------|
| 관리 및 점검 중 | 공연장이 휴관기간이거나 관계자들이 퇴근 후 무대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이때 육안 점검 혹은 간단한 구동점검을 통하여 관리하는 시점이다.                                                                 |
| 설치 및 준비 중 | 공연을 위하여 무대장치들을 반입하고 설치하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행동을 통하여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다. 또한 관객의 경우 객석에 입장하기 직전 공연장에 방문하여 주차 및 입장을 위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포함한다. |
| 공연 중      | 관객이 객석에 착석하기 위해 전실에서 객석 문을 열면서 공연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으며, 배우는 공연을 위하여 무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연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
| 해체 중      | 공연이 끝나고 배우가 무대를 내려가는 순간부터 공연을 위한 무대장치들을 모두 철거하고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끝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또한 관객은 객석을 나서면서 공연장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해체 중인 시점이다.                      |
| 보수 중      | 관리 및 점검 중 발견한 문제점을 도구 및 위험기계·기구를 이용하여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시점이다.                                                                                 |

## ③ 안전사고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

국내 공연장에서 주로 발생한 안전사고들을 분석하면 안전사고 발생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sup>9)</sup>

### 〈안전사고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

| 분류           | 세부 내용                                                             |
|--------------|-------------------------------------------------------------------|
| 공연장 건축단계의 원인 | 공연장의 외관, 수용인원 등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br>안전시설에 대하여 소극적인 예산 투입               |
| 공연장 운영단계의 원인 | 예산절감을 위한 운영 인력 최소화<br>하우스매니저, 무대기술 전문 인력의 부족<br>소극적 시설 투자에 따른 노후화 |
| 공연제작 단계의 원인  | 전문지식습득 부족 및 운용능력 부족과 태만<br>안전에 대한 인식 및 교육의 미비                     |

8) 출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 안전사고 사례집」(2014), (12p)

9) 출처 : 김중훈, 「공연장 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2014, (p.47~50)

| 분류                             | 세부 내용                                                                        |
|--------------------------------|------------------------------------------------------------------------------|
| 공연장 유지단계의 원인                   | 유지관리 미숙으로 인한 장비의 수명 감소, 파손<br>고장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2차사고 유발<br>장비점검 미실시로 인한 장비 운용 불가 |
| 공연장 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및 대책 마련 단계의 원인 | 사고발생 사실의 외부 유출로 인한 당해 공연장의 이미지 훼손을<br>우려한 사고 분석 및 사례 수집 미흡<br>안전 불감증         |

## 5) 안전관리 물품 점검

### (1) 소화기

#### ①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기

- 일반화재(A급 화재) :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 유류화재(B급 화재) :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 전기화재(C급 화재) :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 주방화재(K급 화재) :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 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 ②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sup>10)</sup>

| 소화약제<br>구분<br><br>적용대상 | 가스            |                | 분말     |              | 액체            |              |             |       |              | 기타                |          |                        |          |
|------------------------|---------------|----------------|--------|--------------|---------------|--------------|-------------|-------|--------------|-------------------|----------|------------------------|----------|
|                        | 이산화탄소<br>소화약제 | 할로겐화합물<br>소화약제 | 청정소화약제 | 인산염류<br>소화약제 | 중탄산염류<br>소화약제 | 산알칼리<br>소화약제 | 강화액<br>소화약제 | 포소화약제 | 물·침윤<br>소화약제 | 고체에<br>어로<br>졸화합물 | 마른<br>모래 | 팽창<br>질석·<br>팽창<br>진주암 | 그밖의<br>것 |
| 일반화재 (A급 화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류화재 (B급 화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화재 (C급 화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방화재 (K급 화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화재 종류별 적응성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제4조제1항제1호 관련)

10) 출처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 1]

### ③ 소화기의 종류

#### － 분말소화기

- 화재 진압 능력이 뛰어나고 가격이 싸다.
- 사용이 간편하며 모든 화재에 적용이 가능하다.
- 한 번 사용하면 재사용이 어렵고 사용 후의 약재가루를 청소해야 한다.

#### － 하론소화기

- 가스를 이용하는 소화기로 가격이 비싸다.
- 장기보관이 가능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 인체에 유해하다.

#### － 청정소화기

- 하론소화기의 대체소화기로 가스를 이용하는 소화기이다.
- 화재진압 능력이 뛰어나다.
- 가격이 비싸다.



청정소화기

#### － CO<sub>2</sub>소화기

- 냉각된 CO<sub>2</sub> 가스가 불과 접촉해 산소를 밀어내는 형태의 소화기이다.
- 사용 후 재충전이 쉽고 비용이 적게 든다.
- 무게가 무겁고 배송이 어렵다.
- 장기분사 시 동상 등의 손상이 생길 수 있다.

– 강화액 소화기

- 작은 용량의 소화기로 사용이 편리하여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 액체로 되어 있어 굳지 않고 장기보관이 가능하다.
- 금액이 저렴하지만 소화력이 떨어지며 전기화재에는 사용할 수 없다.

## (2) 소화기 점검

### ① 설치 장소 및 개수

– 소화기가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여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

– 보행거리 기준 적정 설치여부

소형의 경우에 20m, 대형의 경우에는 30m를 기준으로 비치해야 한다.

(공연장바닥면적/50)≤비치된 소화기의 능력단위 합



소화기 및 소화기 표지판



축압식 소화기의 지시 압력치

## ② 외관점검

- 소화기 용기가 변형 · 손상 · 부식된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 안전핀은 고정되어 있으며 견고한지 확인한다.

## ③ 지시압력계

- 축압식 소화기의 경우 지시압력치의 눈금이 초록색(적정)에 위치하는지 확인한다.
- 가압식 소화기(압력계 미부착)가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노후 시 폐기 및 축압식 소화기로 교체한다.

## (3) 소화전 점검

- ① 소화전의 위치표시등은 손상, 탈락, 깨지지 않아야 하며 항시 점등되어 있어야 한다.
- ② 소화전의 펌프 기동표시등은 손상, 탈락, 깨지지 않아야 하며 펌프 기동 시 점등되어야 한다.
- ③ 수원은 정량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수위계 확인)
- ④ 소화전함, 펌프, 전동기 주위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 ⑤ 소화호스, 노즐, 배관, 관부속, 밸브류 등이 변형, 손상,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 ⑥ 결합부 등에서 누수가 없어야 한다.
- ⑦ 각 밸브의 개폐조작이 용이해야 한다.
- ⑧ 수동밸브의 경우 개폐상태를 알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 ⑨ 조작방법 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소화기 점검



올바른 소화전 설치의 예



욕내 소화전 점검

## (4) 경보시설 점검

- ① 구조에 맞는 경보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 ② 경보시설이 정상적으로 화재를 감지하는지 기능 여부를 확인한다.
- ③ 발신기의 상단에 표시등은 점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④ 수신기 부근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 ⑤ 누전경보기 수신기는 점검이 용이한지 확인한다.

## (5) 비상 안전 물품의 구성 및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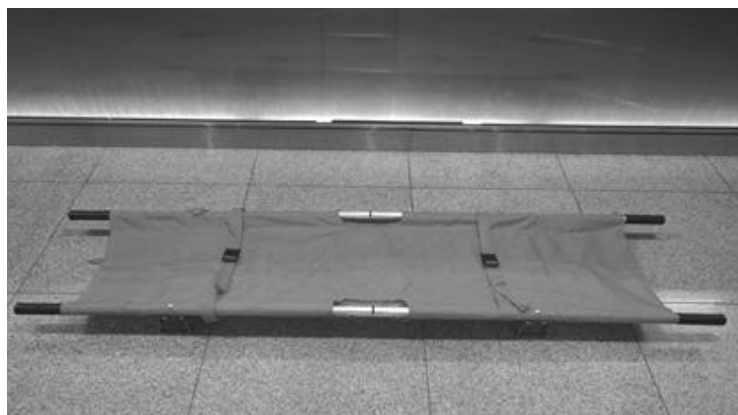
| 구비물품                     | 활용방법                                                                                   | 점검 방법                           |
|--------------------------|----------------------------------------------------------------------------------------|---------------------------------|
| 소방포                      | 화재 발생 장소에서 소방포 보자기를 꺼내 불에 씌우면 불이 쉽게 꺼진다.                                               | 외관 상태 점검<br>즉시 운용 가능 여부 점검      |
| 들것                       | 응급환자 운반 시 환자의 발을 앞쪽으로 하고 운반한다.<br>(계단 등의 높은 곳 이동 시 머리를 앞으로 운반)                         | 외관 상태 점검<br>즉시 운용 가능 여부 점검      |
| 메가폰<br>확성기               | 관객 대피 안내 시 전자메가폰 등을 이용하여 안심시키고<br>피난통로 또는 비상구의 위치 등을 정확히 알려준다.                         | 작동 여부 점검                        |
| 화재용<br>방독면               | ① 마스크의 전면과 안쪽에 고정된 마개를 분리한다.<br>② 방독면을 착용하고 얼굴에 맞게 끈을 뒤로 당겨 착용<br>상태를 확인한 후 신속하게 대피한다. | 외관 상태 점검<br>구성품 수량 확인           |
| 전자 신호봉                   | 대피로를 확보한 후 신호봉을 좌우로 흔들며 큰 소리로<br>신속하고 적절하게 피난유도를 진행한다.                                 | 작동 상태 점검<br>즉시 운용 가능 여부 점검      |
| 휴대용<br>소화기               | 화재가 난 곳에 2~3m 거리에서 분사한다.                                                               | 외관 상태 점검                        |
| 휴대용산소<br>호흡기(캔)<br>648ml | 기관지 천식환자, 비상호흡 산소공급 시 마스크를 캔에<br>끼워 입에 대고 숨을 들이마실 때 버튼을 눌러<br>약 10~15회 흡입한다.           | 외관 상태 점검                        |
| 서치라이트                    | 비상시에 전등으로 사용. 상시 전원을 연결하여 충전시킨<br>후 정전이 발생될 때 자동으로 점등되어 비상통로로 유도<br>하는 역할을 한다.         | 충전 및 작동 상태 점검<br>즉시 운용 가능 여부 점검 |



소방포



들것



들것 펼친 모습



전자 신호봉



전자 신호봉 켜 모습



확성기



휴대용 소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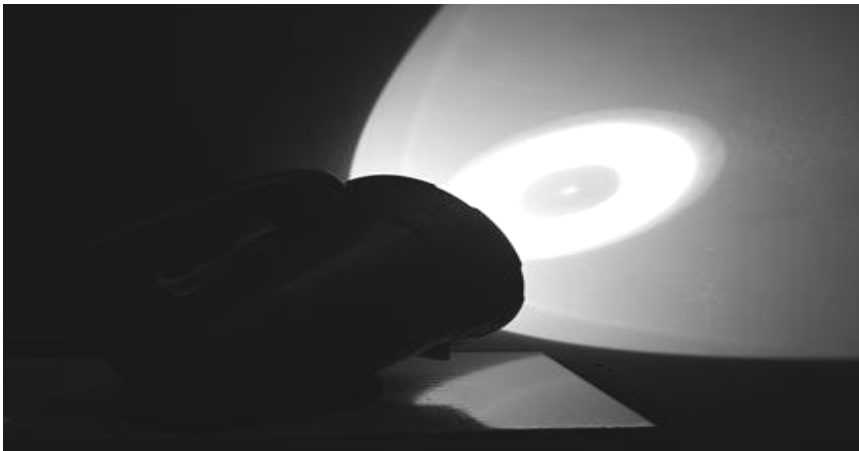
휴대용 산소호흡기 (캔)



화재용 방독면



서치라이트



서치라이트 켜 모습



비상 안전 물품함



비상 안전 물품함 내부

## (6) 비상물품·비상시설 점검표 작성

비상물품 및 비상시설에 대한 점검표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서식1] 비상물품·비상시설 시설점검표 참조')

## 6) 공연장 관객 대피 동선 점검 방법

### (1) 공연장 관객 동선 관련 소방법

공연장의 관객 동선은 관객들이 공연을 관람할 때 뿐만 아니라 비상시 대피할 때에도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비상 대피로로 사용하는 출입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통로 및 출입문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공연의 특성에 따라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하는 경우, 무대가 객석 앞으로 돌출되어 이동 동선을 막는 경우 등 공연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하우스매니저는 무대감독과 협의하여 최대한 관객 동선을 막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해야 하고, 이에 따른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참고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2) 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관객 대피 동선 확보 방법

공연장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관객의 안전이 중요하고 그중 관객의 대피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피난 관련 법규는 구조물의 재료에 따라 규제되기 때문에 대규모 건물의 경우 용도의 특성에 따른 관객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 관객 대피 동선 확보에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여 안전한 대피동선을 확보하도록 한다.

- ① 공연장 규모에 따라 관객 대피 동선 확보에 필요한 내용을 파악한다.

〈공연장 관객 대피 동선 확보를 위한 사전 숙지사항〉

- 공연장 내 경보 및 대피안내 방식
-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현황
- 재해약자의 현황
- 각 공간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
-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 피난시설, 소방시설, 그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항

－ 대극장 구조 파악 및 관객대피로

대극장(1,000석 이상)을 이용하는 관객은 보이는 공간보다 보이지 않는 공간이 더 커 공간에 대한 이해가 적을 수밖에 없다. 대극장은 피난동선이 복잡하고 관객 관리도 쉽지 않아 대피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린다. 따라서 서비스 인력 등이 사전에 피난로에 대한 확실한 인지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안전한 피난을 위하여 구역별 인원 파악과 그에 따른 피난 통로 확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중극장 구조의 관객 대피

국내에는 중극장(500석 이상) 규모의 공연장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이 규모는 객석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안전상태가 아니라면 사고 발생 확인이 육안으로도 가능하다. 무대와 객석의 거리가 멀지 않고 객석 출입문 또한 많지 않아 대피로를 계획하기 용이하다. 다만 모든 관객은 공연장이 익숙하지 않고 공간에 대해 일부터 인지하려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여 대피동선을 확보하도록 한다.

－ 소극장 구조의 관객대피

소극장(300석 미만)은 이전에는 등록대상이 아니었고 안전진단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았지만 2016년 5월 공연법이 개정되어 안전관리 대상이 되었다. 복합공연장에 속해있는 소극장의 경우 시설과 안전관리가 잘되어 있지만, 인원 부족 등의 이유로 대학로나 대학의 부속시설 같은 경우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관객의 안전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계획 및 준비가 필요하다.

## ② 관객에 대해 파악하여 공연장 관객 대피 동선 확보요건 내용을 확인한다.

－ 관객에 대해 파악한다.

공연별 관객의 연령대, 관람형태, 관객의 예상행동, 군중심리, 예상반응 등의 내용을 사전에 준비하여 관객 대피 동선을 파악한다.

－ 재해약자의 안내 방안을 마련한다.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보호가 필요한 관객들은 응급상황 발생 시 우선 대피가 필요하며 이들의 특성에 맞는 대피로와 대피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 무질서상황 대비 방안을 마련한다.

사고 발생 상황에 따라 관객 스스로 본인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 관객 성향에

따라 안내에 잘 따르는 관객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공황상태에 빠지면 주변 관객들까지 그 분위기에 휩쓸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관객대피요원은 주의 깊은 관찰과 침착한 안내가 필요하며, 적절한 시점에 비상용 안내멘트를 방송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다.

– 안내 인력 사전 준비 방안을 마련한다.

비상 상황 안내에 관한 내용 전달, 다양한 사고별 위험 요소에 대해 대처 방법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에 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

### ③ 공연장 관객 대피 동선 안내방법에 대해 파악한다.

– 안내표시를 부착·설치한다.

건물 내 시설위치, 대피도, 비상구, 최종대피장소 등을 안내하는 표지를 부착 및 설치한다.

– 경보·안내방송 시스템 구축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방송을 실시한다.

비상상황 발생 시 이를 알리고 외부로 안전한 대피를 안내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화재 발생 시 화재감지기나 화재경보장치가 작동되지만 기타 사고 발생 시 경보장치가 없어 즉각적인 안내가 어렵다. 안내방송시스템을 통해 관객에게 사고여부와 대피를 알릴 수 있도록 현장에 맞는 시스템 구축과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

#### 【참고사항】 공연 전 비상 대피 방법에 대한 안내 권장사항

9.11 테러 당일 아침 WTC의 모건스탠리에 주식 중개 강좌를 들으러 방문한 250명이 모두 살아남았는데, 이 당시 강의를 듣기 전 강의실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계단이 어디인지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고 한다. 공연 전 비상 대피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은 비상상황 시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1. 공연장에서는 공연 시작 전에 관객에게 현 위치에서 피난경로를 음성안내 또는 화면 안내를 통해 피난경로를 주지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특히 관리자가 비교적 적은 소규모 공연자의 경우에는 관객들이 직접 비상구를 열고 대피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 전에 관객들에게 비상 경로 및 비상 시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것을 권장한다.

– 안내 인력을 교육·배치한다.

관객을 위해 공연장에 배치되는 인력은 하우스매니저와 관객안내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공연장 서비스를 담당하기도 하지만 관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객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서 이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상황별 대처와 행동요령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 (3) 공연장 관객 대피 동선의 확보

#### ①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관객 대피 동선을 확보한다.

공연장의 구조와 공연의 특성, 관객의 성향에 따른 행동요령 등을 참고하여 관객 대피 동선을 확보한다.

#### ② 관객 대피 동선 확보에 저해되는 요인을 파악한다.

- 실내 예비 조명
-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비상문
- 적재물로 인한 비상 통로 제한



소화전 앞 적재물



로비의 적재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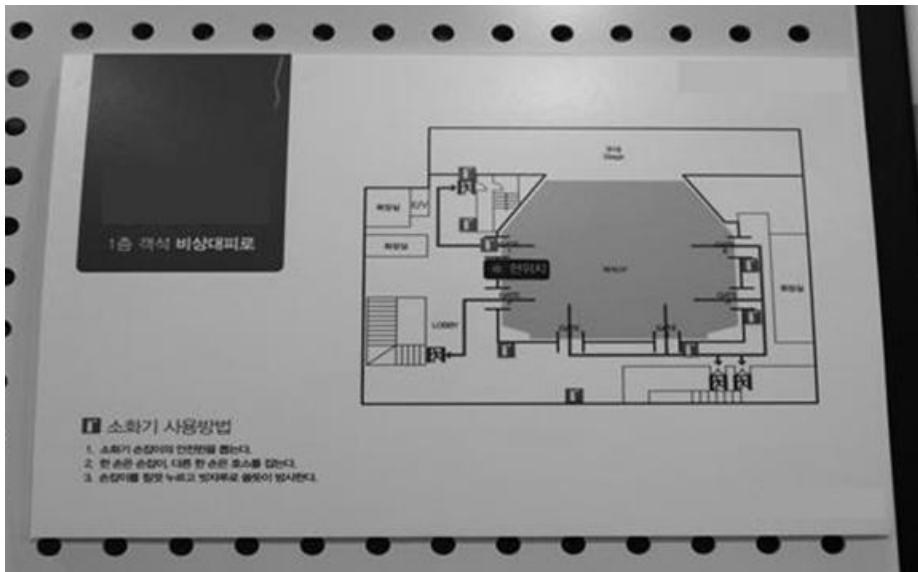
- 대피동선 미안내
- 최종대피장소 준비 상태

#### 【참고사항】 공연장 비상대피로 확보 권장사항

1. 매우 좁은 공간 (분장실이나 출연자 대기실 등) 또는 발코니, 중층구조에는 하나의 피난로가 설정될 수도 있으나, 수용인원이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별도 피난로를 갖춘다.
2. 공연과 관련된 무대 하부는 두 개 이상의 출입구를 가져야 하고, 그 중 하나는 무대를 통과하지 않고 공연장을 빠져나갈 수 있는 출입구여야 한다.
3. 두 개의 출입구는 양쪽이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다른 방향에 위치해야 한다.
4. 피난로는 위험구역을 지나도록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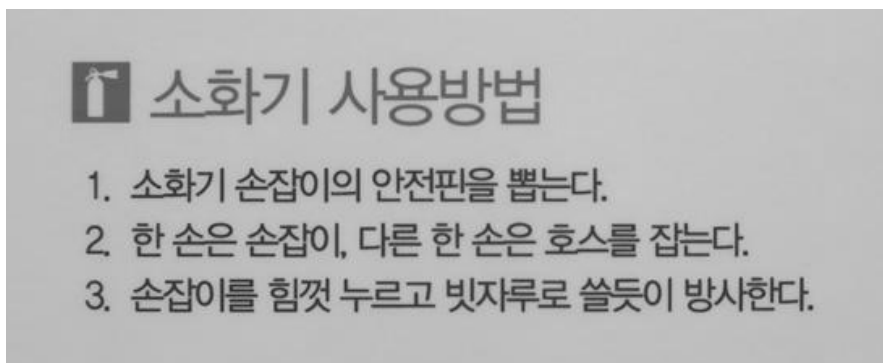
### ③ 관객대피도를 제작한다.

대피도를 제작할 때 관리자의 입장에서 만들다 보면 관객들의 대피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객 중심의 대피도를 제작해야 한다. 대피도는 쉽게 파손·변형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상대피로

- 비상구
- 현재 위치
- 대피 동선·방향
- 비상계단
- 대피방법
- 소화기 위치
- 소화기·소화전 사용방법



로비에 게시되어 있는 소화기 사용방법

## ④ 최종 대피장소를 계획한다.

비상상황 발생 시 관객이 대피하여 최종 집결하는 장소를 말한다.

- 장소 섭외 시 주의사항을 확인한다.
- 대피인원에 맞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현장 주변의 시설을 파악하여 위험을 차단한다.
- 환자 대기 공간, 안내 공간 등을 확보한다.
- 비상전력 여부 - 조명 유지 시간을 확인한다.
- 최종대피장소에 필요한 물품을 확인한다.
- 비상 구호물품 - 산소공급기, 구급상자, 담요, 간식 등
- 전기, 통신용품 - 랜턴, 휴대용 비상등, 무전기 등
- 안내방송물품 - 확성기, 휴대용 마이크

## (4) 관객 대피 동선 검토

① 관객 대피 동선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 관객 대피 동선을 검토한다.

- 공연장의 구조, 수용인원, 관객 특성
- 대피동선의 수, 방향, 거리
- 피난계단의 형태



옥외 피난계단

- 출구의 위치, 방향
- 대피동선 표시, 조명

② 상황별 관객 대피 동선을 검토한다.

- 화재·정전 발생 시
- 무대사고 발생 시
- 객석사고 발생 시
- 로비사고 발생 시
- 사각지대 사고 발생 시

③ 관객 대피 동선 점검표를 작성한다.

【참고사항】 공연장 비상대피로 관리 권고사항

1. 비상대피로에 있는 문은 자물쇠나 체인 등으로 잠겨있지 않아야 한다.
2. 공연장 내 비상대피로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므로, 무대세트, 소품, 의상 등이 비상대피로에 비치되어 있으면 안 된다.
3. 반사에 의해 출입구나 피난로를 찾는 데 시각적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리, 거울, 마감재 사용에 주의한다. 특히 거울의 경우 혼동을 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5) 공연장 설치물 위치 결정

공연장의 자체 설치물이 아닌 경우 기획사와의 협의가 중요하다. 공연장마다 로비의 구조가 다르고 바닥과 벽면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로비계획서를 사전에 받아 협의하도록 하고 설치계획서를 따로 요청하여 설치 시 반드시 확인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① 포토존 설치에 관하여 협의한다.

공연 전·후 관객들이 기념사진을 남기는 공간이므로 항상 붐비며 줄을 서있는 경우가 많다. 질서 있게 포토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펜스 설치나 주의사항을 공지하는 것이 좋다.

② MD판매대 설치에 관하여 협의한다.

기획사에서 요구하는 MD판매대는 공연장 로비 중 관객의 눈에 잘 띄고 조명이 밝은 곳에 위치하기를 원한다. 이런 공간은 어떤 설치물을 놓아도 관객의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포토존이나 MD판매대 등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때 기획사와의 협의가 중요하며 효율적으로 공간을 배치해야 스태프와 관객 동선에 무리가 없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MD판매대와 객석출입문이 마주하고 있어 구매자 대기 줄이 길어지면 입구를 막을 수 있으므로 가림막이나 차단봉 등을 활용하여 공간을 구분해야 한다.
- 미관상 MD물품박스나 기획사 물품은 로비에 쌓아두지 않도록 한다.
- 매표소나 기타 설치물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가급적 떨어져서 배치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배치한다.



MD 판매대

### ③ 배너 설치를 협의한다.

부대시설 관련사항이나 관람안내 등을 위해 객석과 가까운 곳 혹은 시설물(매표소·카페) 주변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외부에 거치하는 경우 배너가 넘어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후 관리도 중요하다. 관객이 배너 거치대에 발이 걸려 넘어지거나 기대서지 않도록 안내 문구를 부착하는 것이 좋다.



로비에 설치된 배너

④ 이동형 휴게의자 설치를 협의한다.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관객용 휴게공간은 관객의 수에 비해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상황에 따라 수시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은 1인용보다는 3인용의 장의자를 선택하고 한 개보다는 여러 개를 이어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관객의 입장에서 배치하여 관람 전 관객이 보다 편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일회적 공간 설치를 협의한다.

전관행사나 이벤트 진행시 설치되는 공간은 임시 구조가 많다. 사전 협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전달해야 한다.

- 설치구조물이 바닥을 훼손하지 않도록 설치계획서를 사전 요청한다.
- 높이가 너무 높아 다른 시설물과 부딪히지 않도록 설치한다.
- 진행요원의 인원과 공간 활용 내용 등을 자세히 공유한다.
- 전기 배선을 잘 확인하여 설치하고 라인작업을 잘 마무리하여 관객 이동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6) 관객안내원 테이블 및 의자의 배치

관객안내원의 위치상 객석 문을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테이블을 배치하도록 하고 관객의 이동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가급적 벽과 가까이 배치하도록 한다. 의자는 접이식을 사용하여 테이블과 함께 벽 쪽으로 배치하고 관객 입장이 종료 된 후에 꺼내서 착석하도록 한다.



관객안내원 테이블 및 의자

## (7) 안전펜스 설치

안전펜스는 공간구별용과 압력방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공간구별용 안전펜스는 차등화 된 객석을 구분하여 관객의 무분별한 이동을 통제하고 무대와 객석을 구분짓기도 하며 입·퇴장 통로를 구축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관객 이동을 관리할 수 있다. 압력방지 안전펜스는 관객이 무대로 접근을 시도하며 발생하는 과밀현상을 통제하여 압사사고 등을 대비하는 용도로 객석과 무대 사이에 위치한다.

### ① 무대전면 차단용 안전펜스

공연장 외 공연의 공간에서 안전펜스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용도는 관객의 무대 쪽 진입을 차단하는 무대 전면 차단용으로 설치되는 안전펜스다.

### ② 공간구분과 관객유도를 위한 안전펜스

- 객석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 설치하여 관객의 무분별한 이동을 통제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객석 중앙 뒷부분에 공연을 진행하는 스태프의 콘솔 등의 장비가 모여 있는 공간은 관객과 접촉이 용이한 위치이므로 관객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통제해야 한다.
- 야외공연장은 관객 대기 공간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관객의 매표나 입장을 위한 줄서기에 필요한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 야외공연장 안전펜스 설치계획은 관객의 규모와 입장방식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 【참고사항】 안전펜스 선택 시 권장사항

- ① 안전펜스의 종류는 공연현장의 복잡성과 과밀도, 현장의 특징과 공연의 특성 등이 고려 반영된 종류로 선택해야 한다.
- ② 안전펜스의 설치와 유형은 지면조건 및 지형, 날씨 등을 고려하여 정해져야 한다.
- ③ 안전펜스 종류는 관객의 특징과 규모를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 ④ 철망형태의 안전펜스는 균중압력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므로 단지 구역을 나누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 ⑤ 모든 안전펜스는 풍하중 또는 균중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⑥ 펜스의 패널을 연결하는 부속이 견고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⑦ 펜스를 지지해주는 버팀 설비는 제한구역 안쪽으로 설치하여 외부 위험 요인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 ⑧ 또한 버팀 설비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패널의 연결부위에 위치해야 하중과 바람의 지탱에 효과적이다.
- ⑨ 안전펜스 패널의 표면의 찢어졌거나 모서리 등이 날카로우면 부상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⑩ 안전펜스 설치작업은 전문업체의 전문가에 의해 설치되어야 한다.

#### (8) 난간 설치

난간은 관객이 이동하고 관람하는 모든 구역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한다. 임의로 설치된 계단식 객석의 주변과 이층 등으로 이동하는 계단 등의 위치에 설치한다.

#### (9) 공연장비와의 간섭차단 설비 설치

객석에 설치된 공연장비와의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관객의 안전과 장비의 파손으로 인한 공연장치의 초래를 예방하는 설비로 장비의 설치위치와 종류에 따라 적합한 통제설비를 설치한다.

공연 관객 위기 대응 및  
관리 매뉴얼



## 제5장 공연 관객 안전훈련 방법

1. 대피훈련 방법
2. 대피 시나리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밀집시설인 공연장에서의 사고는 갑작스레 찾아온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발생에 능숙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이번 장에서는 안전사고를 미리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해 배워본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고 발생된 상황이라면 2차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연법 시행령 별표 1의2] 안전교육 내용

| 구분       | 규모                | 안전관리비    | 안전관리조직   | 안전교육                             |
|----------|-------------------|----------|----------|----------------------------------|
| 공연장      | 500석 미만           | 의무 사항 아님 | 의무 사항 아님 | 공연자 안전교육만 해당                     |
|          | 500석 이상           | 의무       | 의무       |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공연자 안전교육 실시 의무 |
| 공연장 외 공연 |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 | 의무 사항 아님 | 의무 사항 아님 | 의무 사항 아님                         |
|          |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 | 의무       | 의무       |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공연자 안전교육 실시 의무 |

## 1 대피훈련 방법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정해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관리소홀, 안전수칙을 무시한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비롯된다.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기에 안전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며, 항상 겪어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환경을 만들어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훈련이란 갑자기 발생하는 여러 위기상황에 발 빠른 대응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다. 훈련을 시행하기 전 여러 유형의 안전사고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 유형별 안전사고에 따라 실제 공연장 운용에 적합 유·무와 관객 안전에 대한 현장대응력을 중점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공연법 제11조의4에 따라 공연장을 이용하는 대관단체, 근무자 등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해당 내용에는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의 안전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참고자료

- 무대시설과 작업순서,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또는 공연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공연 시 유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

### 1) 공연장 안전 매뉴얼 구축

공연법 시행령 제9조를 참고하여 매뉴얼을 작성한다. 구축된 안전 매뉴얼을 토대로 극장 상황에 따른 대피훈련시나리오 작성이 가능하다. 관련법령에 따라 하단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연장의 운영방식, 운영체계에 따라 내용은 상이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17.〉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1) 매뉴얼 필수 작성 항목(공통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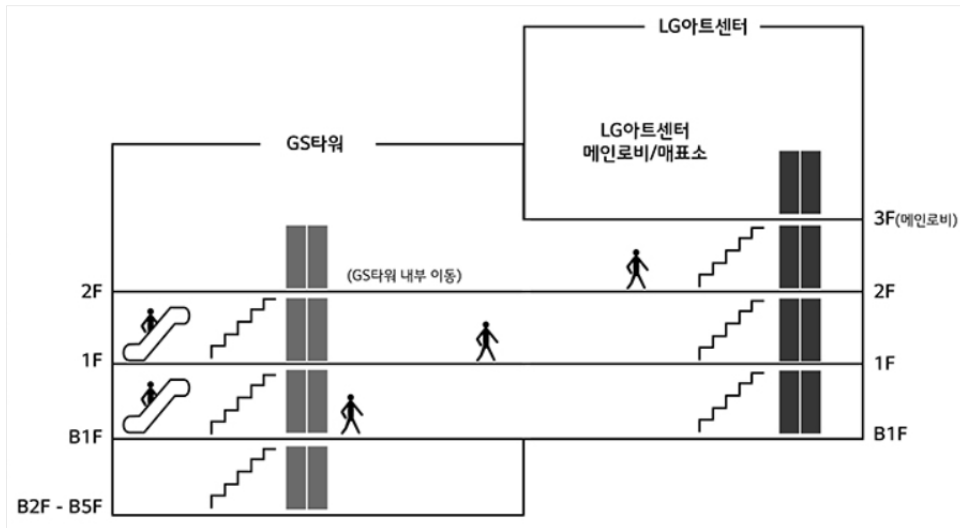
매뉴얼은 교본, 안내서, 필요방침, 계획 등이 들어간 사무계획서이다. 공연장 운영에 업무별 작업 내용, 행동령 등은 매뉴얼을 처음 보는 직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급하게 이용되는 매뉴얼의 내용일수록 빠른 이해력을 돕기 위해 이미지와 표 등을 이용하여 기억에 남도록 하면 좋다.

##### ① 공연장 구조

－ 공연장 위치 및 층별 좌석배치도

공연장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에 대해 평면, 입체 등 여러 표현법을 통한 이미지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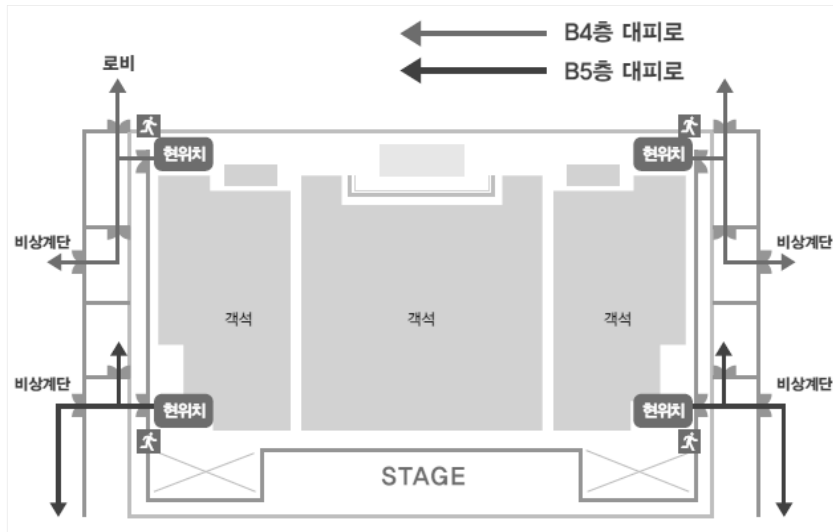
공연장 구조 안내도



공연장 위치안내

## – 비상대피 안내도

안전사고 발생 시 가장 안전하고 빠르며 짧은 이동 동선을 안내하는 안내도로 반드시 비상구 표시와 함께 이동 동선이 명확히 보여야 한다.



객석 비상대피 안내도

## ② 조직도 및 업무분담

조직도를 토대로 분리되어진 팀별 업무에 따라 실제 안전사고 발생 시 시행되어야 할 업무분장을 도식화한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상황 발생 시 체계적이고 명확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작성 시 연락처는 반드시 기입되어야 하며 빠른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한다. 이는 공연장별 조직구성이 상이하므로 예시를 통해 알아보고 각 공연장 규모에 따라 양식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 – 공연장 조직도의 예

운영되고 있는 공연장의 형태나 부서편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하단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단, 작성 시 연락이 빠르게 될 수 있는 번호를 노출하는 것이 좋다. 항시 발생하는 상황이 아닌 만큼 팀별 임무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분담지침서를 작성하여 근무지 곳곳에서 볼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총괄 책임자                    |  |
|---------------------------|--|
| 팀장 000<br>(010-0000-0000) |  |

| 무대기술부 |     |
|-------|-----|
| 이름    | 연락처 |
|       |     |
|       |     |
|       |     |

| 공연지원팀 |     |
|-------|-----|
| 이름    | 연락처 |
|       |     |
|       |     |
|       |     |

| 경영지원부 |     |
|-------|-----|
| 이름    | 연락처 |
|       |     |
|       |     |
|       |     |

## - 상황 발생 시 임무와 역할의 예

| 공연장 무대기술팀                                                                                                                     | 공연장 하우스팀                                                                                                                                                    | 대관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 발생 시 방재실 상황통보</li> <li>• 공연장 전층 화재 상황 전파</li> <li>• 소방시설물 작동 등 화재 초기진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객 탈출을 목적으로 비상출입구 개방 및 탈출구 확보</li> <li>• 공연장 무대기술팀과 상황 공유 후 관객 대피조치</li> <li>• 객석 및 로비 내 잔류인원 확인 및 상황보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 및 스태프 1차 대피조치</li> <li>• 공연장 무대기술팀과 화재초기진압</li> <li>• 음향팀 대피방송 지시</li> <li>• 조명팀 작업등 ON지시</li> </ul> |

| 구분     | 임무와 역할                                                                                                                                                  |
|--------|---------------------------------------------------------------------------------------------------------------------------------------------------------|
| 무대 운영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대 관련사고 시 취소여부 결정</li> <li>- 무대 관련사고 시 종괄업무 수행</li> <li>- 공연취소 및 지연 시 협력</li> </ul>                            |
| 공연 사업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객 관련 위기관리 총괄</li> <li>- 관객 안전 확보 및 현장사고 수습 진행</li> <li>- 비상연락망 가동</li> <li>- 사고 종료 시 관객의 원활한 이동 안내</li> </ul> |
| 경영 지원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연락망 가동</li> <li>- 전화응대 협력 등 사고수습 지원</li> <li>- 건물 내 안전책임</li> </ul>                                          |

## • 안전사고 유형별 행동요령

국민재난안전처(<https://www.safekorea.go.kr>)와 공연장안전지원센터(<http://www.stagesafety.or.kr>)에서 제시하는 안전사고 유형별 행동요령을 기본으로 근무지의 환경에 맞는 행동요령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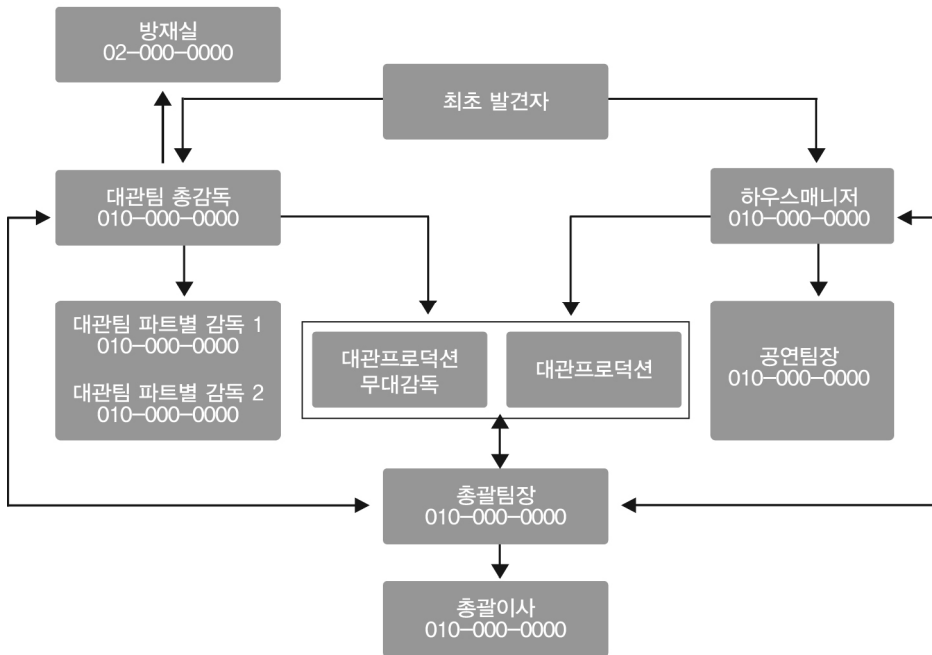
## • 훈련 시나리오

업무분장을 토대로 만들어진 시나리오를 첨부하여 주기적인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 • 비상상황 시 연락 계통도

비상상황 발생 시 적용되는 필수 내용이다. 관련 협조기관의 연락처와 공연장 내 내부조직에 대한 담당자별 개인 연락처, 성명 등의 정보가 명확히 기입된 내용이 적합하다.

### 사고 발생 시 극장 내 비상연락망



사고발생 시 극장 내 비상연락망

###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망

| 응급실              | 소방서               | 경찰서                | 시설관련                 |
|------------------|-------------------|--------------------|----------------------|
| 병원 1<br>000-0000 | 00소방서<br>000-0119 | 000경찰서<br>000-0112 | 한국전력공사<br>000-0000   |
| 병원 2<br>000-0000 | 00소방서<br>000-0119 |                    | 시설 내 보안팀<br>000-0000 |

사고발생 시 외부 비상연락망

## (2) 정기적 훈련계획

### ① 연간 훈련계획

셋업 · 점검 · 공연 및 행사 등의 공연장의 가동에 따라 안전훈련일을 일정한 날짜로 지정하여 실시하기 어렵다. 때문에 연간 계획을 월 단위로 지정하여 사고 유형별 또는 교육 방법별 계획을 정하여 안전훈련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 2017년도<br>하우스 인력<br>안전훈련<br>계획 | 월   | 교육유형 | 교육내용 | 교육대상 | 비고 |
|--------------------------------|-----|------|------|------|----|
|                                | 1월  |      |      |      |    |
|                                | 2월  |      |      |      |    |
|                                | ⋮   |      |      |      |    |
|                                | 12월 |      |      |      |    |

## 〈타 기관을 통한 훈련〉



CPR 수강 중인 하우스매니저들

안전사고는 실제로 경험하기 어렵다. 때문에 강조되어지는 여러 대응방법에 대해 교육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경험하기 어려운 안전사고에 대하여 가상으로 꾸며진 상황을 통해 실제 안전사고를 체험할 수 있는 기관들을 통한 안전 교육도 유용하다.

| 기관명           | 연락처 또는 홈페이지                                                             | 기관명            | 연락처 또는 홈페이지                                                               |
|---------------|-------------------------------------------------------------------------|----------------|---------------------------------------------------------------------------|
| 지역별<br>재난안전본부 | 119                                                                     | 승강기<br>교육센터    | 1566-1277                                                                 |
| 적십자(본사)       | 02-3705-3617                                                            | 서울시민<br>안전체험관  | <a href="http://safe119.seoul.go.kr/">http://safe119.seoul.go.kr/</a>     |
| 공연장<br>안전지원센터 | <a href="http://www.stagesafety.or.kr">http://www.stagesafety.or.kr</a> | 한국공연장<br>매니저협회 | <a href="http://www.housemanager.co.kr">http://www.housemanager.co.kr</a> |

## - 훈련대상

다양한 형태의 근무자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이므로 관객을 제외한 인원은 모두 참가하도록 한다.

## • 공연장 근무자

일반사무원, 시설팀, 공연장감독, 하우스매니저 등이 포함된다. 공연장에 찾아오는 관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안전한 대피를 진행하는 인력이 안전사고에 관한 교육을 통해 명확한 판단을 통한 사고대응을 할 수 있기 위함이다. 이때 운영되고 있는 공연장의 상황에 맞게 각자의 포지션에서

행해져야 할 연락망, 대피유도 등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다.

- 관객안내원

관객과 초접점에서 근무하는 관객안내원은 관객 안전과 대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다른 인력에 비해 근무기간이 짧고, 근무인력이 매일 변경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정확한 응대 요령에 대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 대관단체

대부분 대관인력들은 공연기간 동안 무대에 상주하는 시간이 많으므로 이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과 대피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된다. 기본적인 공연장 내 안전규칙 및 발생 시 대처흐름에 따라 대관단체의 임무를 명확히 하여 대관단체와 공연장 간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 (3) 대피방송 멘트 준비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흐름에 따라 안내 및 대피유도방송을 실시하게 된다. 현장 상황에 맞는 방송을 통해 대피 시 혼란을 최소화하고 빠르고 질서 있는 대피가 가능하다. 실제 방송장비가 아닌 확성기 또는 육성을 통해 안내 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상황에 따라 예매취소, 환불, 보상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공연장은 다수가 응대하기 때문에 안내자가 동일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는 채널을 한 곳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방송하여 혼선을 방지한다.

#### ① 방송장비·확성기를 통한 방송

전달력이 매우 우수하나 방송이 길어지는 경우 안전 상황 발생 시에는 청중에 집중력이 떨어지므로 짧지만 강조될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하는 것이 좋다.

〈방송문의 예시〉

- 기본멘트

상황에 대한 설명, 현지 공연팀과 공연장이 취하고 있는 해결방법, 관객행동요령(대피, 대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기본 안내멘트

“관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현재 일대 정전으로 인하여 공연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연팀과 공연장에서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측에 문의하여 복구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객 여러분께서는 안전을 위해 다음 안내 시까지 좌석에서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소지하신 핸드폰의 랜턴 기능을 활성화 하여주시고 다음 안내 시까지 핸드폰은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등의 안내 멘트를 한다.

- 하우스매니저 안내멘트

“관객 여러분, 현재 무대 위 화재로 인해 공연이 중단되었습니다. 안전하고 빠른 대피를 위해 현재 착석하신 좌석에서 가까운 출입문을 확인하시고 관객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질서 있는 대피바랍니다. 앞사람과의 충돌이 예상되오니 협조해 주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관객안내원 안내멘트

“유도에 따라 천천히 이동 부탁드립니다. 집결지는 건물 외부 광장입니다. 인원확인을 위해 외부 광장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상황 시 공연 중단 여부에 관한 멘트

상황에 대한 설명과 사과, 관객행동요령(대피, 대기 등), 복구가능의 정도, 불가 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안내여부 등이 있으면 좋다.

- 기본 안내멘트

“현재 공연 중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공연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원인파악 중에 있으며 객석에 앉아 다음 안내까지 대기 부탁드립니다. 관객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 공연 일시 중단 멘트

“현재 공연 중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공연이 중단되었습니다. 확인까지 약 20여분 이상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관객 여러분께서는 잠시 휴식을 취하시며 다음 안내까지 대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관객 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연 재개 · 종료 후 멘트

“관객 여러분, 관람 중 발생 사항은 무대 조명장비 이상으로 인하여 장면연출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람 중 불편사항에도 믿고 양해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공연 진행 불가 시 멘트

- 기본 안내멘트

“뮤지컬000을 찾아주신 관객여러분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현재 △△△역할 배우의 갑작스런 부상으로 인해 금일 공연 진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공연 취소에 의한 예매관객 환불은 귀가하신 후 직접 저희 쪽에서 연락드릴 예정이며, 예매 방법에 따라 환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환불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별도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의 경우 지금 매표소로 오셔서 준비된 양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뮤지컬000홈페이지와 공연장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원활한 공연 진행이 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 퇴장 유도멘트

“관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퇴장을 위해 관객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질서 있는 퇴장 부탁드립니다. 환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초대권의 경우

퇴장 후 매표소에 방문 부탁드립니다.”

## ② 육성을 통한 안내

안내 내용에 대한 전달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듣고 움직일 수 있도록 단순구호로써 안내한다.

### - 대피시 구호예시

공연장은 객석의 위치에 따라 여러 방향의 탈출구가 위치한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 안전물품 등을 함께 사용하여 유도하도록 한다.

- 경광봉 이용 : 안전한 대피로는 이쪽입니다. 불빛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십시오. 건물외부에서 집합하십시오.(반복)
- 위급한 대피의 경우 : 불빛 방향! 천천히 이동! 외부집합!  
응대 시 위급한 상황에 대한 강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그를 통해 안내에 대한 집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말을 사용한다.

## (4) 안전훈련에 필요한 물품 준비

안전훈련뿐만 아니라 실제 안전사고 발생 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미리 준비한다. 일부 물품의 경우 전기 또는 건전지, 압력, 유통기한 등의 이유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① 무전기



공연 진행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시 소통을 위한 기기로 생활용 무전기와 업무용 무전기로 나뉜다. 생활용 무전기의 경우 별도 또는 등록 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전달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업무용 무전기는 고유번호신고를 통해 주파수사용에 대한 수신료를 부담하여 사용하는데 전달력이 뛰어나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기이다. 제조사마다 형태, 무게, 사용법은 매우 다양하다. 운영법에 따라 아날로그형과 디지털형으로 나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디지털형 무전기로 바뀌는 추세이다.

## ② 랜턴



비치용 랜턴



관객안내원 소지용 랜턴

랜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공연 진행을 위해 소지하는 랜턴의 경우 빛의 퍼짐이 적어 주로 관객 안내용으로 사용되어 진다. 공연장 시설 내 비치되는 안전사고용 랜턴의 경우 빛의 밝기나 퍼짐이 우수하며 다수의 대피 시 사용된다.

## ③ 비상방송물품 & 수신호용품

안전사고 발생 시 지시 및 안내를 위해 사용되는 경광봉은 다양한 길이에 플래시 기능이 있기도 하고 경고음이 나오기도 한다. 공연장 내 설치된 방송장비 이외에 안내에 용이한 기기 또한 다양한 기능들이 함께 나오는 추세이다.

| 확성기                                                                                | 호루라기                                                                                |
|------------------------------------------------------------------------------------|-------------------------------------------------------------------------------------|
|   |   |
| 휴대용 마이크                                                                            | 경광봉                                                                                 |
|  |  |

#### ④ 소화기

발생된 화재의 유형에 따라 사용 가능한 소화기가 따로 있으며 종류 또한 다양하다.

| 구분        | A급 화재                                                                      | B급 화재                                                                                                                                           | C급 화재                                                                                                          | D급 화재                                                                    |
|-----------|----------------------------------------------------------------------------|-------------------------------------------------------------------------------------------------------------------------------------------------|----------------------------------------------------------------------------------------------------------------|--------------------------------------------------------------------------|
| 명칭        | 일반화재                                                                       | 유류 · 가스화재                                                                                                                                       | 전기화재                                                                                                           | 금속화재                                                                     |
| 가연물       | 목재, 종이, 섬유 등                                                               | 유류 · 가스                                                                                                                                         | 전기기계 전선 등                                                                                                      | Mg분말 등                                                                   |
| 소화효과      | 냉각효과                                                                       | 질식효과                                                                                                                                            | 질식, 냉장효과                                                                                                       | 질식효과                                                                     |
| 적용<br>소화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li> <li>- 강화액 소화기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말소화기</li> <li>- CO<sub>2</sub>소화기</li> <li>- 분말소화기</li> <li>- 증장성 소화기</li> <li>- 할론 1211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성소화기</li> <li>- CO<sub>2</sub>분말소화기</li> <li>- 할론 1211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조사</li> <li>- 팽창진주암</li> </ul> |

## ⑤ 안전사고용 방독면



안전사고용 방독면

특히 화재나 테러 등으로 인한 질식 가능성을 막아 대피가 용이하게 하는 물품이나, 고가의 제품이 많고 대피자 모두가 사용할 만큼 많은 수량을 준비하기는 어렵다. 법적으로 필수 준비사항은 아니며 대피유도자가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⑥ 구급상자

간단한 처치를 위한 구급약품 등이 들어 있는 상자이다. 상자 내 구성요소들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기적인 보충 및 교체가 필요하다.

필요에 따라 관객이 자주 찾는 구급약품 또는 처치용품의 경우 용이한 응대가 가능하도록 작은 키트(세트)를 만들어 객석 입구에 보관하여 사용한다.



구급상자

– 구급상자 내 필요물품 및약품 권장 내용

- 구두약품 : 아스피린, 소화제, 지사제, 어린이 해열제 등
- 처치용품 : 일회용밴드, 소독약, 파스, 습윤 밴드, 생리식염수, 연고, 접착테이프, 거즈, 화상관련 약품 등
- 의료기구 : 일회용마스크, 체온계, 일회용장갑, 가위 등



구급상자 구성품 1



구급상자 구성품 2



일회용 장갑



체온계

【참고사항】 구급상자 비치 권장사항

1. 충분한 수량의 구급함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일반적으로 100명당 1개 정도, 또한 작업의 특성 및 작업자의 배치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2. 구급함은 먼지와 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밀폐된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3. 구급함은 항상 잠그지 말아야 하며, 잠글 경우에 열쇠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
4. 구급함은 충분한 응급처치 용품들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모두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5. 구급함은 매월 점검해야 하며, 용품은 매 사용 후 또는 시간이 흘러 필요에 따라 다시 채워져야 한다.
6. 구급함은 영어와 자국어로 된 약품 설명서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응급처치 담당자가 있는 경우, 응급처치 담당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명단 목록 또는 사진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⑦ 기타

비상상황 시 도움이 되는 물품을 키트(세트)로 구성하고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운영한다. 단, 보관 시 대피로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역에 부착하거나 설치한다.

－ 안전보호구함의 예



| 구성품의 예    |                                         |
|-----------|-----------------------------------------|
| 소방포       | 화재 시 산소차단을 목적으로 덮어 사용                   |
| 틀것        | 응급환자 이송용                                |
| 메가폰       | 여러 안내사항에 대한 확성 안내도구                     |
| 방독면       | 구호자 본인 착용이 먼저이나, 호흡계 관련 환자나, 노약자에게 착용시킴 |
| 경광봉       | 좌우로 흔들어 퇴장방향 알림과 피난유도                   |
| 휴대용 소화기   | 종류별 소화기<br>화재 발생요인에 따라 1차 대응을 위함        |
| 휴대용 산소호흡기 | 구호자 본인 착용이 먼저이나, 호흡계 관련 환자나, 노약자에게 착용시킴 |

## – 응급장비

-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제세동기

다중이용시설, 공항, 보건 의료기관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의무의 규정을 갖고 있다. 지병, 심리적요인, 환경적요인 등에 의해 의식을 소실하는 관객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심정지 환자로 판단이 되는 경우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정확한 심장마사지를 위해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하여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도록 유도하고 의료진이 올 때까지 반복 시행하여 환자의 소생률을 높인다.

- 휠체어

장애인 이동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나, 응급환자, 부상자 등이 스스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이동 수단으로 활용한다.



휠체어

- 휴대용 산소호흡기

휴대용 산소호흡기는 호흡곤란이나 산소결핍 증상이 보이는 관객의 응급조치 시에 사용하는 장비로 기존의 산소 호흡기에 비해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워 신속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 2) 공연 관객 안전훈련 방법

내부 인력을 이용한 훈련이나 타 기관의 전문가 초빙, 또는 전문기관으로의 방문 등을 통해 훈련할 수 있다.

### (1) 안전훈련계획

실제 발생하는 상황에 정확성 있는 대응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므로, 실제 근무지에서 현장 대응을 위한 능력 강화를 목표로 계획한다.

#### ① 유관기관 정보 및 도움의 범위

안전사고 발생 시 공연장 내부 인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사고들이 아닐 수 있으므로 근무지 주변에 위치한 협력기관들에 대한 연락체계와 도움의 범위에 대해 알아두는 것 또한 중요하다.

##### - 소방서

24시간 민원접수를 받고 있다. 재해와 안전에 대한 신고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며, 전화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민원접수가 가능하다. 대표번호 ‘119’를 통해 신고할 경우 종합상황실에서 민원을 받아 신고 접수지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서를 통해 도움 받게 된다. 출동이 필요한 경우 내용에 따라 특수구조대가 현장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갖추어져 있다.

##### - 경찰서

대표번호 ‘112’를 통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신고한다. 지역 규모에 따라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경찰청 순으로 규모가 커지며 민원의 내용에 따라 처리되어지는 내용의 범위가 다르므로 각처의 연락처를 파악해 놓아야 한다.

##### - 병원

인사사고 관련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는 응급처치가 진행되어야 한다. 사고의 경중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므로 119를 통한 신고 또는 연계되어진 협력병원이 있을 경우 비상연락처를 확인하여 신고하고, 이송 시 공연장·기획사 등의 관계자가 동행하여 치료 범위, 보상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 연계되는 병원의 경우 2차 이상 의료기관으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이 있는 병원을 추천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 ‘1339’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 약국

공연장 내부에서도 약품 또는 처치용품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가장 가까운 약국의 위치와

운영시간을 파악해 놓는 것이 좋다. 특히, 공연장의 경우 주말 구분 없이 운영되므로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

‘휴일지킴이약국’(http://www.pharm114.or.kr/) 사이트를 통해 주말 또는 공휴일, 24시간 운영이 되는 약국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위기상황 비상체계

안전 매뉴얼 구축 시 반드시 작성되어야 할 내용인 비상체계에 관한 내용이다.

신속한 위기대처를 위해 공연을 진행하는 팀 내부적인 업무분장도 중요하지만 타 부서와의 협조 또한 중요하다.

## ③ 안전사고별 훈련계획 기획

공연장에서는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사전에 예방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상황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사례를 접해보는 것 또한 훈련계획을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 － 훈련개요

훈련일시, 참가인원, 사고상황, 훈련목적(내용), 비상체계에 따른 팀별 행동요령 등을 토대로 작성한다.

### － 안전사고의 구분과 팀별 업무 내용

비상체계에 따른 팀별 행동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이때 초기대응 및 피해상황 또는 발생상황에 대한 진행사항 파악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들을 크게 사회재난, 자연재난으로 구분하여 상황을 분류하고 해당 상황별, 각 팀별 대처 및 해결방안에 대한 계획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각 상황별 안전사고 사례는 본 챕터 끝부분에 실제 발생된 사고사례들을 수록하였으니 참조 가능하다.

〈안전사고 해결순서에 따른 팀별 업무 내용〉

| 해결순서  | 시행 팀            | 내용                                                         |
|-------|-----------------|------------------------------------------------------------|
| 1. 대처 | 현장 진행팀 & 상황 처리팀 | 유관기관 신고, 소화, 대피유도, 응급환자 조치, 대피 후 잔류 인원 확인, 보고 등            |
| 2. 수습 |                 |                                                            |
| 3. 복구 | 상황 처리팀 & 업무 지원팀 | 보고, 유관기관 신고<br>인명적 피해에 대한 조치<br>물질적 사항에 대한 조치 등            |
| 4. 해결 | 업무 지원팀 & 종합 상황팀 | 발생부터 해결까지에 대한 내용 최종보고<br>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보고<br>재난체계 재구축, 시설점검 등 |

###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 화생방, 환경오염사고, 에너지, 통신, 의료, 수도, 감염병, 가축전염병 등을 말한다.

- 화재 : 공연장 내 다양한 시설들로 인한 화재 또는 방화로 인한 화재들로 나뉘볼 수 있다.
- 정전 : 공연장에서의 정전은 공연장 내부 전기시설의 과부하로 인해 생기는 경우와 계절성, 지역적 전력이용에 따른 과부하로 인해 생기는 경우로 크게 볼 수 있다.
- 인사사고 : 인사사고의 경우 발생하는 구역을 나눠 생각해 보면 좋다. 공연 진행 스태프, 배우, 연주자 등 무대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와 관객의 부주의 또는 공연장 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사례가 있다. 작은 상처부터 사망까지 매우 광범위하므로 관련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 의식 소실 : 심정지, 지병으로 인한 발작, 기절 등 공연장의 폐쇄적인 구조에서 오는 공포감 등으로 인해 오는 예상하기 어려운 사고
- 신체 훼손 : 심정지, 지병으로 인한 발작, 기절, 추락, 가벼운 상처, 절단 등으로 오는 신체훼손은 정도에 따라 구비된 응급상자를 통한 간단한 조치부터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조치까지 범위가 광범위하다.

### 〈자연재난〉

불가항력적인 재난 형태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한 대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피 계획 시 전력을 이용한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입·퇴장 문 개방 담당자 지정 또는 방안 수립은 필수이다.

- 지진 : 지진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진과 멈춤의 반복이다. 때문에 멈춤이 확 인될 시 빠른 시간 내에 떨어질 시설물, 물건 등이 없는 공터 등에 모이는 것이 좋다.
- 침수 : 현재 관련법에 따라 침수사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안전사각지대의 발생이 잦은 편이다. 대부분 침수사고 발생의 원인은 무리한 건축으로 인해 집중호우로 인한 빗물 유입, 배수시설에 대한 관리 부족, 누수 등이 있다. 이 경우 낮은 지대보다는 높은 지대로의 대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2) 자체훈련

### ① 안전 매뉴얼을 활용한 이론교육진행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작성한 안전 매뉴얼을 통해 실제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하여 이론교육을 실시한다. 본 교육을 통해 현장파악부터 초기대응까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여 신속하고 체계적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다.

#### - 안전사고 유형별 행동요령

사고발생 시 신고 및 대피행동요령, 사고 사례별 행동요령 등을 통해 사고발생에 대한 판단 유무와 초기응대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한다.

- 공연장 구조

공연장 위치, 도면, 층별 구조, 좌석배치도, 관객대피로 등을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 훈련시나리오

현장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위해 실제 상황발생을 가장하여 대응 순서에 따라 작성된 대본을 통한 현장교육 및 평가를 한다.

- 브리핑 시간을 통한 수시교육

공연장 관객안내원의 경우 장기간 근무인력이 아니며 매회 근무 위치선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브리핑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 ② 비상물품 관리

자주 사용되는 물품은 아니지만 비상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물품이므로 꾸준한 점검과 작동 유무 등을 확인한다.

- 휴대용 비상조명 장비

공연장의 경우 창문구조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휴대용 비상조명은 대피 시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다. 탈출구로 사용되는 출입구 가까이에 매회 공연 시작 전 작동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조정실, 방재실에서 직접 작동시키는 장비의 경우 또한 관객 입장 전 사용가능 유무를 확인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한다.

- 소화시설

- 소화기

분말소화기의 경우 흔들어 내용물이 굳어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기압차를 이용해 사용되는 소화기의 경우 지시압력계를 통해 적정 기압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본체의 변형, 손잡이, 안전핀 등의 변형·분실이 있을 시 사용할 수 없다.

- 소화전

소화전 위치표시등의 손상, 탈락, 향시점등 여부를 확인한다. 소화전 내부 호스, 노즐, 배관, 작동개폐 가능여부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③ 응급환자 발생 응대

올바른 판단과 신속한 대처를 통해 환자에게 2차 부상이 발생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

- 출혈, 호흡정지, 쇼크 등 위급상황 판단 시 지체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이때, 주변 군중들의 심리에 동요되지 않도록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
- 응급처치를 시행하며, 주변에 의료인이 있다면 응대에 도움을 청하고, 반드시 1인을 지정하여 119에 신고하도록 한다.

– 환자 응급처치

- 압박이 되는 속옷, 벨트, 등은 풀어주고 정상체온을 유지하도록 한다.
-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신체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 119 전화 연결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 환자이송

- 부상자 이동 시 손상부위에 충격이 적도록 하며, 무리한 이동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자의 상태를 살핀다.
- 발작환자의 경우 공간을 확보해주고 압박이 되는 의류 등은 풀어준다.
- 주변 물품들은 멀리 치워 부상을 방지한다.

### (3) 외부기관 또는 강사를 통한 훈련

전문기관의 강사를 초빙하거나 타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훈련하는 방법이 있다.

## 2 대피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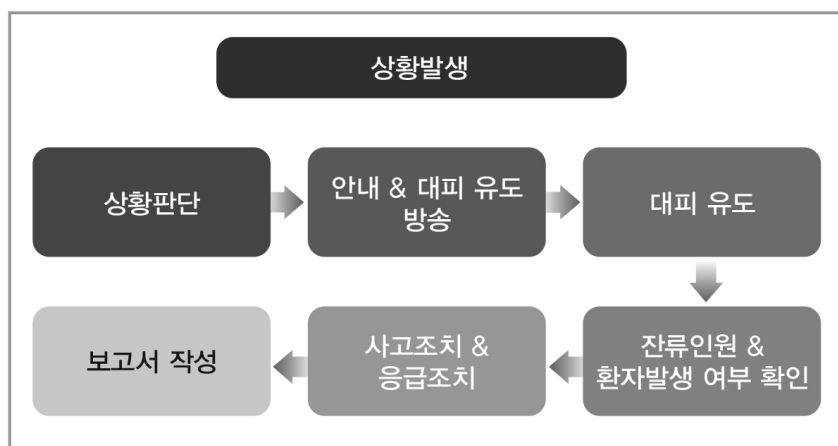
실제 상황 발생 시 능숙한 대처를 위해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초기 발견부터 대응 후 보고까지의 순서에 대해 시간순서로 작성된 일종의 대본이다. 이를 통해 실제 현장교육이 진행된다.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을 모두 작성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 1) 대피 시나리오 작성

안전사고 훈련 시나리오용 활용서식을 이용하여 아래 이미지의 순서로 큰 틀을 잡고 작성해 나간다.

| 시간 | 업무수행 | 시나리오 | 행동요령 | 안내멘트 |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사고 발생 시 대피 과정〉



## (1) 상황판단

최초 상황 발생 시 안전사고 내용에 따라 대기·대피의 여부를 판단하고 초기발견자는 본인의 위치에 따라 보고한다. 후에 관객대피 준비상태로 근무 포지션을 전환한다.

## (2) 안내·대피유도방송

차분하고 엄격한 어조로 상황에 대한 안내방송을 통하여 관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추후 질서 있는 대피가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안내를 반복하여 시행한다.

녹음된 안내문이 있는 경우 활용해도 무방하며 평소 방송을 자주하는 인력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시나리오 내에는 반드시 방송해야 할 멘트가 수록되는 것이 중요하다.

### ① 공연장 감독

공연장 감독은 상황발생에 따라 대관단체와 하우스의 소통채널을 한 곳으로 정리하여 모든 상황에 대해 공유하도록 한다.

### ② 대관단체 (공연 스태프, 배우 등)

대관단체의 대피 범위 : 대관단체의 경우 해당 진행 스태프 및 출연진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공연장 감독을 통해 전달받거나 전달되는 내용에 따라 상황발생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안내방송 시 해당팀이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③ 하우스매니저와 관객안내원

사고발생에 대한 안내방송 내용에 따라 관객안내원을 비상상황 포지션으로 전환하고 대기시킨다.

## (3) 대피유도

상황판단에 따라 대피가 필요한 경우 각 근무자의 위치를 지정하고 배치확인 후 화재사실을 알려 신속하게 대피를 유도한다.

### ① 공연장 감독

사고 발생지에 따라 방화셔터 또는 메인막을 내려 공간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대관팀의 대피유도를 돕는다. 경우에 따라 반입구를 개방하여 대피에 도움을 준다.

### ② 대관단체 (공연 스태프, 배우 등)

각 진행인원 및 출연진에 정확한 대피를 위해 각 근무자별 행동요령에 대한 업무분장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빠른 대피를 한다.

## ③ 하우스매니저와 관객안내원

비상상황 포지션으로 전환하여 대기 중인 관객안내원이 침착하게 안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무전기를 통해 정확하고 차분한 어투로 반복적인 업무를 지시한다.

## (4) 잔류인원 확인 · 환자발생여부 확인

상황판단에 따라 대피가 필요한 경우 각 근무자의 위치를 지정하고 배치확인 후 화재사실을 알려 신속하게 대피를 유도한다.

## ① 대관단체 (공연 스태프, 배우 등)

- 운영 스태프 및 배우의 인원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잔류여부를 판단한다.
- 잔류인원에 대하여는 공연장 감독에게 통보한다.
- 환자발생에 대한 초기조치를 시행한다.

## ② 공연장 감독

- 분장실 및 무대의 잔류인원을 확인한다.
- 대관단체 측의 잔류 및 환자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한다.

## ③ 하우스매니저와 관객안내원

1인당 비교적 다수의 관객을 대피시켜야 하므로 관객안내원에게 명확한 포지션과 각자의 역할에 대해 지시한다.

- 객석 및 로비 등 FOH 내 잔류인원을 확인한다.
- 집계내용, 기획사로부터 공유 받은 예매사항을 통해 관객수와 대피한 인원수를 대조한다.
- 환자발생여부를 파악하고 초기조치를 시행한다.
- 사고와 관련한 추후 응대를 실시한다. 사고관련 안내, 환불과 관련된 응대 등

## (5) 사고조치 · 응급조치

## ① 대관단체 (공연 스태프, 배우 등)

- 환자발생에 대한 초기조치를 시행한다.
- 공연장 감독과 내용을 공유한다.

## ② 공연장 감독

- 대관단체 및 관객 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유관기관에 신고하고 조치한다.
- 사고신고 및 응급구조 요청 시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발생 장소

-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 부상자의 상태
- 전화 거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 추가 부상자가 있는지 여부
- 응급처치 여부 · 방법

### ③ 하우스매니저와 관객안내원

－ 환자발생여부를 파악하고 초기조치를 시행한다.

발생된 환자에 대해 반드시 기록하고 보고한다. 작성 시 시간대별 매니저의 무전, 상황조치, 이동 동선 등을 기록해 놓으면 추후 보상 시 보험처리를 할 경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응급조치

1차사고로 발생한 상처에 대한 보호와 후에 발생할 2차 사고에 대한 예방을 위함이다. 조치에 대한 내용 또한 기록하고 추후 119 또는 응급실에 담당자에게 과정에 대해 공유하는 것이 좋다.

### (6) 보고서 작성

발생된 사고에 관련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발생과정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간과 함께 작성하지는 것이 중요하며,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2) 대피훈련



대피 훈련 중인 공연장

## (1) 포지션별 비상업무 분담

### ① 대관단체

무대감독을 중심으로 상황에 따른 초기 대응을 시행하거나, 탈출 시 배우, 스태프가 모두 탈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 정전 시

- 무대감독을 중심으로 무대 위 배우와 스태프가 안전하게 무대를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관련 사항에 대해 공연장 감독과 상황판단 및 공유를 한다.
- 공연 재개, 불가 등에 대해 배우 또는 무대감독이 직접 안내방송을 하여 대처하는 것도 좋다.

#### － 화재 시

- 무대 위 화재 발생 시 최초 발견자의 보고에 따라 공연장 감독과 내용을 공유한다.
- 발생 지점에서 멀어지도록 지시 후 공연장 감독과 1차 진압을 한다.
- 진압 성공 시 공연을 재개한다.
- 진압 실패 시 공연불가에 대한 부분 확인 및 공연장 감독과 내용 공유 후 추후사항을 진행한다.

#### － 인사사고 시

- 무대 위에서 사고가 발생 된 경우 공연팀과 상의해 메인막을 내려 사고현장과 객석을 분리한다.
- 하우스팀에 내용을 공유하고 음향팀에 사고 관련 안내방송을 지시한다.

### ② 공연장 감독

#### － 정전 시

- 공연단체는 무대 위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하우스팀에 정전상황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다.
- 공연팀과 공연진행 여부를 판단하여 하우스와 공유한다.
- 대피 상황의 경우 안내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음향팀에 지시하고 하우스에 대피를 지시한다.
- 대피 불필요 시 관련사항에 대한 안내방송은 음향팀이 지시하여 공연을 재개한다.

#### － 화재 시

- 발견 시 공연팀, 하우스 공유
- 1차 진압 후 재개 여부 판단
- 재개 가능 시 안내방송 음향팀 지시
- 재개 불가 시 시설팀, 방재팀, 경비팀 등에 내용 공유
- 관련 사항 신고여부 확인 및 하우스 탈출 지시



대피 훈련 중 소화전 사용 모습



대피 훈련 중 소화기 사용 모습

－ 인사사고 시

- 무대 위에서 사고가 발생 된 경우 공연팀과 상의해 메인막을 내려 사고현장과 객석을 분리한다.
- 하우스팀에 내용을 공유하고, 음향팀에 사고 관련 안내방송을 지시한다.
- 건물 내 방재실, 경비실 등에 내용을 공유하고 119에 신고한다.

③ 하우스매니저와 관객안내원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우스매니저는 비상상황 시 교육된 포지션별 업무를 바탕으로 지시한다.

| 배치            | 담당업무의 예시                                                                      | 준비사항              |
|---------------|-------------------------------------------------------------------------------|-------------------|
| 검표            | 객석문 오픈, 관객 대피 유도(비상계단 방향), 엘리베이터 사용 제한 유도, 화장실 이용 고객 확인, 안내멘트, 모자방 관객주의, 안내멘트 | 경광봉<br>(대피로 방향제시) |
| 안내            | 객석문 오픈, 관객 대피 유도(계단 압사주의, 비상문 방향), 안내멘트, 관객 동요방지, 노약자, 장애인 주의, 안내멘트           | 비상조명등<br>(대피로 확인) |
| 물품보관소<br>및 로비 | 혹시 대피중간에 물건 찾으러 오시는 분들은 차분하게 추후 상황 종료되면 찾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대피 유도하여 혼선 방지 안내          | 비상약품              |



심폐소생술 실습중인 관객안내원

### 3) 훈련평가

시나리오를 토대로 실시한 안전훈련 후 계획된 내용이 적절히 실행되었는지, 현장 대처에 도움이 되었는지 등을 평가한다. 추후 위기상황 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체 평가서와 관객의 입장에서 평가서, 외부 기관이 평가한 내용의 평가서 등을 취합하여 시나리오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다. 평가서 양식은 [서식 4](236p)를 참고 바란다.

### 4) 훈련 결과 보고

참여인원설문 및 결과보고서 활용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기존 작성된 안전 매뉴얼과 훈련시나리오는 주기적으로 수정 보완한다. 훈련 종료 후 참여 인원에 대한 설문을 통해 수정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아 보는 것도 좋다([서식 3](235p) 참고). 결과보고서 양식은 [서식 5](237p)에서 확인한다. 보고서 작성 시 훈련 중 사진을 함께 첨부하여 차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5) 안전사고에 따른 대피 시나리오 예시

### (1) 화재

#### ①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연기가 가득한 장소를 지날 때에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 닫힌 문을 열 때에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고 뜨거우면 절대로 열지 말고 다른 비상 통로를 이용한다.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은 이용하지 않는다.
- 탈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않는다.
- 공연 중 무대에서 화재 발생 시

#### 〈총괄 책임자〉

- 화재 규모에 따라 공연 중단 결정을 해야 한다.

발화 지점 주변에 타기 쉬운 연소물(커튼, 나무 등)이 없고, 화재가 번질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하면 잠시 공연을 중단시키고 초기 진압에 힘써야 한다.

- 공연 중단 결정을 한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도록 한다. 만약 방재실이 있는 경우 방재실을 통해 119에 신고해서 지속적인 상황 전파가 가능하도록 한다.
- 비상 대처 체계에 따른 담당자에게 공연 중단 및 대피 명령을 실시한다.

#### 〈객석 공간〉

- 총괄 책임자의 대피 명령 혹은 비상 대피 방송에 따라 관객을 대피시키도록 한다. 원활한 관객 대피를 위해 모든 출입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 - 관객 및 공연자 대피 요령

#### 〈총괄 책임자〉

-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각 비상 대응 담당자로부터 대피 진행 상황을 보고 받는다.
- 만약 대피 중 환자 발생 보고를 받았으면, 환자 이송 지원 지시 및 환자 발생 사실을 119에 알리도록 한다.

#### 〈객석 공간〉

- 관객 대피 시 혼잡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질서 있게 이동할 것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특히 관객들이 앞 사람을 밀거나, 서두르다가 넘어지게 되면 압사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공연장 천장에 연기층이 형성되어 있으면 관객들에게 자세를 낮추고 호흡기를 보호한 상태로 대피할 것을 안내한다.
- 비상상황 중 관계자가 조금해 하거나 불안한 상태를 보이면 관객들은 패닉에 빠질 수 있으므로

로,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와 행동으로 관객 대피에 집중하도록 한다.

- 대피하는 관객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 대피한 관객이 다시 공연장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 – 대피 완료 후 행동요령

##### 〈관계자〉

- 미처 대피하지 못한 관객이나 공연자 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 화재 발생 공연장에 다시 들어가는 자가 없도록 안내한다.
-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관객 중 응급처치 전문가가 있는지 확인한 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 중환자가 있다면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구조대원에게 보고하고 구조대원 혹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 구조대원이 도착하면 즉시 환자의 위치를 알리고 환자가 무사히 이송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건물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직원은 구조대원에게 화재 발생 위치와 진입로를 구두로 안내하도록 한다. 만약 건축 도면이 있다면 구조대원에게 전달한다.

#### ② 화재발생 시 행동시나리오

| 구분            | 업무수행                            | 시나리오                          | 행동요령                                                                                                                                                                                 | 담당자            |
|---------------|---------------------------------|-------------------------------|--------------------------------------------------------------------------------------------------------------------------------------------------------------------------------------|----------------|
| 훈련준비          | 시설담당                            |                               | 화재훈련 대상인원 및 참여인원 집합                                                                                                                                                                  | 현장근무자          |
| 취지설명          | 시설담당                            |                               | 화재훈련 취지 설명                                                                                                                                                                           | 시설담당자          |
| 상황준비          | 객석 내 착석 / 조명 out / 포그머신 이용 화재연출 |                               |                                                                                                                                                                                      | 시설담당자          |
| 상황발생          |                                 | 조명기 과열로 인한 화재발생               | *화재발생: 조명기기의 과열로 조명기 주변에 있는 인화성소재의 소품에 인화                                                                                                                                            | 현장근무자          |
| 사고발생          | 최초 발견자                          | 발견자에 의한 화재상황 전파               | 발견자 → 공연장 감독<br>1) 무대 방화막 또는 메인막 다운<br>2) 상부 및 하우스 전파<br>3) 음향실 상황안내방송<br>4) 조명실 대피 스탠바이 콜 순으로 전파                                                                                    | 현장근무자          |
| 1차 진입 실시      | 무대 스태프 및 공연장 책임자                | 무대에 배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압성공 시 상황종료 | 배치된 소화기를 정확한 방법으로 분사<br>하우스는 관리실, 전기실, 기계실에 상황전파 대기요청.<br>**신고가 필요한 경우 공연장 감독이 신고                                                                                                    | 무대스태프 및 공연장책임자 |
| 사고신고 2차 진입 실시 | 무대 스태프 및 공연장 책임자                | 1차 진입 실패, 2차 진입 실시하며 119 신고   | 공연장감독은<br>1) 하우스 대피요청<br>2) 음향실에 안내방송 지시,<br>3) 조명실에 탈출로 확보 위해 객석 조명 on 지시,<br>4) 분장실 대피 지시. 이때 하우스는 배치된 관객 안내원에게 지시해 각 책임구역의 관객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소지한 랜턴을 사용하여 출입구를 표시. 큰 목소리로 대피 유도 | 공연장 책임자        |

| 구분                    | 업무수행 | 시나리오 | 행동요령                                                    | 담당자                  |
|-----------------------|------|------|---------------------------------------------------------|----------------------|
| 진입/<br>응급조치 및<br>출입통제 | 관리실  |      | 안내방송에 따라 모든 공연장 내 근무자 및 관객은 하던 업무를 멈추고 신속히 지시에 따라 대피한다. | 무대스태프<br>및<br>공연장책임자 |
| 상황종료                  |      |      | 소화가 되면, 상황종료 발생방송으로 마무리한다.                              |                      |
| 훈련평가                  |      |      | 금일 훈련평가                                                 | 참관자 및<br>임원진         |

## (2) 정전

### ① 정전발생 시 행동요령

- 정전의 범위를 확인한다.
- 본인이 있는 범위만 정전된 경우 분전반을 확인하고 전기 공사업체에 의뢰하여 해결한다.
- 구역적 또는 지역적으로 규모가 있는 정전의 경우 즉시 한전으로부터 복구 작업이 시작된다.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므로 이동하지 않고 대기한다.
- 엘리베이터 내에서의 정전일 경우 인터폰으로 해당 시설에 알리고 119에 신고한다.
- 정전 발생

#### 〈총괄 책임자〉

- 전반적으로 상황을 관리 및 통솔해야 하며, 각 파트별로 상황을 보고 받도록 한다.
- 시설담당자로부터는 정전 원인을 수시로 보고받아야 하며, 정전이 오랫동안 해결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공연 중단 결정을 해야 한다.

#### 〈객석 공간〉

- 비상 방송이 나오지 않을 경우 확성기를 이용하거나, 육성으로 아래와 같은 안내를 실시해야 한다.

관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전력공급이 중단되어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잠시 공연을 중단하였습니다. 공연을 다시 시작할 때까지 좌석에서 기다려주십시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관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하우스매니저는 안전관리요원(관객안내원 등)에게 비상위치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하고 관객이 좌석에 침착하게 앉아 있도록 유도한다.
- 비상조명등 및 피난시설이 자동으로 점등되지 않는다면 시설 관계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작동을 요구한다. 만약 수동으로 작동이 가능한 시설이라면 수동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 공연 진행 여부 결정

- 전원 복구 및 공연 재개

〈총괄 책임자〉

- 전원이 복구되면 무대감독에게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보고를 받도록 한다.
- 모든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보고를 받으면 공연 재개 명령을 내린다.

〈객석 공간〉

- 공연 재개 명령을 받으면 하우스매니저는 육성으로 공연 재개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도록 한다.

관객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정전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복구가 끝나는 대로 공연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관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공연 진행을 위하여, 일어난 관객을 자리에 앉히도록 한다. 이때 핸드폰을 켜고 있는 관객에게는 핸드폰을 꺼달라고 정중히 요구한다.

- 공연 중단 결정(공연장 혹은 공연시설만 정전이 발생되었다고 판단)

〈총괄 책임자〉

- 공연장이나 건물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정전의 복구가 장기화할 것으로 판단되면, 공연장에 있는 관객과 출연자를 공연장 외부로 대피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객석 공간〉

- 공연 중단에 의한 불만을 가진 관객을 현장에서 대응하지 않도록 하고 현 상황과 나중에 발생할 문제점을 미리 안내하여 관객 대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정전 복구가 늦어지는 관계로 이번 공연은 중단 결정이 났습니다.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공연장 밖으로 이동하여 주시길 바라며, 환불과 관련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닫혀있는 모든 출입문을 개방하고 경광봉, 휴대용 비상조명등, 랜턴, 확성기 등을 활용하여 관객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킨다.
- 관객이 이동 중 넘어지지 않도록 육성으로 계속하여 안내한다.
- 공연장 안에 남은 관객이 없는지 확인한 후 문을 열어둔 상태로 건물 밖으로 나가도록 한다. 건물 밖으로 대피한 관객들에게 귀가 안내를 해야 한다. 만약 건물 전체 전원이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는 관객이 있다면 어떤 용무인지 확인하고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거친 후, 동반하여 입장하도록 한다.

- 공연 중단 결정(블랙아웃<sup>11)</sup>)으로 인한 지역 전체 정전)

## 〈총괄 책임자〉

- 블랙아웃으로 인한 정전 발생 시 즉시 119에 연락하여 관객 안전 및 귀가 조치에 대해 협의하도록 한다.
- 수시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단체에서 전력 분야 위기대응 프로그램에 따른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전파한다.

## 〈객석 공간〉

- 지역 전반에 걸쳐 블랙아웃이 발생하였다고 관객들에게 알려야 하며, 관객이 좌석에 침착하게 앉아 있도록 유도한다.
- 하우스매니저는 안전관리요원(관객안내원 등)에게 비상위치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한다. 안전관리요원은 휴대용 비상조명등, 랜턴, 경광봉, 확성기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 비상조명등 및 피난시설이 자동으로 점등되지 않는다면 시설관계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작동을 요구한다. 만약 수동으로 작동이 가능한 시설이라면 수동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 ② 정전발생 시 행동 시나리오

| 구분           | 업무수행                     | 시나리오                       | 행동요령                                                                                                                                                                        | 담당자           |
|--------------|--------------------------|----------------------------|-----------------------------------------------------------------------------------------------------------------------------------------------------------------------------|---------------|
| 훈련준비         | 시설담당                     |                            | 정전훈련 대상인원 및 참관인원 집합                                                                                                                                                         | 현장근무자         |
| 취지설명         | 시설담당                     |                            | 정전훈련 취지설명                                                                                                                                                                   | 시설담당자         |
| 상황준비         | 객석 내 착석 / 조명 out 정전상황 연출 |                            |                                                                                                                                                                             | 시설담당자         |
| 상황발생         |                          | 조명기 과열로 인한 화재발생            | *정전발생: 주변일대 전력과소비로 인한 정전                                                                                                                                                    | 현장근무자         |
| 사고발생         | 최초발견자                    | 발생상황에 대한 인지 및 안내           | 공연장감독 → 대관 및 하우스 측 발생상황 내용에 대한 공유<br>1) 한전에 상황 확인 및 복구여부<br>2) 음향실 상황안내방송.<br>3) 조명실 대피 스탠바이 콜 순으로 전파                                                                       | 현장근무자         |
| 1차 진입실시      | 무대스텝 및 공연장책임자            | 일정(짧은)시간 내 복구 가능으로 공연진행 가능 | 안내방송을 통한 관객 대기요청<br>관객안전을 위한 조명 on                                                                                                                                          | 무대스텝 및 공연장책임자 |
| 사고신고 2차 진입실시 | 무대스텝 및 공연장책임자            | 복구 불가 공연진행불가               | 공연장감독은<br>1) 음향실에 안내방송 지시, 책임에 따라 대관단체 또는 하우스매니저<br>2) 조명실에 탈출로 확보 위해 객석 조명 밝기 확인<br>3) 하우스는 배치된 관객안내원에게 지시해 각 책임구역의 관객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소지한 랜턴을 사용하여 출입구를 표시, 큰 목소리로 대피유도. | 공연장책임자        |

11) 블랙아웃 : 예기치 못하게 전력사용량이 치솟거나, 사고로 발전소나 대용량 송전시스템이 운전을 멈춰서, 갑자기 국가 및 지역의 모든 전력시스템이 마비되는 현상이다.

| 구분                    | 업무수행 | 시나리오 | 행동요령                                                            | 담당자                 |
|-----------------------|------|------|-----------------------------------------------------------------|---------------------|
| 진입/응급<br>조치 및<br>출입통제 | 관리실  | 대피완료 | 1) 관객 보상관련 안내 창구 통일<br>ex) 공연장 홈페이지, 기획사 홈페이지<br>2) 대피관객 명단작성유도 | 무대스텝<br>및<br>공연장책임자 |
| 상황종료                  |      |      | 상황종료 발생방송으로 마무리한다.                                              |                     |
| 훈련평가                  |      |      | 금일 훈련평가                                                         | 참관자 및<br>임원진        |

### (3) 테러

#### ① 테러발생 시 행동요령

- 폭파·살해·협박 등의 전화접수 시 전화를 끊지 않고 유지하며 녹음 후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 폭발물·화생방 테러 의심물품 발견 시 관계 기관에 연락 후 의심이 되는 물품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되도록 멀리 대피한다.

#### ② 테러발생 시 행동시나리오

| 구분                                     | 업무수행                      | 시나리오                          | 행동요령                                                                                                                                                                                | 담당자                       |
|----------------------------------------|---------------------------|-------------------------------|-------------------------------------------------------------------------------------------------------------------------------------------------------------------------------------|---------------------------|
| 훈련준비                                   | 시설담당                      |                               | 훈련 대상인원 및 참여인원 집합                                                                                                                                                                   | 현장근무자                     |
| 취지설명                                   | 시설담당                      |                               | 테러훈련 취지 설명                                                                                                                                                                          | 시설담당자                     |
| 상황준비                                   | 객석 내 착석 / 폭발 의심물 준비       |                               |                                                                                                                                                                                     | 시설담당자                     |
| 상황발생                                   |                           | 공연장 내 폭발물발견                   | 폭발물로 인한 대피                                                                                                                                                                          | 현장근무자                     |
| 사고발생                                   | 최초발견자                     | 공연장 입구 휴지통<br>폭발의심물품          | 최초발견자 책임자에게 보고                                                                                                                                                                      | 현장근무자                     |
| 1차<br>상황판단                             | 무대<br>스태프 및<br>공연장<br>책임자 | 폭발물 의심인<br>상황으로 공연팀과<br>상황 공유 | 공연장 감독<br>1) 건물 내 보안 및 시설 등 내용 공유<br>2) 관련사항 유관기관신고 또는 신고확인<br>3) 공연장 측 우선 보고<br>4) 하우스 내용 공유<br>5) 공연팀 내용 공유<br>하우스매니저<br>1) 평소와 동일한 진행                                            | 무대<br>스태프 및<br>공연장<br>책임자 |
| 경찰 및<br>관계<br>유관기관<br>도착<br>상황판단<br>완료 | 무대<br>스태프 및<br>공연장<br>책임자 | 관객 및<br>근무자 전원<br>대피 지시       | 공연장 감독은<br>1) 음향실에 안내방송 지시,<br>책임에 따라 대관단체 또는 하우스매니저<br>2) 조명실에 탈출로 확보 위해 객석 조명<br>밝기 확인<br>3) 하우스는 배치된 관객안내원에게 지시해<br>관객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br>소지한 랜턴을 사용하여 출입구를 표시.<br>큰 목소리로 대피 유도 | 공연장<br>책임자                |

| 구분   | 업무수행                      | 시나리오 | 행동요령                                                              | 담당자                       |
|------|---------------------------|------|-------------------------------------------------------------------|---------------------------|
| 대피완료 | 무대<br>스태프 및<br>공연장<br>책임자 | 대피완료 | 1) 관객 보상관련 안내 창구 통일<br>예) 공연장 홈페이지, 기획사 홈페이지<br>2) 대피 관객 명단 작성 유도 | 무대<br>스태프 및<br>공연장<br>책임자 |
| 상황종료 |                           |      | 상황종료 발생방식으로 마무리한다.                                                |                           |
| 훈련평가 |                           |      | 금일 훈련평가                                                           | 참관자 및<br>임원진              |

#### (4) 인사사고

##### ① 인사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인사사고의 경우 매우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공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유형으로 분류해 보면 크게 심장의 정지유무와 외적상해에 대한 부분으로 나뉘어 행동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② 인사사고 발생 시 행동시나리오

| 구분                 | 업무수행               | 시나리오                     | 행동요령                                                                          | 담당자    |
|--------------------|--------------------|--------------------------|-------------------------------------------------------------------------------|--------|
| 훈련준비               | 시설담당               |                          | 인사사고 대처 훈련 대상인원 및<br>참관인원 집합                                                  | 현장근무자  |
| 취지설명               | 시설담당               |                          | 인사사고 대처 훈련 취지설명                                                               | 시설담당자  |
| 상황준비               | 객석 내 착석 / 환자 발생 준비 |                          |                                                                               | 시설담당자  |
| 상황발생               |                    | 객석 내<br>심정지 환자 발생        | *공연 중 발생 환자에 대한 응대                                                            | 현장근무자  |
| 사고발생               | 최초발견자              | 발생 상황에 대한<br>인지 및 안내     | 관객안내원 발견 → 매니저보고<br>매니저 → 공연장감독보고<br>공연장감독 → 공연팀 공연 중단여부 요청 /<br>신고           | 현장근무자  |
| 사고신고<br>응급조치<br>실행 | 하우스매니저             | 보고받은 후<br>해당 관객<br>상태 확인 | 공연장감독<br>1) 음향팀 안내방송을 통한 관객 대기요청<br>2) 의료인 찾는 방송 실시<br>하우스매니저 관객상황 판단         | 하우스매니저 |
|                    | 하우스매니저             | 심정지<br>판단 완료             | 하우스매니저 해당관객 평지로 옮겨<br>심폐소생술 시작<br>주변 1인 지정 AED 소환<br>관객안내원 1인 지정 시간대별 내용작성 지시 | 하우스매니저 |
| 구급대<br>도착          | 하우스매니저             | 환자인계 완료                  | 도착 구급대원에 상황 및 조치사항 전달<br>공연장감독에 상황 완료 전달<br>공연장운영진에 내용 보고                     | 하우스매니저 |
| 상황종료               |                    |                          | 상황종료 발생방식으로 마무리한다.                                                            |        |

| 구분   | 업무수행 | 시나리오 | 행동요령    | 담당자          |
|------|------|------|---------|--------------|
| 훈련평가 |      |      | 금일 훈련평가 | 참관자 및<br>임원진 |

## (5) 자연재해

### ①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 실내 : 지진 발생 동안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등의 다리 부분을 잡고 기다리고, 지진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대피통로를 확보한 후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한다.
- 실외 : 가방·손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이동 시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넓은 운동장이나 공원 등에 대피한다.
- 지진 발생 시 객석 구조에 따른 비상 행동 체계 마련 : 객석 구조에 따라 지진에 대한 안전성 여부도 다르므로, 관객안내원은 총괄 책임자, 시설 관리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협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총괄 책임자〉

- 전반적으로 상황을 관리 및 통솔해야 하며, 각 파트별로 상황을 보고 받도록 한다.

#### 〈객석 공간〉

- 흔들림이나 지진이 발생하였을 경우, 객석 구조에 따라 관계자는 관객 대피 혹은 보호자세<sup>12)</sup>를 취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 지진 발생에 따른 객석 공간의 안전성은 구조 및 시설물의 설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 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 사전에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한다.
- 출입문 근처에 위치한 직원은 즉시 출입문을 개방한다.

- 지진 발생 직후 (본진이 멈춘 상태)

#### 〈총괄 책임자〉

- 공연장 내 모든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명령한다.
- 각 관계자들로부터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파 받고 주요 사안을 신속히 결정한다.

#### 〈객석 공간〉

- 객석 구역 내 모든 관객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다. 이 때 관계자는 관객들을 벽 쪽으로 최대한 밀착하도록 안내한다.
- 관객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명확하게 안내를 전달한다.
- 대피 중에는 관객이 앞 사람을 밀쳐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안내한다.

12) 보호 자세 : 자세를 낮추고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자세

– 관객 및 출연자 대피 완료 후

〈총괄 책임자〉

인명 피해가 없는지 파악해야 하며, 부상자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119에 신고한다.

〈객석 공간〉

- 관객 대피 후 객석 내 남은 관객이 없는지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 객석 공간에 남은 관객이 없으면 총괄 책임자에게 관객 대피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한다.

## ② 강풍 · 태풍 발생 시 행동요령

- 외출을 삼간다.
- 외부에 있을 시 나무나 전신주 아래에 대피하지 않고, 안전한 건물로 대피한다.
- 운전 중에는 속도를 줄여 강풍에 의한 사고에 주의한다.
- 강풍 · 태풍으로 파손된 시설은 감전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만지지 않고 신고한다.

공연 관객 위기 대응 및  
관리 매뉴얼



## 제6장 안전사고 발생 시 사후 조치 방법

1. 공연·행사 사고현장 대응 수행원칙
2. 한국소비자원에 명시된 분쟁해결기준 중  
티켓 환불규정
3. 사후조치 관련 보험



## 1 공연·행사 사고현장 대응 수행원칙

### 1) 안전사고 관리 원칙

안전총괄 책임자는 각 단계별로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변을 준비하면서, 안전규정을 확고하게 마련하거나 대응하는 것을 권장한다.

#### (1) 예방 및 관리 단계

- ① 사고의 특성을 이해하고 돌발적인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가?
- ② 현장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적재적소에 배치시켰는가?
- ③ 현장상황의 변수에 적합한 임무의 분담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④ 현장상황 판단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가?
- ⑤ 문제해결을 위해 내부 및 외부 기관과의 의사소통의 통로는 있는가?

#### (2) 사고 발생 단계

- ① 상급자의 지시 등을 기다리다 타이밍을 놓쳐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가?
- ② 객관성과 기술적인 근거에 따라서 사고내용에 대한 상황판단을 하였는가?

#### (3) 사고 수습 단계

- ① 사고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조정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② 119, 112 등 지원기관, 협력기관과 효과적으로 협조되고 있는가?
- ③ 언론매체에 잘못된 정보가 전파되지 않도록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있는가?

### 2) 사고 이후 수습처리 절차

#### (1) 관객사고 (압사, 추락 등)

- ① 현장수습 : 피해자 응급처치, 병원 후송 → 2차적인 사고 방지 조치
- ② 행정처리 : 사고 조치 기록 및 사후대책 → 관계기관 협조

#### (2) 화재사고 (실화)

- ① 현장수습 : 현정보존 및 2차 피해방지 → 피해범위 조사 → 임시복구
- ② 행정처리 : 자체점검, 순찰 등 기록물 확인 → 발생원인 조사 및 법률검토 → 관계기관 협조

### (3) 안전사고 (낙하, 추락 등)

- ① 현장수습 : 피해자 확인 → 현장보존 및 통제, 관리 → 2차 피해방지 조치
- ② 행정처리 : 사상자 관련 사항 행정처리

### (4) 자연재해

- ① 현장수습 : 붕괴, 전도 등에 의한 2차사고 방지 → 위험요인 파악 및 피해복구
- ② 행정처리 : 긴급복구계획 수립 → 보고서 작성 및 사후대책 마련

## 3) 안전사고 발생 후 자체 조사 및 사후 방침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긴급히 처리할 일을 우선순위로 하여 조치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자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 ① 발생상황의 피해자, 목격자, 관계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함으로써 사실을 확인한다.
- ② 파악된 사실에서 재해의 직접 원인과 그 원인에 관련하여 공연 현장의 기준상 문제점, 즉 안전규정, 설비기준, 매뉴얼 작업순서 등이 적합한지의 여부, 불안정한 행동과 상태 여부를 점검한다.
- ③ 불안정한 행동과 배후에 있는 기본적인 원인은 4M에 의해 분석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밝혀 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 ※ 4M : 작업자가 시설 및 설비와 융화하면서 노동할 수 있는 시스템의 기본조건
  - － Man : 동료나 상사 등의 인간 환경
  - － Machine : 기계설비 등의 물적 조건으로 설비, 비계나 비상통로의 안전유지 등
  - － Media : 인간과 기계를 연결하는 매체, 즉 작업정보, 작업방법, 작업환경 등
  - － Management : 안전 법규의 철저, 기준의 정비, 안전관리조직, 교육 훈련, 계획 지휘 감독 등의 관리
- ④ 지금까지 밝혀진 재해 및 안전사고의 원인 및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부터 동종의 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 4) 사고 수사 및 처벌 사례

##### (1) 상주 시민운동장 압사사고 (2005년 10월)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행사를 진행한 주최측이 비상식적으로 낮은 가격에 행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비업체에 지급되는 돈에도 문제가 생겨 충분한 통제 인원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협회 부회장이 대주주로 참여했던 별도의 이벤트 회사에 다시 공연을 위임했으며, 경호를 맡았던 업체도 세금 문제로 허가가 취소된 업체였음이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현장 경호를 맡은 모 경호회사 대표와 행사를 대행한 주최 측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또한 여러 관계자들에게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참고사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과실치사상이나 과실치사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곧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없고 그것이 과실로 인한 것임을 요한다.

업무상 과실이란 일정한 업무종사자가 당해 업무의 성질상 또는 그 업무상의 지위 때문에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보통과실에 비해 불법 및 책임이 가중됨으로써 중하게 처벌된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죄이다. 이 죄의 주체는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2)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2014년 10월)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공연 중 환풍구 덮개 위에 올라갔던 관객 27명이 환풍구 덮개 붕괴로 18미터 아래로 추락,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검찰은 사고의 원인이 환풍구가 애초 도면보다 부실하게 시공된 점, 행사현장에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있던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 13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행사 주최·주관사인 이데일리TV 총괄본부장과 시공업체 관계자 등 5명에게 금고 1~2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업체 대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지원본부장 등 4명에 대해 금고를 선고하고 형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사 주최자들의 경우 대규모 행사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접근 차단 벨트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행사 주최자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전도하기도 했다는 점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고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2 한국소비자원에 명시된 분쟁해결기준 중 티켓 환불규정<sup>13)</sup>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티켓구매자에게 티켓구매 비용을 환불해 주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그 중 공연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되거나 공연이 중단된 경우, 입장료를 전액 환불해 주거나, 입장료의 10%를 배상해 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시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기준이며, 보장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다른 법령에 의한 분쟁해결 기준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의한 분쟁해결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공연업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                                |                       |                                             |
|------------------------------------------------------|--------------------------------|-----------------------|---------------------------------------------|
| 분쟁유형                                                 |                                | 해결기준                  | 비고                                          |
|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일이 연기되어 고객이 입장료의 환불을 요구할 때               |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 입장료 환불 및 입장료의 10% 배상  | 관람권을 할인 판매한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는 사업자가 입증함 |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 입장료 환불                |                                             |
| 관객의 환불 요구 시                                          | 공연일 10일 전까지                    | 전액 환불                 |                                             |
|                                                      | 공연일 7일 전까지                     | 10% 공제 후 환불           |                                             |
|                                                      | 공연일 3일 전까지                     | 20% 공제 후 환불           |                                             |
|                                                      | 공연일 1일 전까지                     | 30% 공제 후 환불           |                                             |
|                                                      |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 90% 공제 후 환불           |                                             |
|                                                      | 단,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 전액환급(비영업일은 시간계산에서 제외) |                                             |
| 공연 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br>(중요 출연자 교체, 예정 공연시간 1/2 이하 공연 등) |                                | 입장료 환불 및 입장료의 10%배상   |                                             |
| 공연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 전체 공연 관람                       | 입장료의 10% 환불           |                                             |
|                                                      | 공연중단                           | 입장료 환불 및 입장료의 10% 배상  |                                             |
|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 자가 관람시간 표기 오류로 인하여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                                | 입장료 환불 및 입장료의 20% 배상  |                                             |

13)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odr/pg/pi/osPgBjResolvW.do>

### 3 사후조치 관련 보험

#### 1) 화재보험

##### ① 가입대상

- 건물 및 부속 설비
- 시설, 집기비품
- 재고 자산

##### ② 상품내용

- 기본
  - 화재손해 (벼락포함)
  - 소방손해
  - 피난손해
- 선택
  - 구내폭발
  - 파열담보
  - 구내냉동냉장담보
  - 도난위험담보
  - 풍수재 담보
  - 기업휴지담보
  - 전기위험담보

##### ③ 가입 시 필요한 서류

- 목적물별 보험가입금액
- 건물의 구조, 층수, 면적
- 업종

##### ④ 화재보험 예시

- 전기과열로 인한 합선, 공연이 끝나고 무대 밖으로 나오는 도중 조명장치 폭발로 인한 많은 인명사고
- 방화, 건물 내 위치한 무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발생한 인명사고
- 화재사고로 인해 무대 및 건물 손상

- 전기배선으로 인한 화재발생으로 내부시설 전소
- 무대효과 불꽃으로 인해 관객 화상사고
- 오랜 시간 이용하지 않아 생긴 누전 및 발열로 인한 화재발생
- 과도한 전기 사용, 로비에 전시되어 있는 전구장식을 장시간 사용하여 발생한 화재사고

## 2) 상해보험

### ① 가입대상

- 본인 상해
- 종업원 상해

### ② 상품내용

- 기본
  - 일상생활 중 피보험자의 상해담보
- 선택
  - 교통 상해담보
  - 취업 중 상해담보
  - 입원비담보
  - 휴업보상금 담보
  - 기타

### ③ 가입 시 필요한 서류

- 본인 및 종업원의 신상명세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④ 상해보험 예시

- 계단을 이용하던 어린이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머리 부상
- 정수기 밸브를 잘못 눌러서 뜨거운 물에 화상 부상
- 어린이 놀이방에서 자원봉사자가 건넌 사탕이 아이의 목에 걸린 사고
- 객석 입구 출입문을 열다가 손가락이 끼여 골절상
- 공연 중 출연자가 던진 물건에 얼굴을 맞아 부상 발생
- 출입문 쪽으로 관객들이 한 번에 몰려 10여명 학생 압사
- 우천 시 공연 중 출연자가 넘어지면서 경상
- 무대에서 행사 준비 중 1.5m 바닥으로 추락하여 발목 부상
- 공연철수 중 미끄러지면서 추락하여 업체 직원 사망

- 조명 포커싱 중 유압사다리 전복으로 다리와 어깨, 골반 골절로 입원

### 3) 도난보험

#### ① 가입대상

- 동산, 현금, 유가증권 등

#### ② 상품내용

- 기본
  - 불법침입자
  - 절도
  -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손해 (훼손, 망가짐, 파손 포함)
- 선택
  - 운송위험 담보
  - 보관시설 파손담보

#### ③ 가입 시 필요한 서류

- 보관중인 금액 (보험가입 금액)

#### ④ 도난보험 예시

- 점포 내 보관 중이던 금전을 도난당함
- 강도가 침입하여 현금을 강취해감
- 내부 계단에 묶어 보관하던 자전거를 도난당함

### 4)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 ① 가입대상

- 가스사용 시설

#### ② 상품내용

- 피보험자(가스사업자, 용기 등 제조업자, 가스사용자)가 보험기간 중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법률상의 배상책임 담보

③ 가입 시 필요한 서류

- 사용가스의 종류
- 사용용량/월 예정 사용량
- 사용시설의 면적
- 지하 소재 여부

④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예시

-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사고

5)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① 가입대상

- 시설

② 상품내용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르는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

③ 가입 시 필요한 서류

- 병상 수(병원)
- 객실 수(숙박업)
- 좌석 수(극장)
- 기타시설(면적)

④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예시

- 엘리베이터 추락사
- 객실 샤워장에서 넘어져 다쳐 법률상 배상책임 부담
- 무대 준비 중 스피커 연결고리가 끊어져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직원 사망 및 부상
- 공연장 시설물 결함으로 인해 2층 객석 관객 추락사고
- 천장의 석고보드가 떨어져 관람하던 관객 부상
- 오케스트라 피트 추락사고
- 무대 세트 목재 낙하사고로 인한 부상
- 체육관 붕괴사고로 인한 인명사고
- 환풍구 덮개 붕괴사고로 인한 인명사고
- 에스컬레이터 이용 중 갑작스런 작동중지로 다친 경우

## 6)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 ① 가입대상

- 주차시설

### ② 상품내용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르는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

### ③ 가입 시 필요한 서류

- 주차장의 유형 (옥내, 옥외, 기계식, 리프트)
- 시설내역 (면적 등)
- 주차대수

### ④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예시

- 본인 차량으로 걸어가다 타 차량에서 흘러나온 기름을 인지 못하고 미끄러져 넘어져 손목 골절
- 종업원이 주차대행 업무를 하기 위해 고객차량을 후진하다 주차되어 있던 다른 고객의 차량을 충격
- 차량 주차 후 퇴근을 위해 주차장에 가니 차량 운전석 후면 트렁크 부분이 파손되어 있는 사고
- 높이 제한 표시가 안 된 지하주차장에 지프형 차가 진입하다가 차체가 지붕에 부딪혀 파손된 경우
- 기계식 주차기에 주차하던 도중 차가 완전히 입고되지 않았는데 문이 닫혀 차량 앞쪽에 파손된 경우



공연 관객 위기 대응 및  
관리 매뉴얼



## 제7장   응급처치 요령

1. 응급처치
2. 응급환자 관리 및 평가
3. 심폐소생술
4. 응급상황별 응급처치법
5. 환자이송



응급상황에서의 신속 정확한 응급처치는 응급환자의 죽음을 삶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응급처치의 시행 정도와 원칙에 따라 부상자나 환자의 소생 확률은 높아지고, 장애의 가능성도 낮아진다. 따라서 하우스매니저는 적절한 응급처치로 부상자나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상처나 질병의 악화 및 추가손상을 방지하고 장애를 줄이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와 응급의료체계를 잘 숙지해야 한다.

## 1 | 응급처치

### 1) 응급처치의 기본개념

#### (1) 응급처치의 정의

응급처치는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적절한 처치와 보호를 해주어 고통을 덜어주고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는 처치를 말한다. 즉, 119 신고 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장애를 경감시키며 치료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 (2) 응급처치의 목적

- ①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한다.
- ② 통증을 감소시키며 손상의 악화를 방지하여 장애를 경감시킨다.
- ③ 응급환자의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회복을 돕는다.

### 2) 응급처치의 원칙

응급처치는 어디까지나 병원 전 단계인 임시적인 처치로서 다음 사항들을 명심하고 시행한다.

-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환자에게 자신이 응급처치자임을 알린다.
- 원칙적으로 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 빠른 시간 내에 전문 응급의료진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한다.
- 응급환자에 대한 생사 판정을 하지 않는다.

### ① 현장조사(check) 및 구조요청(call)

- 현장의 안전 상태와 위험요소를 확인한다.
- 사고 상황과 환자 및 부상자의 수를 파악한다.
- 응급처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한다.
- 구조 요청: 현장조사와 동시에 응급의료체계(119)에 신고(6하원칙)한다.
- \*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119(재난), 112(범죄), 110(민원상담)

### ② 응급처치 시행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지 평가한 후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 심장, 폐, 뇌, 척추 등 생명이 위급한 판단부위의 평가가 중요하며 자신이 응급처치자임을 알려준다. 이때 환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환자의 눈을 보면서 반응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설명한 뒤 환자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 주변안전을 유지하면서 구조를 요청하고 차량 및 구경꾼 통제, 그리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부상자나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현장의 업무를 분담시키고 자신은 심폐소생술 및 기본 외상 처치술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필요 시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 【참고사항】 119 구조대 정보 전달 사항

1. 환자가 발생한 장소의 주소
2. 가까운 거리에 있는 큰 건물 (빌딩, 은행, 관공서 등)
3. 질병 또는 사고 상태 등
4. 지속적으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교육받은 행위만 시행하며 지속적인 응급처치 시행 후, 응급의료진이 도착하면 환자 상태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준다.
- 호흡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기도에 이물질이 있다면 제거하고 호흡을 위해 문제가 없도록 한다.
- 관객의 호흡을 확인하고 호흡이 없다면 보조하도록 한다. 호흡을 확인할 때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확인하고 관객의 입과 코 주변에서 호흡이 있는지 귀로 확인하도록 한다. 호흡이 없을 경우 흉부 압박을 시행한다.

### ③ 응급처치 시 법적인 문제 - 선한 사마리아인 법(good Samaritan law)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의료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이지만 이 법을 확대하여 응급처치자가 응급처치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도움을 주고 격려하는 법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처치 행위를 할 때
- 올바른 신념에 따라 좋은 의도로 응급처치를 할 때
-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을 때
- 부상자에게 지나친 과실을 범하지 않고 합리적인 응급처치를 할 때

## 2 응급환자 관리 및 평가

응급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히 대처함으로 응급처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상에 따라 응급환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할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응급증상이 나타난 후부터 전문처치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응급환자의 소생과 예후에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시간을 ‘황금시간(Golden time)’이라 한다.

### 1) 응급환자 관리

#### ① 응급환자(Emergency patient) 관리의 기본 개념

응급상황에 직면한 사고자나 응급 환자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흥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안정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언행이 요구된다. 응급처치 시 환자의 눈을 보면서 접근하고 가능하면 현장의 상황과 처치할 내용을 정직하게 알려준다. 환자에게 경어를 사용하고 정확한 발음과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사 전달을 하고, 긴장을 풀어주면서 편안한 상태를 취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응급환자를 처치하기에 앞서 자신의 감염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 ② 감염 예방 및 기본보호장비 착용

모든 응급환자는 잠재적인 감염질환이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환자를 통한 감염으로 질병을 얻게 될 위험은 아주 낮지만, 감염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해야 하고, 그 예방에 노력해야 하며, 현장 상황이 불가피할 경우 처치 후 감염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감염은 혈액의 포함 여부와 관련 없이 혈액, 체액, 분비물에 의해 전파될 수 있다. 따라서 보호장갑이나 비닐장갑은 필수이며, 환자에게 출혈이나 다른 체액이 있을 경우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포켓마스크 등을 사용한다.

##### 〈감염예방을 위한 원칙〉

- ① 가능하면 체액과 직접 접촉을 피하도록 한다.
- ② 손을 씻고 보호 장갑을 착용한다.
- ③ 흡수가 잘 되는 재질로 혈액과 체액을 닦아내며 감염(혈액, 체액)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 ④ 전문 응급의료진이 도착하면 도움을 받아 오염된 곳을 깨끗이 살균한다.  
현장에 아무것도 없을 경우는 오염된 곳을 물로 세척한다.

## 2) 응급환자 평가

### ① 1차 평가(primary assessment)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점을 찾아내는 단계로 치명적인 손상을 빨리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기도유지(A) - 호흡평가(B) - 순환평가(C) - 의식장애평가(D) 순서로 시행된다.

### ② 2차 평가(secondary assessment)

1차 평가에서 생명의 위협요소가 없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라고 판단되면 이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밀 신체검진을 실시하여 세부적인 환자상태를 평가하고 활력징후와 환자의 과거병력을 파악한다.

- 일반적인 신체검사(보고 만지기로 간단하게 평가)

환자가 주로 호소하는 통증부위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손상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변형 여부와 부종, 개방된 상처가 있는지 확인한다.

- 동공 검사(pupil reflex)

동공은 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울이자 환자 평가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동공을 관찰하고 그 반응을 살핍을 중요한 신경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동공은 동공의 양쪽 크기와 대칭성, 두 동공이 동시에 적절히 반응(수축)하는가를 평가한다.

- 세부적인 신체검사

머리와 얼굴의 시진과 촉진부터 시작하여 목, 가슴, 복부, 골반, 팔과 다리, 등(몸통 뒤)의 순서로 세부적인 신체검사를 시행한다.

### 3 심폐소생술

인체의 모든 세포는 생존하려면 반드시 산소가 필요하다. 특히 뇌세포는 4~6분 이내에 산소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괴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심정지 후 4~6분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뇌세포는 손상되기 시작한다. 또한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기게 되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심정지를 목격했을 경우에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 1) 성인 심폐소생술

##### (1) 반응의 확인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구조자는 현장상황이 안전한지를 우선 확인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본다. 이때 쓰러진 사람이 반응이 있다면 대답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신음소리를 낼 것이다. 쓰러져 있는 사람의 머리카락의 외상이 의심되면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손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한다. 반응을 확인할 때 숨을 쉬고 있는지 없는지, 숨을 쉬고 있다면 이 호흡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 (2) 119 신고와 도움 요청

쓰러진 사람이 반응이 없고,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호흡을 하고 있다면, 심정지 상태라고 판단하고 즉시 119에 신고한다. 심정지 환자를 목격한 경우에는 주변에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하여 다른 사람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만약 신고자가 자동제세동기 교육을 받은 구조자이고 주변에 자동제세동기가 있다면 즉시 가져와 사용하며, 이후 순서에 따라 소생술을 시행한다. 이때 두 명 이상의 구조자가 현장에 있다면 한 명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 명은 119에 신고하고 자동제세동기를 가져오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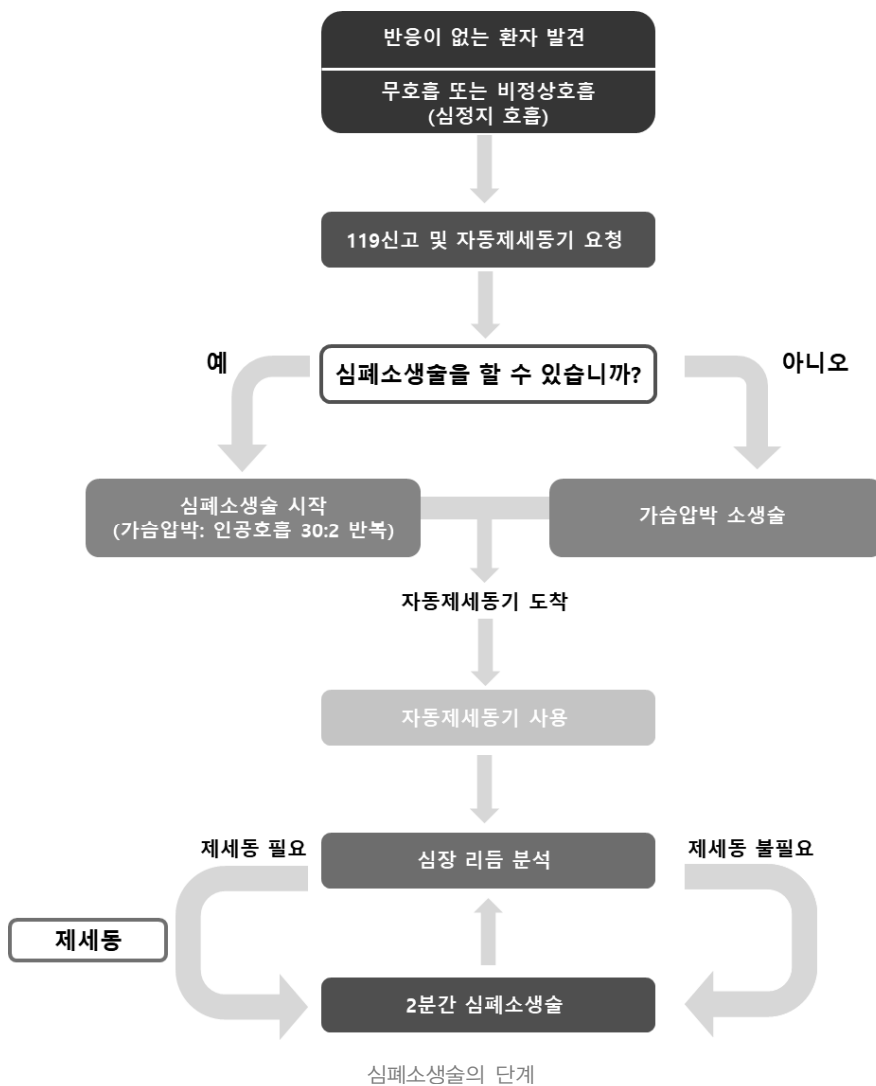
119 신고를 할 때 응급의료상담원에게 알려주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응급 상황이 발생한 위치(가능하면 사무실 이름, 방의 호수, 도로나 거리이름)
- ② 응급상황의 내용(심장발작, 자동차사고 등)
- ③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수
- ④ 환자의 상태
- ⑤ 환자에게 시행한 응급처치 내용(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 등)
- ⑥ 응급의료상담원에게 다른 질문은 없는지 확인하고, 구조자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심폐소생술 시행에 자신이 없다면 응급의료상담원의 지시를 따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구조자는 응급의료상담원이 전화를 끊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전화지시를 따르며 심폐 소생술을 계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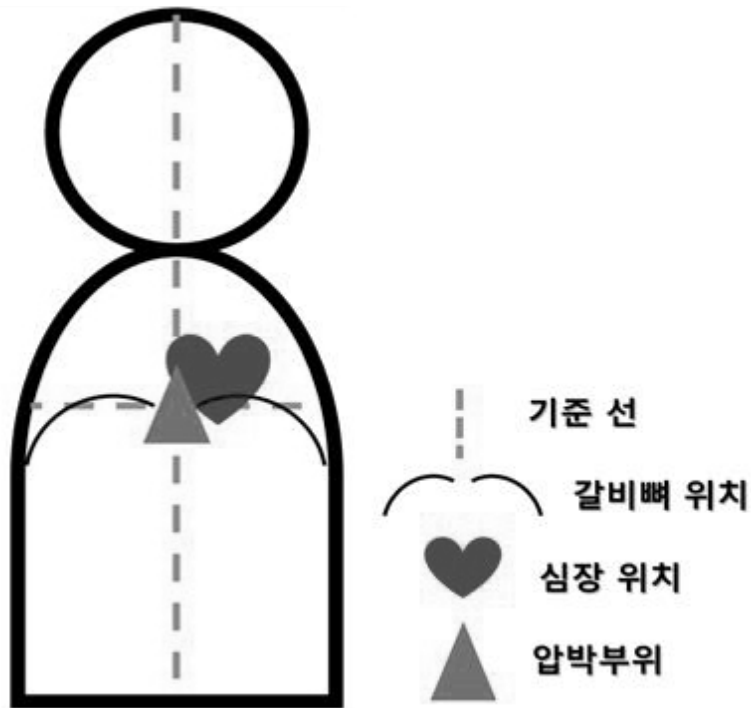
### (3) 가슴압박

심정지가 의심되면 즉시 가슴압박을 시작해야 한다.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2이다.



① 가슴 압박을 30회 실시한다.

관객의 가슴 중앙에 가슴 압박을 실시하며 이때 손은 양손을 깍지 끼고 위에 올린 손으로 아래의 손가락을 깍지 끼며 잘 잡아준다. 이때 손바닥 중 아래 부위로만 관객의 흉골 부위에 실시하며, 두 손과 몸을 수직이 되게 하여 체중을 실어 가슴압박을 30회 실시하며 팔꿈치가 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심폐소생술 시 압박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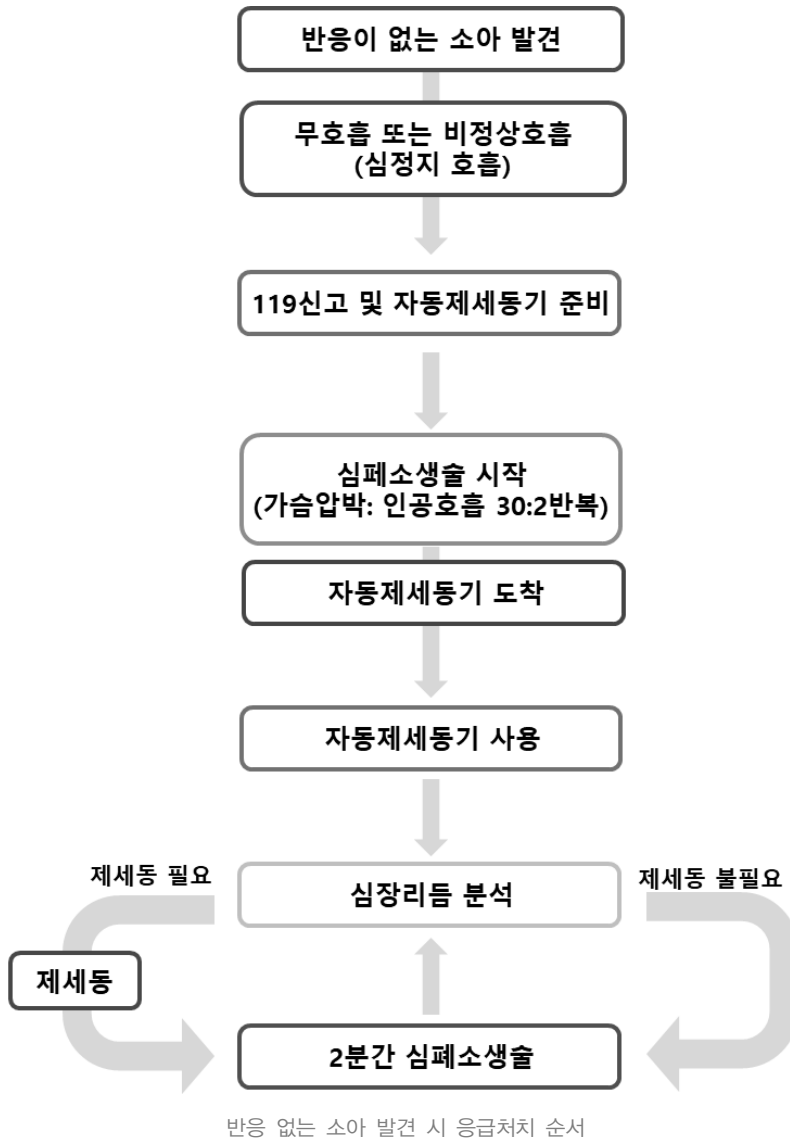
②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가슴압박 30회 실시 후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인공호흡을 실시하기 전에 관객의 머리를 젖혀서 기도를 확보하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하며 2회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③ 자동 심장충격기나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여 실시한다.

가슴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로 반복하여 실시한다.

## 2) 소아 심폐소생술



① 소아 환자 발견 시 주변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환자의 의식과 호흡을 확인한다.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양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걸고 눈과 귀로 심정지와 호흡의 여부를 확인한다. 의식이 없고 호흡 또한 정상적이지 않거나 무호흡일 경우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② 119 신고와 자동 심장충격기를 요청한다.

주변의 직원에게 119에 신고를 요청한다. 그리고 직원 또는 주변 사람에게 자동 심장충격기를 요청한다. 이때에도 특정 한 사람을 지목하도록 한다.

공연장 내에 자동 심장충격기가 구비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사전에 파악해둔 주변 지하철이나 공공시설물에 요청하여 가져와 사용하도록 한다.

③ 가슴 압박을 30회 실시한다.

가슴압박부터 성인과 소아, 영아의 심폐소생술 방법이 조금 달라진다. 압박의 위치는 양쪽 젖꼭지 사이의 정중앙 위치에서 바로 아래 부분에 실시하며, 시술자는 양손이 아닌 한손의 손바닥의 아래 부분만 소아의 흉골부위에 접촉하여 실시한다.

이때 성인 심폐소생술과 동일하게 시술자의 어깨가 수직이 되도록 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도록 한다. 영아의 경우에는 손바닥이 아닌 손가락 중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모아 첫마디 정도만 영아의 흉골에 접촉되도록 실시한다.

④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가슴압박 30회 실시 후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인공호흡을 실시하기 전에 환자의 머리를 젖혀서 기도를 확보하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하며 2회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인공호흡이 어려울 시 가슴압박만 실시한다.

⑤ 자동 심장충격기나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여 실시한다.

가슴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로 반복하여 실시한다.

### 3)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 AED)

자동제세동기는 응급 구조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조금의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장비로 법적인 조치가 마련되었다. 심정지의 흔한 원인인 심실세동이나 무맥성심실빈맥은 자동제세동기(AED)를 조기에 사용하면 소생률이 높아지게 되며,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이 장비들을 비치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리나라도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장소에 의무적으로 구비할 수 있도록 법정 구비의무 대상을 지정해 놓고 있다.

응급처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이 먼저 기본 생명소생술을 시행하고, 나머지 응급처치자가 자동 혹은 수동제세동기를 가져와서 가능한 빨리 제세동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제세동기의 전원을 켜다.

자동제세동기가 도착하면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자리에 놓고 전원을 켜다. 이때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말고 심장 리듬을 분석하기 전까지 계속 실시하도록 한다.

## ② 음성이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패드를 부착한다.

자동제세동기의 전원을 켜면 음성으로 절차에 대해 안내해준다.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 우선 패드를 부착하는데 이때 패드에 부착의 위치가 그림으로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의 패드에 각각의 부착 위치에 맞게 부착하도록 한다.

패드는 상체를 노출시킨 후 부착하며 하나의 패드는 환자의 우측 쇄골 아래에 부착하고 다른 하나의 패드는 좌측의 유두 밑의 바깥 부위 (거드랑이 아래 부분)에 부착한다. 부착하는 부위에 땀 등 이물질이 있다면 제거하고 부착하도록 한다.

## ③ 패드의 연결선을 기계에 연결하고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기계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접촉 금지”라는 말이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환자와 닿지 않도록 떨어진다.

## ④ 제세동이 필요할 경우 버튼을 누르라는 안내에 따라 제세동 버튼을 누른다.

기계에서 심장 분석이 끝나고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세동 해야 합니다. 충전 중,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등의 음성이 나온다. 음성에 따라 환자에게서 떨어지고 기계에서 “지금 제세동 실시하세요. 충격버튼을 눌러주세요.”라고 나오면 버튼을 누른다. 이 다음 기계에서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중지되었습니다. 필요할 경우 심폐소생술 시작하세요.” 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면 다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자동제세동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기계에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십시오”라는 음성안내가 나오고 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지속한다.

보통 자동제세동기는 2분마다 심장리듬을 분석한다.

## 4 응급상황별 응급처치법

### 1) 근골격계 손상(부목 사용법)

근골격계 손상은 직접적으로 환자의 생명과 연관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사고 후에 큰 장애를 남길 수 있다. 골절, 탈구, 염좌 등의 손상을 바르게 인식하고 근골격계의 구조를 잘 이해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숙지해야 한다.

#### (1) 골절(Fracture)

뼈나 관절면이 불완전하게 소실된 것을 말하며, 뼈의 손상으로 인하여 주변 연부 조직 또는 장기 손상이 동반될 수도 있다.

골절은 주로 강한 외부의 힘이 가해지는 외상으로 발생하며, 골다공증, 종양 등으로 인한 병적 골절, 일정한 부위에 반복적으로 스트레스가 가해질 때 발생하는 피로골절 등이 있다.

##### ① 종류 및 증상

골절 발생 부위 주변으로 통증이 발생하며, 골절부위에 체액이 증가하고 출혈로 인해 부종이 나타나거나 피부 표면에 점상 출혈이 발생하기도 한다. 신경이 손상되었을 경우는 감각이상 또는 저린 느낌이 있을 수 있다. 심할 경우에는 장기가 손상되거나 쇼크에 빠지기도 한다.

##### － 폐쇄성 골절

피부가 손상되지 않고 골절 부위 근처에 전혀 상처가 없는 것으로 대부분 골절은 단순 골절이지만 주의 깊게 다루지 않으면 개방성 골절로 발전할 수 있다.

##### － 개방성 골절

뼈가 밖으로 나오거나 피부가 찢어진 골절로 뼈끝이 피부 밖으로 나오면서 상처가 심해진다. 대부분의 경우 혈관이 손상되고 심한 출혈이 동반 된다.

##### ② 응급처치

- － 다친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부목 등을 사용하여 고정시키도록 한다.
- － 환자가 움직일 때에는 골절된 부위를 관절의 위, 아래 관절을 동시에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 － 부목은 골절 부위의 뼈보다 길어야 하며, 환자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부드러운 천 등으로 감싸도록 한다.
- － 관절이나 뼈가 바깥쪽으로 돌출되더라도 이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시도는 삼가야 한다.
- － 척추 또는 골반 뼈 부위는 장기와 가깝고, 혈관이 손상되어 출혈로 이어져 쇼크의 위험도 있

으니 환자를 가급적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킨 후 서둘러 병원으로 후송해야 한다.

## (2) 탈구(Dislocation)

관절의 뼈가 제자리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탈구가 되면 뼈를 연결하는 인대 및 관절 주위의 혈관, 건, 근육 및 신경 역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신경 및 혈관손상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① 증상

흔히 타박을 당하거나 넘어지거나 심한 근육 운동을 할 때 탈구된다. 주로 수지관절, 견관절, 주관절, 고관절, 족관절 등에서 자주 일어난다. 매우 통증이 심하고 관절의 모양이 변하면서 붓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절운동이 불완전하게 되며, 심한 통증을 동반한다.

### ② 응급처치

- 특별한 비상사가 아니면 전문 의료 요원이 아닌 사람이 탈구를 바로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 부상을 부위를 될 수 있는 한 편하게 하고, 찬찜질을 하여 아픔을 가라앉히고, 부종을 막아야 한다.
- 충격에 대한 응급처치를 한다.
- 슬관절 탈구의 부상자를 옮길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베개나 윗도리를 접어서 부상당한 다리의 무릎 밑에 괴어준다.

## (3) 염좌(Sprain)

염좌는 과도한 운동이나 심한 근육활동 혹은 무거운 물체나 부상자를 들거나 이동할 때 발생한다. 손상과 동시에 통증을 느끼면서 손상부위가 아프고 붓기 시작한다. 피부색은 변하지 않으나 곧바로 통증이 그치는 가벼운 정도에서, 인대가 절단되는 심한 경우도 있으며, 보통 염좌와 골절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① 증상

- 손상부위를 누르면 통증(압통)을 호소한다.
- 부종과 반상출혈이 생긴다.
- 통증으로 인한 움직임의 장애가 발생한다.
- 다치지 않은 쪽과 비교했을 때 변형이 있다.
- 골절과는 달리 마찰음은 없다.

## ② 응급처치

- 기도 및 호흡과 순환을 확인한다.
- 손상의 치료에서 초기 응급처치법으로는 RICE(안정-냉찜질-압박-들어올림)방법이 있다. 손상이 발생할 시에는 더 이상의 추가 손상을 막고 손상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 2) 연조직 손상과 출혈(드레싱과 붕대법)

출혈이란 혈액이 동맥, 모세혈관 및 정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하며 외부출혈과 내부출혈로 나누어진다. 출혈은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혈압저하, 의식장애 등으로 저산소증 상태가 되어 출혈성 쇼크 증상이 나타나다가, 결국에는 비가역<sup>14)</sup> 쇼크로 진행되어 죽음까지 초래한다.

드레싱(dressing)은 손상부위 출혈, 감염, 조직손상 등이 계속되지 않도록 외부의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소독하는 것으로, 피부의 기능을 이해하고 부목 고정과 붕대법 사용의 일반원칙을 숙지하여 연조직 손상의 응급처치법에 익숙해야 한다.

### (1) 연조직 손상과 출혈

#### ① 외부 출혈(External bleeding)

개방성 골절부위에서 출혈되거나 피부 심부의 열상에 의한 출혈을 말한다.

##### - 증상

소량의 출혈은 출혈 후 6~10분 이내에 신체의 자율신경인 방어기전과 보상작용으로 지혈된다. 하지만 직경이 큰 혈관이 손상되면 혈액이 멈추지 않으므로 외부적인 응급처치로 직접 압박, 동맥 압박, 지혈대 사용의 방법으로 지혈해야 한다.

##### - 응급처치

- 기도유지 후 경추를 먼저 고정한다.
- 호흡 및 순환 기능을 유지한다.
- 골절 고정 및 척추 고정 후 기타 응급처치를 한다.
-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 - 응급처치 종류

- 직접 압박(국소 압박) 응급처치
- 동맥 압박 응급처치

14) 비가역 : 변화를 일으킨 물질이 본디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성질

- 지혈대 이용 응급처치

## ② 내부 출혈(Internal bleeding)

흉강, 복강 등과 같은 신체 내부에서 출혈되는 것을 말한다. 내부출혈은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려우며 출혈이 상당히 심하거나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응급처치나 이송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쇼크에 빠져 짧은 시간 내에 사망할 수도 있다. 외상 후에 외견상 출혈이 없으면서 쇼크의 징후, 차가운 피부, 모세혈관 충혈 증상이 나타나면 내부 출혈을 의심하면서 현장처치 후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 – 증상

- 맥박이 약하거나 빨라진다.
- 혈압이 저하되고 피부가 차며 축축하다.
- 동공이 확대되거나, 동공반응이 느려진다.

### – 응급처치

- 부상 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손상부위에 대하여 냉찜질을 한다.
- 손상부위를 베개 등을 이용하여 심장 위의 높이로 올릴 수 있도록 한다.
- 필요한 경우 부목을 사용하여 손상부위를 고정한다.

## (2) 드레싱과 붕대법

### ① 드레싱

드레싱은 상처부위에 거즈나 접착밴드를 사용하여 상처가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드레싱은 감염과 출혈 방지, 분비물 흡수를 위해 소독된 것을 사용해야 하지만, 위급한 경우 사고 현장에서 소독 드레싱이 없다면 깨끗한 천을 사용한다. 드레싱은 상처보다 크고 두껍고 부드러우며 상처 위에 골고루 압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 드레싱의 종류

- 거즈 패드: 작은 상처에 사용, 평소 멸균상태, 체액이 많은 화상에 주로 사용한다.
- 접착 밴드: 일회용밴드로 사용, 작게 베인 상처 및 찰과상에 사용한다.
- 외상 드레싱: 크고 두꺼운 흡수성 소재로 소독되어 있지만 살균처리는 안 되어 있다.

### – 드레싱의 방법

- 가능하면 의료용 장갑을 끼고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 상처를 덮을 만큼 충분한 크기를 사용하고 상처 바로 위에 드레싱 한다.
- 멸균 드레싱을 할 수 없다면 상처부위를 깨끗한 천 등을 이용하여 드레싱 할 수 있다.
- 드레싱을 한 후에는 반창고나 붕대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 드레싱의 사용목적

- 지혈 작용 및 감염과 오염을 방지한다.
- 혈액과 체액을 흡수한다.
- 추가 손상으로부터 보호한다.
- 상처 표면의 열에 대한 절연효과를 증진시킨다.
- 상처와 드레싱 간의 높은 습도를 유지시킨다.

－ 드레싱 응급처치의 종류

- 멸균 드레싱
- 거즈 드레싱
- 접착 드레싱
- 손수건을 이용한 현장 드레싱

## ② 붕대법

붕대는 드레싱을 상처에 붙어있게 하거나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천으로 지혈을 위해 상처에 압박을 가하고 부목 및 드레싱을 유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붕대를 적절히 활용하면 상처 회복에 유익하나 붕대를 부적절하게 감거나 매면 환자에게 오히려 불편감만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처가 악화되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할 수 있다.

－ 붕대 사용 목적

- 부목 또는 드레싱을 제자리에 고정시킨다.
- 국부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출혈을 예방한다.
- 부종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킨다.
- 신체의 관절을 고정시키거나 약한 부분을 지지한다.
- 상처의 배출물을 흡수하고 오염을 방지한다.

－ 붕대 이용법

붕대는 기본적으로 상처에 바로 붕대를 사용하지 않는다. 상처 부위에 먼저 소독된 드레싱을 한 후에 붕대를 감아야 한다. 이렇듯 붕대를 이용할 때의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 과하게 조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붕대는 조금 느슨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로 감아도 상당한 압박을 준다. 그렇게 때문에 과하게 감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과하게 조이게 되면 혈액 순환에 장애가 와서 맥박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때에는 즉시 붕대를 풀고 느슨하게 다시 매도록 한다.

- 붕대를 감을 때 말단 부위를 같이 감도록 한다.

팔 또는 다리의 중간 부분에 상처가 났을 경우에는 탄력 붕대를 감을 때 상처 난 중간부분만 감지 말고 그 말단 부위부터 붕대를 감아주어야 한다. 말단 부위부터 감지 않고 중간 부분만 감을 경우 그 말단 부위에 심각한 부종이 발생되며, 심각한 경우에는 구획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 감은 후에 말단부의 혈액 순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붕대를 감은 후에는 정기적으로 피부의 감각 상태와 색깔, 손가락과 발가락의 움직임을 확인하여 변화가 있으면 압박 붕대를 즉시 풀도록 한다.

붕대가 과하게 조일 때의 증상은 아래와 같다.

- 손톱이나 발톱이 푸른색을 띤다.
- 피부가 전반적으로 창백해지거나 파란색을 띤다.
- 손가락과 발가락 등이 저리거나 감각이 없어진다.
- 팔과 다리가 점점 차가워진다.
-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움직일 수가 없다.

- 붕대를 느슨하게 매지 않도록 주의한다.

붕대를 과하게 조이는 것과 반대로 느슨하게 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붕대를 느슨하게 맬 경우 상처에 대 놓은 드레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붕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붕대 끝을 느슨하게 둘 경우 끝이 걸려 풀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손가락과 발가락은 색깔의 변화로 혈액 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붕대를 매지 않는다.

- 붕대를 감을 경우 상처 부위의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가도록 한다.

#### － 붕대의 종류

- 감은 붕대

감은 붕대는 종류가 다양하다. 목, 길이, 소재에 있어 다양하며 신체부위 또는 상처부위에 따라 다른 넓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이즈별로는 손가락에는 2.5cm 이상의 붕대가 적정하며, 손목과 손, 발에는 5cm 이상, 팔과 발목에는 7.5cm 이상이 사용하기 용이하다.

- 탄력 붕대

탄력 붕대는 염좌 또는 좌상 시 압박용으로 사용되며 폭도 다양하며 드레싱 위에 직접적으로 바로 사용하지 않는다.

탄력 붕대가 없을 경우에는 붕대와 모양이 비슷한 넥타이를 사용하거나 탄력 붕대와 비슷한 천을 길게 찢어서 사용할 수 있다.

- 삼각건 붕대

삼각건 붕대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으나 직접 만들 수도 있다. 100cm 정도 되는 무명천을 이용하는데 정사각형 천을 대각선으로 잘라서 두 개의 삼각형 모양의 천으로 만들어 준다.

팔이 다쳐서 어깨에 매야하는 상황에는 접지 않고 삼각건을 펼친 상태에서 어깨에 메서 사용할 수 있으나 상처에 압력을 주지는 못하여 드레싱을 고정할 때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삼각건은 접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삼각형은 가장 긴 변을 밑으로 두고 마주보는 각을 꼭짓점이라 하고 나머지 두 점을 끝점이라고 한다. 넥타이 모양의 긴 붕대를 만들 때에는 꼭짓점

을 밑변의 중앙에 오도록 절반을 접고 한 번 더 반으로 접으면 넥타이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 경우 부목을 고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상처 난 곳의 드레싱 위에 압력을 줄 때도 사용할 수 있다.

#### 〈삼각건 붕대 머리 사용 방법〉

머리에 넓게 상처가 난 상황에 머리에 댄 드레싱을 고정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된다.

- 삼각건에 밑변의 폭이 5cm가 되도록 접는다.
- 접은 부분이 보이게 하여 삼각건의 양 옆을 잡고 밑변의 중앙이 이마의 중앙에 오도록 눈썹 가까이 대고 삼각건 양끝을 머리 뒤로 돌려서 감는다.
- 삼각건의 양끝이 양쪽 귀의 위로 가도록 하여 머리 뒷부분에서 엇갈려 다시 이마 쪽으로 오게 하여 이마 앞쪽 중앙에서 묶는다. 그 다음에 한손으로는 머리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삼각건의 꼭짓점 쪽을 밑으로 잡아 당겨 머리 뒷부분에 핀을 이용하여 고정하거나 묶어서 고정한다. 핀이 없을 경우 꼭짓점 끝을 삼각건이 교차되는 곳의 붕대 밑에 접어서 넣도록 한다.

#### • 접착성 붕대

거즈와 유사하며 신축성이 있다. 폭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접착성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다.

#### • 거즈 붕대

면 소재로 되어 있어 신축성이 없고 뻣뻣하다.

#### • 접착 반창고

접착 반창고는 주로 감은 붕대를 고정하거나 드레싱을 고정할 때 사용한다. 접착반창고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종이 반창고나 특수 반창고를 사용하도록 한다.

### 3) 심뇌혈관질환

#### (1) 급성심근경색

심장혈관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갑자기 막혀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심장근육으로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서 산소 공급이 중단되고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심장 박동이 멈출 수 있다. 심장 발작이라고도 하는데 식생활의 서구화로 급성 심근경색이 사망 원인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 ① 증상

환자의 대부분은 가슴의 통증을 호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증의 원인이 심장의 이상인지, 소화불량과 같은 소화기의 질환에 의한 것인지, 호흡기의 이상에서 유발되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

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환자는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하거나,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다고 하거나 아픈 위치가 가슴의 중앙이 아프다고 하거나 명치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두통, 실신, 호흡곤란 등으로 까지 유발되는 경우도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갑작스럽게 실신이나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까지 있다.

## ② 응급처치

- 환자가 발견되면 바로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 환자의 의복을 느슨하게 해주며 특히 목 주위를 편안하게 해주도록 하고 앉은 자세에서 무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무릎 아래에 쿠션 등을 넣어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 준다. 의식이 없거나 정상 호흡이 아닐 경우에는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도록 한다.
- 환자가 관련 질병에 복용하던 약이 있을 경우 약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 (2) 뇌졸중

뇌졸중은 뇌에 분포하고 있는 동맥혈관이 혈전 등으로 막히거나 터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응급상황을 요하는 질환 중에 하나이다. 뇌에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뇌세포가 순식간에 죽게 되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뇌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뇌졸중은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뇌경색과 뇌출혈 2가지 형태로 나뉜다.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하고 뇌로 가는 혈액이 터져서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한다. 뇌졸중은 빠르게 인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를 6시간 이내에 시행하면 뇌손상을 줄일 수 있다.

### ① 증상

- 얼굴과 팔다리, 특히 몸의 한쪽 부분이 무감각해지거나 힘이 없어진다.
-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 한쪽 또는 양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 팔다리 움직임의 조절이 어렵거나 어지럽고 균형을 잃게 된다.
-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두통을 호소한다.

### ② 응급처치

- 환자가 발견되면 바로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숨 쉬는 통로를 유지하도록 한다.
- 의식을 잃은 관객을 눕힐 때는 머리 밑은 피하고 어깨 바로 밑에 베개나 타월을 말아 괴어주고 머리를 뒤로 젖혀 숨쉬기 쉽게 한다. 이때 머리 밑에 베개를 베면 호흡이 곤란해질 수 있다.
- 의식이 있다면 환자의 머리와 어깨를 약간 올리고 지지한 채로 환자를 눕힌다.

- 구토를 하여 입 속을 이물질이 있거나 의치가 있으면 제거해 주어야 숨쉬기 좋다.
- 목이나 가슴을 조이는 옷을 풀어 순환과 호흡을 원활하게 한다.
- 음식물이나 약(청심환 등)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
- 호흡과 심박동이 멈추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 (3) 당뇨병

인슐린 분비량이 적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을 때 발병하는 병이다.

#### ① 증상

혈당이 올라가면 갈증으로 인하여 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며, 소변량이 늘어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 체중이 빠지게 된다. 오랜 기간 고혈당이 유지되면 망막병증, 신기능장애 등의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혈당이 너무 낮거나 높은 경우에 의식을 잃거나 몸을 떨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등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시에는 아래와 같이 응급처치를 하도록 한다.

#### ② 응급처치

- 저혈당증세가 나타났을 시 사탕이나 설탕물과 같은 단 음식을 먹어야 한다.
- 당분 섭취 후 10분이 지난 후에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당분이 들어간 음식을 다시 제공하도록 한다.
- 15분경과 후에도 호전되지 않으면 응급실로 후송하도록 한다.
-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 쓰러지게 되면 탈수에 빠질 수 있으니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4) 호흡계 질환

### (1) 기도 폐쇄

기도에 이물질 등이 걸려 공기가 폐로 통하는 통로가 막히는 현상을 기도 폐쇄라고 한다. 이러한 기도에 이물질로 인한 폐쇄의 원인은 성인의 경우 대부분이 음식물로 인한 기도 폐쇄이다.

#### ① 증상

기도에 이물이 걸리면 기도가 부분적으로 막히거나 완전히 막히게 된다. 기도가 부분적으로 막히면 호흡이 가능한 상황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 정상 호흡을 할 수가 없다. 호흡이 가능한 경우 질식한 사람에게 우선 기침을 독려하여 이물질이 나오도록 유도한다. 이물질이 나오지 않고 호흡이 더욱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발행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침이 약해지고 제대로 기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숨쉬기도 더욱 어려워지고 입안이나 피부, 손톱이 청회색으로 변하고 숨을 들

이쉬면 날카롭고 높은 소리가 난다.

## ② 응급처치

기도 폐쇄 증상이 보이는 관객이 확인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는 하임리히 요법을 실시하고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도록 한다. 1세 이상의 소아의 하임리히 요법은 일반 성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1세 미만의 영아는 복부 밀어내기가 아니라 가슴 압박을 실시하도록 한다.

### 〈성인 하임리히 요법〉

－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한다.

공연장에 숨쉬기를 힘들어하거나 목을 감싸 쥐고 힘들어하는 관객이 있을 경우 살펴보고 기도폐쇄로 판단되는 경우 우선 119에 신고하도록 한다.

119에 신고 시 꼭 주변의 직원 또는 주변 사람 중 한 사람을 지목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 환자가 기침하도록 유도한다.

환자 스스로가 기침이 가능할 경우에는 직접 기침하도록 도와준다.

－ 복부 밀어내기를 실시한다.

환자의 등 뒤에 서서 한쪽 다리를 환자의 다리 사이에 두고 다른 한쪽 다리는 뒤로 두어 중심을 잡는다. 손은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은 배에 닿도록 놓고 배꼽과 명치 사이에 위치시키고 다른 한손으로는 주먹 쥔 손을 감싸고 배를 안쪽으로 누르며 위쪽 방향으로 5회 당겨준다.

이때 비만이 심한 사람이나 임신부의 경우 배꼽과 명치 사이가 아닌 가슴 부위에 실시한다.

－ 복부 밀어내기를 반복한다.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에는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복부 밀어내기를 실시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 (2) 쇼크

급성 질환으로서 몸의 주요 기관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산소가 부족해져 발생한다. 그 종류로는 심장성 쇼크(심장질환), 출혈성 쇼크(외상으로 인한 대량출혈), 신경성 쇼크(척추손상), 저체액성 쇼크(탈수) 등이 있다.

### ① 증상

피부가 차갑고 창백해지며, 맥박이 약해지고 빨라진다. 또한 호흡이 빨라지고 구역질 또는 구토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심할 경우에는 마비가 생기거나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

## ② 응급처치

- 구토할 경우에는 몸을 옆으로 누울 수 있게 한 후 토사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고 밖으로 토해낼 수 있도록 한다.
- 환자를 눕힌 후 다리를 30cm 이상 올려주고, 만약 머리, 목, 가슴에 손상을 입었다면 다리를 똑바로 둔다.
- 환자의 몸 밑에 담요를 깔아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외상으로 인하여 출혈이 났을 경우 상처 부위에서 선홍색 피가 뿜어져 나온다면 동맥이 손상된 것이므로 환자를 눕혀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상처를 절대 건드리서는 안 되고, 깨끗한 수건 등으로 상처부위를 눌러 지혈하며, 이때도 마찬가지로 심장보다 높이 위치할 수 있게 한다.

## (3) 천식

폐 속 기관지가 예민해진 상태를 말하며, 기관지 염증으로 인한 알레르기 질환이다.

### ① 증상

기관지가 좁아져 숨이 차고 심하게 기침을 하며, 이러한 증상이 반복적이고, 발작적으로 나타난다. 심할 경우 기관지 점막이 부어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숨이 차 위험할 수 있다.

### ② 응급처치

- 심한 기침이나 발작증상을 보인다면, 앉은 자세에서 의자 등에 의지하여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옷이 몸을 조이지 않도록 풀어준 후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한다.
- 흡식 약이나 기관지 확장 흡입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약을 섭취하거나 흡입기를 흡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 5) 이물질

### (1) 눈

#### ① 증상

눈에 무언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눈이 따갑거나 눈물이 난다.

#### ② 응급처치

- 눈의 티는 무리하게 제거하려 하지 말고 흐르는 물에 눈을 씻겨주고 즉시 의사에게 데려간다.
- 눈을 비비거나 불결한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한다.

- 날카로운 물건으로 티를 제거하려 해서는 안 된다.
  - 티는 대개 안검 점막에 붙어있고 하안검 점막에 붙어있는 티를 제거하려면 하안검을 조심하여 아래로 끌어내리고 깨끗한 헝겊의 귀퉁이로 티를 닦아낸다.
  - 티가 상안검 점막에 있으면 조심하여 상안검의 속눈썹을 잡고 환자가 위를 보게 한 다음 잡아당겨 하안검 위에 올려놓으면 티가 하안검으로 옮겨지고 눈물에 의하여 묻어 나온다.
  - 식염수를 씻어준다.
- 이 방법으로 잘되지 않으면 붕대를 느슨하게 하여 눈을 보호한 다음 의사에게 데려간다.

## (2) 코

### ① 증상

이물감에 의하여 통증, 출혈 등이 느껴지거나 코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호흡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 ② 응급처치

- 이물질 제거를 위해 면봉으로 제거를 할 시에는 이물질이 더 들어가거나 손상으로 인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반대편 콧구멍을 막아 세게 코를 풀어 이물질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 코를 풀 시에 너무 세게 풀면 고막이 찢어질 수 있으니 주의한다.
- 출혈이 있다면 이물질 제거 후 압박을 하여 지혈을 하고 거즈를 넣어 출혈이 멈출 수 있게 한다.

## (3) 귀

### ① 증상

귀 속에 무언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통증이 생기거나 잡음을 유발할 수 있다.

### ② 응급처치법

- 벌레가 귓속에 들어가거나 귓속으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 귀에 습기가 차거나 하면 이물질이 부풀어질 경우 빼내기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 귓속의 이물질은 바늘이나 철사로 빼지 말고 처음부터 상황이 어려울 경우 의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

## (4) 목

### ① 증상

기도 폐쇄로 인해 숨이 차거나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쉹쉹거리는 증상이 있을 수 있다.

## ② 응급처치

- 토하게 하거나 손을 넣어 이물질을 꺼내는 행위는 위험하므로 삼가야 한다.
- 하임리히법
  - 환자의 등 뒤에서 손에 주먹을 쥐어 배꼽과 명치 중간정도에 위치시켜 엄지손가락을 배에 닿도록 위치시킨다.
  - 다른 한손으로는 주먹을 감싸 팔에 힘을 강하게 주어 배를 누르고, 위쪽으로 5회 당겨준다.
  - 이물질을 뱉어낼 때까지 반복한다.

## (5) 소화기

식도, 위, 대장에서 이물감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 ① 증상

- 식도 : 침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거나 호흡곤란이 올 수 있다.
- 위 : 증상이 없으나 이물이 뱉출할 경우 천공이 발생해 복막염이나 종격동염을 일으킬 수 있다.
- 소화기 : 뱉출한 이물이 있을 경우는 천공을 유발할 수 있다.

## ② 응급처치

- 이물을 없애기 위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이물질에 의한 손상을 가중시키므로 음식물 섭취를 금한다.
- 현장에서 가능한 응급처치는 제한적이므로 최대한 서둘러서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한다.

## 6) 흉통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가슴부위에서 느껴지는 통증을 말하며,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이다. 이는 원인에 따라 임상적 중요도 및 경과가 매우 다르다.

### ① 증상

#### - 폐질환에 의한 흉통

맥박이 빨라지고 숨이 차며, 심한 기침을 하며 가슴 쪽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낀다. 심할 경우에는 호흡이 곤란해지고, 각혈을 할 수도 있다.

#### - 소화기 질환에 의한 흉통

화끈거리는 통증을 느끼며, 술을 마신 후, 식사를 마친 후 심해질 확률이 높다.

## ② 응급처치

- 진통제를 섭취한 후 편안한 자세로 쉴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속이 쓰리다면, 소화제나 제산제 등을 섭취해도 된다.
- 통증이 심하고, 숨이 차며 어지러움 유발할 때에는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동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7) 출혈

### (1) 출혈

혈관 손상으로 인하여 혈액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손상된 혈관을 막으면 지혈이 된다.

#### ① 증상

혈액이 피부 바깥으로 나오거나 피부 안쪽에 고이기도 한다. 혈소판과 혈액응고인자에 문제가 있는 환자라면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더 자주 일어나며 지혈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② 응급처치

- 출혈이 심하지 않을 경우는 상처 부위를 천 또는 거즈로 눌러 압박하여 지혈하도록 한다.
- 출혈이 심하거나 지속될 경우 쇼크의 위험이 있으니 서둘러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한다.

### (2) 비출혈

#### ① 증상

흔히 코피라고도 불리며, 비교적 일어나는 경우가 흔하다. 피가 코에서 흘러내리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후방 비출혈 같은 경우는 피가 뒤로 넘어가 목구멍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 ② 응급처치

- 코피가 나면 앉은 자세로 코끝을 꼭 잡고 고개를 앞으로 숙인 채 2~3분간 안정한다.
- 찬 물수건을 코 위에 대어주고 목 주위의 의복을 느슨하게 한다.
-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소독한 거즈로 콧구멍을 막되, 거즈 끝이 밖으로 나오게 하여 후에 꺼내기 쉽게 한다.
- 출혈이 계속될 경우에는 빨리 응급의료서비스 기관에 도움을 청한다.
- 코를 세게 풀지 말고 환자가 피를 삼키지 않도록 하며 코로 호흡하지 말고 입으로 호흡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8) 상처

### (1) 증상

#### ① 타박상

둔한 물건에 타박 또는 압박되거나 혹은 면에 부딪혔을 때 생기는 상처이다. 흔히 조직의 파괴를 초래하여 출혈이 작은 관계로 혈액에 의해 병균이나 더러운 물질을 씻어내지 못하여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

#### ② 찰과상

피부나 점막이 심하게 마찰되든가 또는 몹시 굵힘으로써 생긴 상처인 찰과상이 있다. 출혈은 심하지 않으나 감염되기 쉽다.

#### ③ 관통상

못, 바늘, 철사 혹은 총알 등에 찔리거나, 조직을 뚫고 나간 상처로, 그 부위가 좁고 깊어 소독하기 곤란하다. 출혈은 많지 않아도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 출혈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균의 침입을 막아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응급처치

출혈을 억제하려고 할 때 감염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몇 개의 드레싱이나 라텍스 장갑, 또는 플라스틱 랩 조각과 같은 보호용 물건을 사용한다. 한 부상자를 치료한 후에는 다른 부상자를 대하기 전에 상호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갑을 바꾸어 끼거나 손을 반드시 씻는다. 또한 상처를 손이나 깨끗하지 않은 헝겊으로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엉키어 뭉친 핏덩어리를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 흙이나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는 깨끗한 물로 상처를 씻어주고 소독된 거즈를 상처에 대고 드레싱을 한다.

출혈이 심하면 즉시 지혈을 하고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여 안정을 취하게 한다. 출혈이 멎기 전에는 수술을 받게 될지도 모르니 음료를 주지 않아야 한다. 지혈방법은 직접압박, 지압점압박 등이 있다.

#### ① 직접압박

직접압박은 손상된 곳과 심장 사이에서 동맥이 뼈 가까이 지나는 곳의 동맥을 뼈에 압박함으로써 혈류를 늦춰 출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거즈나 기타 깨끗한 헝겊을 두겹게 접어 상처 위에 대고 직접 누르고, 봉대로 단단히 감아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 헝겊이라도 접어 상처에 덮 부분을 간이 소독한 후 직접 압박한다.

## ② 지압점 압박

지압점 압박은 항상 직접압박과 동시에 취하는 조치 방법으로, 동맥에 손상이 있으면 상처로부터 많은 피가 내뿜듯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직접압박으로 지혈이 되지 않을 경우에 지압점 압박을 병행한다.

## ③ 외부출혈 지혈방법

- 직접압박을 한다.
- 상처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한다. 만약 골절이 의심되거나, 높이는 것이 부상자를 아프게 할 것 같으면 상처부위를 움직이지 않는다.
- 지압점 지혈은 직접압박을 하면서 상처부위를 높여주고 상박동맥을 찾아서 상박 뼈에 상박동맥을 양쪽에서 압박한다.
- 압박붕대를 감고, 상처에 대준 드레싱 위에 붕대를 감는다.
- 붕대가 완전히 덮이도록 감은 부분이 겹치게 하고 드레싱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한다.
- 붕대를 양쪽으로 갈라서 묶는다.
- 붕대가 너무 팍 조이지 않는지 확인한다.

# 9) 절단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인체의 부분이 잘리는 것을 말하며, 당뇨병 등의 병, 사고 등에 의해 절단하는 경우가 많다.

## ① 증상

절단 부위와 심각성에 따라 출혈이 심하여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

## ② 응급처치

- 환자를 편안하게 누울 수 있도록 하고, 출혈 부위를 지혈시킨다.
- 지혈시킬 때는 병원에서 재접합 수술을 해야 하므로 지혈제 등을 절단 부위에 뿌려서는 안 되며,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위에 위치시키도록 한다.
- 절단된 부위를 마른 거즈로 감고 비닐에 얼음과 함께 넣어 보관하는데, 이때 얼음이 직접적으로 절단된 부위에 닿아서는 안 된다.

## 10) 기타 응급처치

### (1) 인사불성

#### ① 증상

뇌빈혈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주변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주위가 캄캄해지며,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

#### ② 응급처치

원인을 알 수 없는 인사불성에 대한 응급처치

– 얼굴이 붉은 인사불성

- 주요증상은 얼굴이 붉고 맥박이 강한 것이다.
- 환자를 바로 눕히고 머리와 어깨를 약간 높여 안정을 시킨다.
- 목의 옷깃을 느슨하게 해주고 머리에 찬 물수건을 대어 식혀준다.
- 환자를 병원으로 보낼 필요가 있으면 눕힌 자세대로 주의하여 운반하고 만약 구토를 하면 얼굴을 옆으로 돌려준다.

– 얼굴이 창백한 인사불성

- 주요증상은 얼굴이 창백하고 맥박이 약한 것이다.
- 충격에 대한 응급처치를 한다.
- 환자는 머리를 수평이 되게 하거나 다리를 높여 안정되게 눕히고 따뜻하게 보온한다.
- 환자를 옮길 필요가 있으면 눕힌 상태로 주의하여 조용히 옮긴다.

– 얼굴이 푸른 인사불성

- 얼굴이 창백한 인사불성의 증상 위에 호흡이 부전되어 얼굴색이 파래진 것이다.
- 응급처치로는 구조 호흡과 충격에 대한 처치를 한다.

### (2) 졸도

기절해서 넘어지는 것으로서 직접적인 원인은 뇌의 혈액순환이 불충분하여 뇌빈혈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 ① 증상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맥박이 느려지고 현기증이 난다고 말하며 실신하게 된다.

## ② 응급처치

- 증상이 나타나면 환자의 머리를 낮춰서 눕히면, 넘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 장소가 누울 수 없는 경우에는 선 자세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머리를 양 무릎 사이까지 내려 피가 뇌로 많이 흐르도록 함으로써 졸도를 방지할 수 있다.
- 졸도로 땅위에 넘어지면 졸도 외에 다른 손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졸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 환자의 머리와 몸을 수평으로 눕히고 다리를 높여주고 옷깃을 느슨하게 하여 뇌로 피가 잘 흐르도록 하면 대개 잠시 후에는 회복된다.
- 환자의 의식이 회복되면 차나 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 (3) 간질

간질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일어난다. 때로는 본인이 발작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는 경우도 있으나 발작을 예방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

## ① 증상

얼굴색이 창백해지고 눈이 뒤집히며 때로는 환자가 이상한 큰 소리를 지르며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며 근육에 경련이 심하고 얼굴색이 파래지며 입에서 거품이 나온다. 환자가 실금(무의식중에 대소변을 본다)하는 경우가 많다. 발작은 일반적으로 불과 수분 간 계속된 뒤 퍼런 기가 가시며 인사불성 상태에 들어가거나 혹은 회복된다. 그러나 발작이 더 길게 계속되는 수도 있다.

## ② 응급처치

- 근육의 경련을 막으려고 환자를 붙잡거나 하여서는 안 되며, 다만 환자의 부상만 예방한다.
- 부드러운 물건을 환자의 머리와 어깨의 밑에 넣어주고 주위의 물건들을 치운다.
- 음료를 주지 말고 환자가 의식을 잃고 안정되게 있거나, 잠이 들어 있을 때에는 회복할 때까지 그대로 둔다.
- 만약 깨우면 발작이 재발되는 수가 있다.
- 심한 부상이 없는 이상 발작만으로는 생명의 위험성이 없다.

## (4) 발작

병증세가 갑자기 일어났다 짧은 시간에 사라지는 일을 말하며, 간질 또는 마비 증세 등에서 볼 수 있다.

## ① 증상

- 복합 부분 발작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있거나 주변을 서성이거나 혼자 중얼거리기도 한다. 또는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고, 입맛을 다시거나 물건을 만지작거리는 증상을 보인다.

– 전신성 강직 – 간대성 발작

강직성 시기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온 몸이 뻣뻣해진다. 이후 간대성 시기에는 사지를 썰룩거리고, 발작이 멈춘 후에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천천히 회복되고 이 시기에 두통이나 온몸에 근육통을 느끼기도 한다.

– 가성 발작

얼굴, 손, 발 등이 저리거나 뻣뻣해지며, 엉덩이를 들썩이거나 팔다리를 마구 휘젓기도 한다.

② 응급처치

- 옷을 여유롭게 풀어주고, 그대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발작을 심하게 일으킬 경우에는 혀를 깨물 수도 있으니 수건을 물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외상

① 물체가 콧혀있는 경우

- 이물질을 임의로 제거하지 않는다.
- 상처부위를 개방한 후 가능하면 직접압박으로 지혈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다.

② 가벼운 외상

- 가벼운 외상인 경우 얼음주머니를 외상 부위에 찜질을 하되 동상예방을 위해 20분 이상 넘기지 않도록 한다. 이후 피부에 거즈를 대고 탄력붕대를 배주고 부상당한 사지를 심장보다 높여 통증과 부종을 줄이고, 통증이 심할 경우 병원으로 이송한다.

## 5 환자 이송

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 자신이나 환자에게 어떤 위험이 미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안전에 위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가 절박하지 않거나 응급처치자가 이송에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환자를 운반하지 않는다. 환자를 즉시 운반하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에 처할 경우에는 신속한 응급이송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 척추가 손상되어 영구적인 마비나 생명의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응급처치는 생명에 위험이 없는 대부분의 경우라면 이송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1) 환자 이송의 원칙

- ① 환자가 위험에 처해 있거나 이송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환자를 옮기지 않는다.
- ② 환자에게 처치할 내용이나 앞으로 진행될 내용을 설명하여 동의를 구한 후 행동한다.
- ③ 여러 사람이 합쳐 구조해야 할 경우에는 한 사람이 운반을 통제하도록 한다.
- ④ 척추손상의 가능성이 없거나 척추보호가 가능할 때 운반해야 한다.
- ⑤ 이송해야 할 관객
  - 지혈이 안 되는 관객
  - 심은 절상, 열상, 혹은 결출상의 관객
  - 근육이나 뼈까지 상처가 난 관객
  - 구부러지는 팔꿈치나 무릎 같은 부위에 상처가 난 관객
  - 신경손상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 상처가 난 관객
  - 상처가 큰 자상이나 큰 물체가 꽂혔거나 크기와 상관없이 깊이 박힌 경우
  - 상처가 눈에 띄게 남아 있거나 상처가 넓고 틈이 벌어져 있는 관객

| 간급 이송(Emergency)                                                     | 응급 이송(Urgent Move)                                                     |
|----------------------------------------------------------------------|------------------------------------------------------------------------|
| 1) 화재 등으로 주변이 위험할 경우<br>2) 생명이 위급할 때<br>3) 다른 생명이 위험한 환자의 응급처치를 할 경우 | 1) 자극에 반응이 없는 경우<br>2) 부적절한 경우<br>3) 쇼크의 증상과 징후<br>4) 환자의 상태가 점점 악화될 때 |

### 2) 환자를 안전하게 드는 방법

환자를 운반하기 전에 먼저 운반 계획을 세우고 환자를 들도록 한다. 이때 손 전체를 잡고 되도록 들것에 몸을 밀착시킨 후 무릎을 굽히고 등을 편 다음 들어 올린다. 등과 척추를 일직선으로 하고 복부에 힘을 가한 후 구령을 붙여서 동시에 일어선다.

① 환자 1인 끌기 방법

주변에 구조를 도와줄 사람이 없거나 운반 보조기구가 없을 경우 구조자 혼자서 이동 시키는 방법이다. 도움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시도하지 않는다.

② 환자 1인 운반법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위험한 사고 현장에서 구조자 혼자서 환자를 안전한 자세로 이동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유해가스가 가득 찬 지역,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 등으로부터 환자를 단독으로 이동시켜야 할 경우에 시행한다. 도움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시도하지 않는다.

③ 환자 2인 운반법

환자 상태가 안정되고 2명 이상의 구조자가 있을 경우에 환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보조기구가 없을 경우에만 시행하며 보조기구가 있다면 보조기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④ 환자 3인 운반법

3인 이상의 구조자가 있을 경우에 의식이 없는 환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척추손상이 의심될 경우 환자를 조심스럽게 다룬다. 보조기구가 있을 경우에는 보조기구를 사용하며 현장이 안전하고 이상이 없다면 이동하지 않고 응급의료진을 기다리도록 한다.

⑤ 의자 및 휠체어 운반법

부상자를 통로나 계단을 이용해 운반할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우선 의자가 부상자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 등으로 편히 앉히고 팔을 포개고 발을 발판에 올려놓고 부상자를 묶는다.

공연 관객 위기 대응 및  
관리 매뉴얼



## 부록

1. 안전 관리 서식
2. 안전 관련 용어



**서식1 비상물품 · 비상시설점검표**

| 구분 | 항목           | 점검내용                                        | 점검결과 |      |      | 기타 |
|----|--------------|---------------------------------------------|------|------|------|----|
|    |              |                                             | 결과   | 문제사항 | 조치사항 |    |
| 시설 | 비상문          | 비상문이 눈에 띄는지 여부                              |      |      |      |    |
|    | 소화기          | 적절한 수량과 위치 여부                               |      |      |      |    |
|    |              | 통행 또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 확인      |      |      |      |    |
|    |              | 안전핀, 호스, 노즐 등이 안전하게                         |      |      |      |    |
|    |              | 약제충전기간을 확인                                  |      |      |      |    |
|    |              | 기간이 오래된 것을 선정하여 성능을 확인<br>(가압식소화기의 관리)      |      |      |      |    |
|    |              | 압력게이지의 지시침이 0.7~0.98Mpa<br>(녹색부위)에 위치 여부 확인 |      |      |      |    |
|    | 소화전          | 비상상황 시 사용가능 여부 (*사전 체크 필수)                  |      |      |      |    |
|    | 화재감지시설       | 경보장치 가동 여부                                  |      |      |      |    |
|    | 비상조명시설       | 건물의 각 로비와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br>통로에 설치 확인      |      |      |      |    |
|    |              | 비상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 전원 차단<br>시 점등확인           |      |      |      |    |
|    | 휠체어 이용<br>시설 | 휠체어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지 여부                         |      |      |      |    |
|    | 유도표지         | 방향안내가 정확한지 여부                               |      |      |      |    |
|    |              | 출입구 및 비상구 상단에 설치 확인                         |      |      |      |    |
|    |              | 전원 차단 시 점등 확인                               |      |      |      |    |
|    |              | 복도 및 통로 구부러진 모퉁이벽에 보행거리<br>15m 이하마다 설치 확인   |      |      |      |    |
|    | 비상벨          | 변형, 손상, 현저한 부식, 음향효과의 방해물<br>유무 확인          |      |      |      |    |
|    |              | 비상용 방송시 지장 유무 확인                            |      |      |      |    |
|    | 비상방송시설       | 주위에 사용상 장애물이 없고 기동장치 표시의<br>적정여부 확인         |      |      |      |    |
|    |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는 경우 상호간 기능<br>장해 유무 확인        |      |      |      |    |
| 물품 | 차단봉          | 적절한 수량과 필요 위치에 배치하였는지 여부                    |      |      |      |    |
|    | 구급약품         | 자주 사용 되는 약품 구비 여부                           |      |      |      |    |
|    |              | 유통기한 확인 여부                                  |      |      |      |    |
|    |              | 공연에 따라 남녀노소에 맞춘 약품 구비 여부                    |      |      |      |    |

**서식2**   **관객 대피 동선 점검표**

| 구분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      | 기타 |
|-------------|----------------------------------------|------|------|------|----|
|             |                                        | 결과   | 문제사항 | 조치사항 |    |
| 방화문         | 항상 닫혀 있는 구조인가                          |      |      |      |    |
|             | 방화문의 고임장치 설치 또는 도어클로저의 파손 또는 제거 확인     |      |      |      |    |
|             | 방화문의 훼손 또는 철거 확인                       |      |      |      |    |
|             | 밖으로 열고 나가는 구조인가 확인                     |      |      |      |    |
|             | 방화셔터 설치 시 화재감지기와 연동 확인                 |      |      |      |    |
| 비상계단        | 계단(직통 · 피난 · 특별피난계단) 관리상태              |      |      |      |    |
|             | 통로 적재물 여부                              |      |      |      |    |
| 비상<br>(탈출)구 | 피난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 통행이 방해되는 물품방치 확인   |      |      |      |    |
|             | 항상 개방 및 피난방향으로 열리는가 확인                 |      |      |      |    |
|             | 잠금장치 등으로 폐쇄되었는가 확인                     |      |      |      |    |
|             | 피난구 규격의 적정 여부                          |      |      |      |    |
|             | 발코니 또는 부속실의 설치기준 적정여부                  |      |      |      |    |
| 비상조명<br>시설  | 건물의 각 로비와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통로에 설치 확인    |      |      |      |    |
|             | 비상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 전원 차단 시 점등 확인        |      |      |      |    |
| 비상벨         | 변형, 손상, 현저한 부식, 음향효과와 방해물 유무 확인        |      |      |      |    |
|             | 비상용 방송시 지장 유무 확인                       |      |      |      |    |
| 비상방송<br>시설  | 주위에 점검 또는 사용상 장애물이 없고 기동장치 표시의 적정여부 확인 |      |      |      |    |
|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는 경우 상호간 기능장애 유무 확인       |      |      |      |    |
| 피난유도선       | 복도 또는 통로에 설치 확인                        |      |      |      |    |
|             | 구획된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여부 확인         |      |      |      |    |
| 피난안내도       | 비상구, 피난동선 및 소화기위치 등의 내용 포함 여부 확인       |      |      |      |    |
|             | 피난안내도 비치위치의 적합성 확인                     |      |      |      |    |
| 피난안내<br>영상물 | 피난영상물 내용 및 상영 시기의 적정성 확인               |      |      |      |    |
| 기타          | 방화구획, 비상용 승강기 등                        |      |      |      |    |

**서식3 대피훈련 참여자 설문지 서식**

| 대피훈련 참여자 설문 활용서식 |                                                                                                                                  |
|------------------|----------------------------------------------------------------------------------------------------------------------------------|
| 참여구분             | <input type="checkbox"/> 현장대피 응대 직원 <input type="checkbox"/> 관련기관 직원 <input type="checkbox"/> 일반 참여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작성일시             |                                                                                                                                  |
| 훈련포지션            |                                                                                                                                  |
| 훈련 상황 평가         | 훈련 상황의 적절성 및 훈련 전개 상황                                                                                                            |
|                  | 참여 훈련에 대한 이해도<br><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
|                  |                                                                                                                                  |
| 의      견         |                                                                                                                                  |

#### 서식4 안전훈련 평가서

| 안전훈련 평가서 |                                                                                                                                                            |
|----------|------------------------------------------------------------------------------------------------------------------------------------------------------------|
| 작성자      |                                                                                                                                                            |
| 작성일시     |                                                                                                                                                            |
| 훈련구분     | <input type="checkbox"/> 직원교육 <input type="checkbox"/> 안전관리요원교육 <input type="checkbox"/> 특별교육 <input type="checkbox"/> 정기교육 <input type="checkbox"/> 관리자교육 |
| 훈련목표     |                                                                                                                                                            |
| 훈련내용     |                                                                                                                                                            |
| 참여인원     |                                                                                                                                                            |
| 훈련 상황 평가 | 훈련 상황의 적절성 및 훈련 전개 상황                                                                                                                                      |
|          | 참여인원 태도                                                                                                                                                    |
|          | 참여인원 이해도                                                                                                                                                   |
| 종합평가     |                                                                                                                                                            |

서식5

안전훈련 결과보고서 양식

| 안전훈련 결과보고서 |                                                                                                                                                            |
|------------|------------------------------------------------------------------------------------------------------------------------------------------------------------|
| 일 시        |                                                                                                                                                            |
| 훈련구분       | <input type="checkbox"/> 직원교육 <input type="checkbox"/> 안전관리요원교육 <input type="checkbox"/> 특별교육 <input type="checkbox"/> 정기교육 <input type="checkbox"/> 관리자교육 |
| 훈련내용       |                                                                                                                                                            |
| 참여인원       |                                                                                                                                                            |
| 훈련 전개 상황   |                                                                                                                                                            |
| 대피여부       |                                                                                                                                                            |
| 훈련 상황 평가   | <div>사진첨부</div>                                                                                                                                            |
| 훈련 후 보완점   |                                                                                                                                                            |
| 추후 실행예정    |                                                                                                                                                            |

## ✓ 안전 관련 용어

**F.O.H (Front Of House) :** 조명, 음향 엔지니어를 위한 공간, 객석의 뒷부분에 위치하며 하우스 매니저 관리 공간인 FOH와 용어가 같음

**가설무대(temporary stage) :** 일반적으로는 가설공연장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며, 야외 공연 시 임시로 설치하는 간이 무대

**가스 중독 :**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 유독성 가스를 마심으로써 일어나는 중독

**간이완강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객석 공간 :** 극장에서 손님이 앉는 자리의 영역

**객석유도등 :**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

**객석관리 :** 관객의 동선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관객의 눈높이와 속도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

**거실통로유도등 :**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방향을 명시하는 등

**결무대(wings, wing stage) :** 주무대와 측무대 사이에 다리막으로 가려진 공간으로 배우나 장면, 장치 등이 무대로 들어가기 직전에 출연 장치를 준비하거나 출연자들이 대기 장소로 활용하며 간이 탈의 공간이나 배경 등의 조정 공간으로도 활용됨

**계단통로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등

**공기안전매트 :** 화재발생 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 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있는 것

**공중 연기 :** 배우가 천장의 장치를 통해 매달려 연기를 하는 것

**구조대 :**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써 화재 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

**과부하 :** 기기나 장치가 다룰 수 있는 정상치를 넘은 부하

**관객 입장 :** 공연을 보는 사람이 장내로 들어가는 것

**관객 퇴장 :** 공연을 보는 사람이 장내를 나가는 것

**그리드** : 매달기 기구, 무대기계, 구동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안전하고 튼튼한 장소로써 시설 등의 무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공연에 필요한 배경막이나 조명의 무게도 지탱하는 역할을 함

**기중차단기** : 공기를 소호매질로 하여 저압계통 전력의 송·수전, 절체 및 정지 등을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외에 전력계통의 고장 발생 시 신속하게 자동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보호 장치

**기동성** : 상황에 따라 재빠르게 움직이거나 대처하는 특성

**기폭장치** : 화약이 압력이나 열 따위를 받아서 폭발을 일으키는 장치

**누전** :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절연 상태가 불량하게 되었거나 또는 전선이 잘려서 누설하는 전류

**누전차단기** : 배선용 차단기와 비슷한 구조 및 특성을 갖고 있으나 과부하, 단로 및 누전 발생 시 자동적으로 전류를 차단하는 기구를 말함

**다중이용시설** :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

**단차** : 객석 열과 열 간의 높낮이 차

**로비(lobby, foyer)** : 극장 입구와 객석 사이의 공간으로, 관객들이 공연 전후 및 막간에 시간을 보내는 곳

**리허설(rehearsal)** : 연극·음악·방송 따위에서, 공연을 앞두고 실제처럼 하는 연습

**막시설** : 무대장면의 표현이나 전환 등을 위하여 막을 매달거나, 공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종 무대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무대기구로써, 면막, 오페라막, 모양막, 끌막, 영사막 등의 다양한 종류가 있음

**면막** : 무대와 관객석 사이에 친 막

**모시피트(Mosh Pit)** : 스탠딩 공연 시 사용되는 안전펜스 앞쪽 무대 전면 구역

**무대 공간** : 노래, 춤, 연극 따위를 하기 위해 객석 정면에 위치한 공간

**무대 장치** : 공연을 위해 무대를 꾸미는 장치. 배경, 구조물, 소품 따위

**무대 장치 결함** : 무대 장치 재료의 불량, 노후, 또는 고장 등을 수리하지 않아 불안정한 상태

**안전펜스** : 흙이나 통, 철망 따위로 길 위에 임시로 길을 막기 위해 세운 장애물

**방염** : 불에 타지 않게 막음

**방화막(safety curtain, fire curtain, Iron curtain)** : 무대에서 화재 발생 시 프로시니엄 개구부를 차단하여 무대와 객석을 분리시켜 화염이나 연기가 객석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관객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시키기 위한 내화 구조물

**방재실** : 방법, 방재, 안전 등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

**배선용 차단기** : 개폐기구, trip장치 등을 절연물 용기 내에 일체로 조립한 것으로 통전상태의 전로를 수동 또는 전기 조작에 의해 개폐할 수 있으며 과부하 및 단로 등의 이상 상태 시 자동적으로 전류를 차단하는 기구를 말함

**백 스테이지(back stage)** : 공연장에서의 악실 등, 메인 스테이지를 제외한 부분으로, 문자 그대로 스테이지의 뒤쪽을 의미

**병목현상** : 공간의 폭이 병목처럼 갑자기 좁아진 곳에서 일어나는 정체 현상

**보호구** : 재해방지나 건강장해방지의 목적에서 작업자가 직접 몸에 걸치고 작업하는 것

**복도통로 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써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등

**비계** : 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비상조명등** :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

**살상력** :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

**상부 무대시설** : 무대 마룟바닥을 기준으로 하여 마룟바닥 위쪽에 설치되는 무대기계·기구를 말하며, 방화막·막시설·조명시설·음향시설 및 객석 상부에 건물과 독립적으로 설치된 무대기계·기구 등

**승강무대(stage lift)** : 공연 중 장면전환이나 연기자의 등장 등을 위하여 무대바닥의 일부분이 수직으로 승강할 수 있도록 만든 무대

**시각경보기** : 자동화재 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

**시설유지관리** : 관객의 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의 보수나 청결상태 등의 유지

**스탠딩 구역** : 공연을 서서 관람할 수 있는 공간

**스탠바이** : 무대 또는 촬영 장소에서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 때를 의미

**시나리오** : 어떤 사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상적인 결과나 그 구체적인 과정

**안전 취약구역** : 안전에 있어서 사고 위험이 더 큰 영역

**안전불감증** : 안전에 대해 무감각한 것

**안전사고** : 안전교육의 미비, 또는 부주의 따위로 일어나는 사고

**안전장치** : 설 때에 기계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 두는 장치

**암전(dark change)** : 공연 가운데 장치 및 소품, 의상 등의 전환을 위하여 무대를 어둡게 하는 것

**앵커볼트** : 구조물과 기초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 이용하는 볼트. 뽑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부가 일부 굽어져 있음

**연주승강무대(orchestra lift)** : 앞무대와 객석 사이의 무대공간에 승강 무대가 설치되어, 오케스트라가 들어가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으로 주무대 바닥면과 높이를 맞추며 무대로 사용되거나 의자를 설치하여 객석 높이에 맞추어 객석으로 쓰이기도 함

**오페라 글라스(opera glass)** : 공연 관람 용도의 소형 쌍안경

**와이어로프** : 몇 개의 철사를 꼬아서 1줄의 새끼줄을 만들고, 다시 6가닥의 새끼줄을 1줄의 마(摩)로프를 중심으로 꼬아서 만든 줄

**완강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유도등** :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 전환되어 켜지는 등

**인터미션(intermission)** : 공연 중간에 갖는 휴식시간으로, 보통 러닝타임이 2시간 반에서 3시간 이 넘는 뮤지컬은 1부가 끝나고 대개 15분~20분 정도의 인터미션을 가짐

**자체 안전검사** :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운영자가 자체검사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안전진단

**장치봉(batten, flybar)** : 배경이나 장치 등을 매다는 긴 봉이나 구조물

**재해 손실비용** : 재해 발생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지출된 모든 손실 비용

**적재** : 물건이나 짐을 선박, 차량 따위의 운송 수단에 실음, 또는 쌓아놓은 모양

**전기 제어** : 스위치, 저항기 따위에 의한 기기 또는 장치의 제어

**절연체** : 전도체나 소자로부터 전기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열이나 전기를 잘 전달하지 아니하는 물체

**제어부품** : 기계나 설비가 목적에 맞게 작용하도록 조절하도록 하는 물품

**정기 안전검사** :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동무대기계·기구수가 20개 이상인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안전검사 결과 안전진단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안전진단

**콘솔(console)** : 컴퓨터나 전기·통신 기기 따위의 각종 스위치를 한곳에 모아 제어할 수 있도록 한 조정장치

**클램프(clamp)** : 작업을 할 때 재료나 부품을 고정하거나 접착할 때 사용하는 공구

**탈진** : 기운이 다 빠져 없어지는 것

**통로유도등** :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

**통로유도표지**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

**트랩(trap)** : 배우나 소규모 장치가 무대 밑에서 나오거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대바닥을 여러 개로 분할하고 개별적으로 여닫을 수 있도록 제작한 전환 장치

**트러스(truss)** : 직선으로 된 여러 개의 뼈대 재료를 삼각형이나 오각형으로 엮어 짜서 지붕이나 교량 따위의 도리로 쓰는 구조물

**특수효과(SF, special effects)** : 무대에 화염, 폭죽 등으로 실감나는 느낌을 더하기 위한 것

**티켓매니저** : 입장권, 승차권, 구매권 따위의 표를 관리하고 그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피난통로** :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피할 수 있게 만들어진 길

**피난유도선** :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하는 피난유도시설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피난구유도표지**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

**피난밧줄** : 급격한 하강을 방지하기 위한 매듭 등을 만들어 놓은 밧줄

**피난사다리** : 화재 시 긴급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

**피트(pit)** : 무대와 객석 사이의 공간

**하부무대시설** : 무대 마룟바닥을 기준으로 하여 마룟바닥 아래쪽에 설치되는 무대 기계·기구를 말하며, 회전무대·승강무대·이동무대·연주승강무대(오케스트라 리프트) 등

**하역장** : 설비가 들어 있는 상자들을 하역하기 위한 시설

**하우스(House)** : 매표소, 휴게실, 관람 좌석 등 백스테이지를 제외한 모든 부분으로 공연에서 관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 또는, 공연장 전체를 일컫는 용어로 쓰이기도 함

**하우스매니저** : 극장 지배인, 관객 관련된 일을 하는 관리자

**행정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 취급 사무에 따라 국가 행정 기관 또는 관치행정 기관으로 분류되고, 법적 성격에 따라 행정관청, 의결기관 또는 자문기관, 감사기관, 집행기관, 보조기관 등으로 분류됨

**헤드 업(head up)** : 천장의 조명장비 등으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시에 통용되는 안전용어로, 공연 도중 ‘헤드 업’이라는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면 신속하게 대피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확성기** :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들리게 하는 기구

**환부** : 병이나 상처가 난 자리

**황금시간** : 골든타임의 순화어로 가장 중요하고 응집된 시간

**휴대용 비상조명등** :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

## 〈참고문헌〉

- jtbc뉴스(2015.07.29.), “관객 ‘경호원 폭행’ 주장…안산밸리룩페스티벌 과잉진압 논란”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980917에서 2017.10.16. 검색
- MBCnews(1992.11.18.), “국립극장 무대 붕괴 사고[양찬승]”.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2/1749881\_19402.html에서 2017.10.16. 검색
- MBCnews(1991.10.18.), “대구 거성관 나이트클럽 방화사건용의자, 범행 재현[김세화]”.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1/1853330\_19386.html에서 2017.10.16. 검색
- MBN뉴스(2016.05.18.) “‘트와이스’가 뒤풀이에…공연관람 여대생 2명 추락”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885549에서 2017.10.16. 검색
- 강현석(2007년 12월 13일), “예술의 전당 화재.. 관객 침착한 대응이 대참사 막았다”, 노컷뉴스
-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2
- 경향신문(2014.10.17.), “1992년 ‘뉴키즈 온 더 블록’ 공연 중 사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172239535&code=940202에서 2017.10.16. 검색
- 국립문화시설의 위기관리가이드북, 공문협, 일본
- 공연장 안전 및 관련법규, 교보문고, 김상현 저
- 공연장의 무대공간에 관한연구, 2006년, 신라대학교, 유지우
- 공연장의 안전관리, 무대시설안전진단 지원센터
- 국가재난정보센터. http://www.safekorea.go.kr/idsiSFK/index\_user.jsp. 사회재난행동요령. 전기/가스사고 자료실에서 2016.09.19. 검색
- 국가정보원, 대테러. http://www.nis.go.kr/AF/1\_6.do에서 2016.09.19. 검색
- 국립중앙극장 (2009) 『무대예술용어집』. 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위원회
- 국민안전처, 소방시설 사용 요령  
http://www.nfds.go.kr/fs\_sense\_0001.jsf?gb=v6에서 2016.09.19. 검색
- 김광요, 박진권 외 3명 저 (2010) 『드라마 사전』. 문예림
- 김영신, 『장애인 관객 서비스 매뉴얼』. 한국공연장매니저협회.
- 김영신(2015), 『하우스매니저 2급』. 한국공연장매니저협회
- 김영신(2005), 「하우스매니저 역할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 김학준(2002.10.27), 러시아 인질극 ‘독가스 진압’ 논란,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100025/2002/10/005100025200210272101141.html, 2017.10.16. 검색
- 노컷뉴스(2005.10.03.) “MBC 가요콘서트 관객 11명 압사”  
http://www.nocutnews.co.kr/news/89113에서 2017.10.16. 검색
- 매일경제&mk.co.kr(2014.10.20.), http://china.mk.co.kr/kor/news.php?china\_cmd=view&sctype=sis&sc=40000138&cm=china\_%BD%C3%BB%E7&year=2014&no=1333826&relatedcode=00090107에서 2017.10.16. 검색

- 문예회관 트러블 대응 핸드북, 전문영, 전국공립문화시설협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 법률 제 13726호, 2016.1.6. 타법개정, 공연법 「제 12조 무대 시설의 안전진단」
- 미디어오늘(2005.10.05.), “공연장 안전사고 전철 그대로 답습”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40723>에서 2017.10.16. 검색
- 박태훈(2017.01.15), [미리보는 한 주의 역사] 1월 16일~1월 22일...1995년 1월 17일 고베 대지진, <http://www.segye.com/newsView/20170113001271>, 2017.10.16. 검색
- 블루스퀘어 안전매뉴얼
-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전력시장과(2006년). 『최근 정전 및 발전소 사고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 서울종합 방재센터 자료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3호, 제5조
- 스포츠경향(2011.04.19.), “남성관객, 휘성 무대 급습! 날아차기로…”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art\\_id=201104192118323&sec\\_id=540101](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art_id=201104192118323&sec_id=540101)에서 2017.10.16. 검색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2011.11.16.>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관련)
- 신일수 저(2000) 『극장 상식 및 용어』. 교보문고
- 아르코예술극장 안전매뉴얼
- 연합뉴스(2017.06.26.), “에이핑크 ‘쇼케이스장에 폭발물 설치’ 또 협박받아(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6/0200000000AKR20170626120451005.HTML>에서 2017.10.16. 검색
- 연합뉴스(2013.12.31.) “울산 간절곶 해맞이 행사장에 불...5명 부상(종합)”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12/31/0701000000AKR20131231187151057.HTML>에서 2017.10.16. 검색
- 예술의전당 안전매뉴얼
- 위키백과(2017.10.16.), “서울시민회관화재”  
[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C%9A%B8%EC%8B%9C%EB%AF%BC%ED%9A%8C%EA%B4%80\\_%ED%99%94%EC%9E%AC](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C%9A%B8%EC%8B%9C%EB%AF%BC%ED%9A%8C%EA%B4%80_%ED%99%94%EC%9E%AC)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조제1호관련)
- 이우섭, 김상헌, 김동균, 박진규, 장홍석, 이진환. 『소공연장 안전 매뉴얼』. 도서출판 다크페이스
- 이우섭, 김상헌.(201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무대시설안전지원센터. 『공연장 안전매뉴얼 핸드북』, 『테러』, 61쪽.
- 이장직(2007.03.14), [세계 공연장 순례] 베네치아 페니체 극장.  
<http://news.joins.com/article/2661658>, 2017.10.16검색
- 재난안전정책과(2012). 『안전생활길잡이 지도서』. 제999호. 행정안전부
- 재난정보센터 자료집
- 조선닷컴(2014.10.17.)“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 환풍구 붕괴… 16명 사망, 부상자 11명중 2명은 가까스로 추락 면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17/2014101703155.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17/2014101703155.html)에서 2017.10.16. 검색

- 최경희(2004). 「공연장에서의 효율적인 객석관리(House Management)에 관한 실무지침서」.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 파이낸셜뉴스(2014.10.17.). “국내 공연장 · 축제 주요사고”  
[http://m.fnnews.com/news/201410172320252554?site\\_preference=mobile](http://m.fnnews.com/news/201410172320252554?site_preference=mobile)에서 2017.10.16. 검색
- 한겨레(2014.10.18.) “2005년 10월 상주, 한꺼번에 입장하다 넘어져 11명 숨져”  
[http://www.huffingtonpost.kr/2014/10/18/story\\_n\\_6006900.html](http://www.huffingtonpost.kr/2014/10/18/story_n_6006900.html)에서 2017.10.16. 검색
- 한국공연장매니저협회(2010). 『워크샵 교재 – 하우스매니저 전문가 과정』. 한국공연장매니저협회
- 한국공연장매니저협회 안전 및 위기관리 워크숍 자료집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2015). 『문예회관 운영 매뉴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한국산업기술원(2009년). 『무대시설안전진단지원센터 공연장안전매뉴얼』, 『전기안전』
- 한국산업기술원(2009년). 『무대시설안전진단지원센터 공연장 전기설비 점검요령』
- 한국산업기술시험원(2014).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공연장 안전사고 사례집』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무대시설안전진단지원센터(2009). 『공연장안전매뉴얼핸드북』
- 한국소방안전협회. 원인별 화재예방요령.  
[http://www.kfsa.or.kr/info/information/fireprotection4.htm?pgid=4\\_94\\_114](http://www.kfsa.or.kr/info/information/fireprotection4.htm?pgid=4_94_114)에서 2016.09.19. 검색
- 한국화재보험협회(2013). 『특수건물 화재 조사 분석』
- 황철빈(2014). 「공연장 하우스매니저 직무 연구 = A Study on the Job Analysis for the Theater house manager」. 석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